

발간등록번호

서울교육 2024-103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UNIVERSAL DESIGN GUIDELINE

제출문

서울특별시교육청 귀하

본보고서를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4년 10월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주)도시건축이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참여기술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진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현
시설개발팀장	차주엽
주무관	이정환
주무관	임형택

참여연구진

총괄책임	위재송
참여 연구원	김정섭
참여 연구원	최지수
참여 연구원	장성규

자문위원

디자인제이건축사사무소 대표	이현진
----------------	-----

CONTENTS

1 부

I. 유니버설디자인 개요

1.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2. 유니버설디자인 원칙 및 목표

II.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2. 기본방향
3. 적용 원칙
4. 적용 범위
5. 구성 및 체계

2 부

III.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1. 공통공간
2. 학습공간
3. 휴식교류공간
4. 지원공간
5. 지역교류공간

IV.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1 부

I .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해

1.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2. 유니버설디자인 원칙 및 목표

II .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2. 기본방향
3. 적용 원칙
4. 적용 범위
5. 구성 및 체계

I .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해

1.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2. 유니버설디자인 원칙 및 목표

1.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계획하는 것을 의미”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 제2조

유니버설디자인은 ‘접근성’의 개념으로부터 시작, 1960년대 미국의 시민권 운동, 장애인권리운동이 발생하였고, 이후 공용건축물의 접근성 확보를 의무화 하는 등 접근성 관련 법률이나 정책이 확대되면서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이 등장

과거부터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의가 산발적으로 등장하고, 무장애와의 비교가 계속되었는데, 유니버설디자인과 무장애는 많은 부분이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른 개념임

무장애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표준과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개념이라면, 유니버설디자인은 보다 다양한 사용자를 포괄하고 법적 기준을 넘어 정서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안을 제시하여 사용자의 만족도 향상까지 포함하고 있음

즉,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인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사용자의 관점에서의 편의와 안전,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디자인적 접근 과정임

2. 유니버설디자인 원칙 및 목표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의 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서 개발된 것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소통과 실천의 전파 및 평가의 주요 도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유니버설디자인의 8목표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는 다른 도구로서, 8가지 목표 등장 8목표는 인간행위능력의 실증-기반적 접근 필요, 다양한 사람들의 사회적 교류와 참여의 의미까지 담고 있음

신체 적합	신체크기와 능력의 차이를 광범위하게 수용한다.	인간행위능력 기반 2가지 영역 사이 가교 역할 사회참여 기반
편안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의 신체기능만이 요구되도록 한다.	
인지	사용상의 중요정보가 쉽게 인지되도록 한다.	
이해	작동과 사용방법이 직관적이고 명확하며 모호하지 않게 한다.	
건강과 복지	건강증진, 질병회피, 부상예방에 기여한다.	
사회적 교류와 참여	모든 그룹을 존엄과 배려로 대하도록 한다.	
개인화	개인적 선호를 표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적 수용	모든 디자인프로젝트의 문화적 가치, 사회·환경적 맥락을 존중하고 강화한다.	

II.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2. 기본방향

3. 적용 원칙

4. 적용 범위

5. 구성 및 체계

1. 배경 및 필요성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도입 배경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 제정에 맞춰 모든 학생이 보편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도입이 필요

최근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로 인한 학생 수 감소 및 학교의 돌봄·보육 기능 강화,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커뮤니티 복합화 등에 따라 다양한 방면에서 학교시설의 역할이 변화·확대되고 있지만, 학교는 아직 보행약자를 위한 접근성 개선을 시도하는 초기단계이며, 통합적인 환경 조성이 아닌 개별시설의 설치에만 머물러 있음

따라서, 융·복합 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한 교수학습방식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사회 환경(미세먼지,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학교 생활환경 및 공간 대응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시급한 시점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목적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학교시설과 교육 관련 시설과 관련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 관련 종사자에 더불어 지역주민, 방문자들을 위한 포용적인 학교 공간 환경 조성을 위함

또한, 미래 학교시설의 공간구조 변화에 맞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시설 특성에 맞춘 공간별 대응 분야를 설정하고 대응요소별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 실용적이고 통합적인 학교공간마련을 위함

2. 기본방향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마련된 일반적 지침과 구별하여
서울시 학교시설의 교육적·환경적·사회적 특성 중
교육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 ”

서울시의 학교시설은 학생 수 감소와 교육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기존 학교의 공간적 재편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생활의식의 변화와 생활수준의 향상, 학교 주변 지역사회의 변화 등에 비추어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개별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중점을 두어 이용 약자가 사용하는 시설과 시설로의 접근성 개선에 집중해왔지만, 이제는 기존 학교의 시설 개선과 리모델링, 학교 신설에 있어 좀 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그에 맞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UD 적용에 있어 서울시 학교시설은 다른 여타시설과는 다른 교육환경이라는 특성에 입각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서울이라는 상징적 역할은 타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되어야 함

학교의 지역사회 역할과 다양한 교육대상자들을 좀 더 촘촘히 구분하여 되도록 보다 다양한 사용자들을 배려하고, 학교시설의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염두에 둔 UD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3. 적용원칙

UD 적용원칙을 위한 핵심사항

학교의 사용자 그룹 확대, 학습·교류에 있어 참여양식의 변화, 다양한 사용자 관점에서의 시설 수준의 개선 필요 등은 UD 본연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UD를 적용함에 있어 서울시 학교시설이 가지고 있는 맥락과 특성을 반영하여 핵심적 개념들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음

먼저, 서울시 학교시설은 ‘서울’이라는 상징적 역할로 우리나라 교육의 선진사례·모범사례 의무가 있으며, 저성장·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계층을 포용하는 교육적 역할 중요성에 맞는 교육환경 제고가 필요함

최근 기후변화(미세먼지대기오염, 대기오염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중심 역할로써 재해·재난·홍수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지역 회복(resilience) 거점, 신체적·정신적 코뮤니티 헬스 거점, 지역 에듀 커뮤니티 거점으로의 학교 환경 조성이 필요함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원칙

위에서 살펴본 핵심사항을 토대로 다음의 5가지 UD 적용 원칙을 제시하고자 함



4. 적용 범위

가이드라인 범위

본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학교 내 건축물, 외부공간에 학교 주변공간까지 포함하여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공통공간, 학습공간, 휴식교류공간, 지원공간, 지역교류공간으로 5개 항목, 28개 세부항목으로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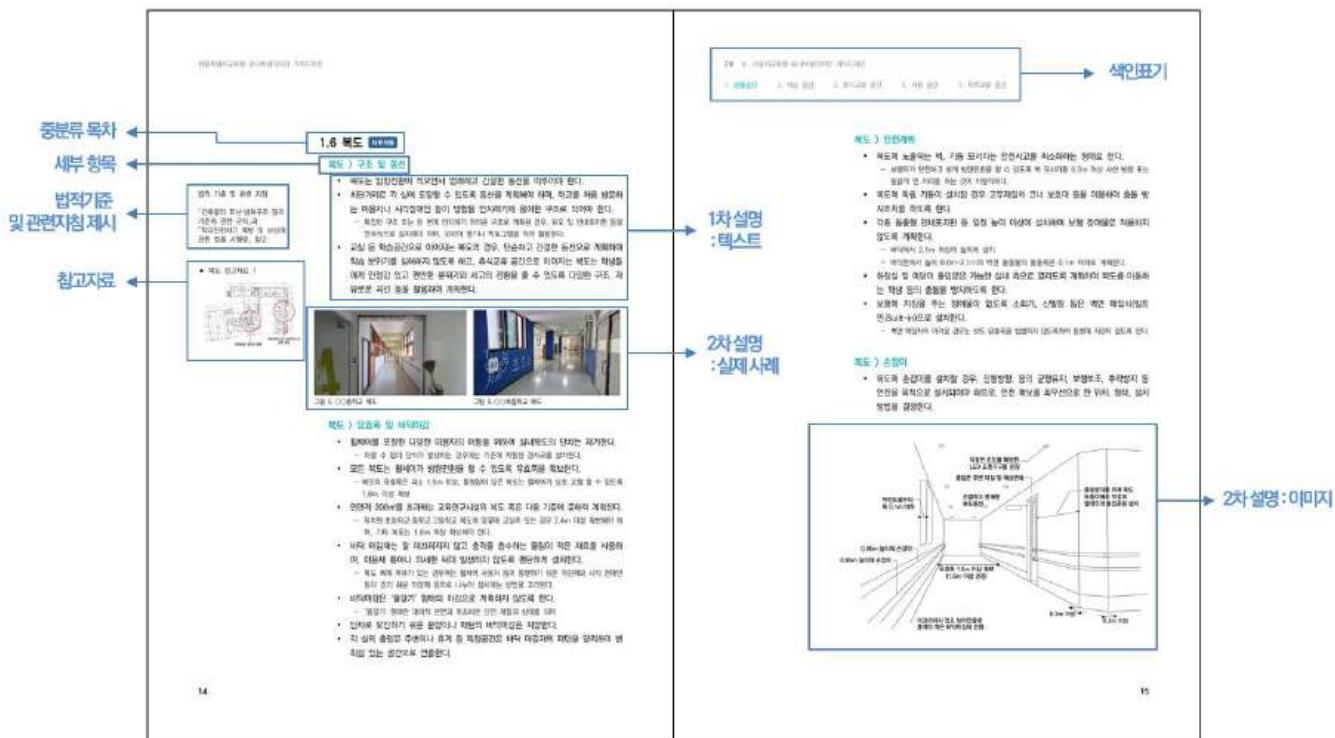
항목		세부항목	비고
공통 공간	외부접근	교문, 보행접근로, 주차장 및 차량출입구, 학교 경계설치(담장, 용벽 등), 건물출입구	접근성 개선 및 BF적 요소
	내부이동	복도, 실내출입문, 수직이동설비, 방재 및 피난시설, 안전설비	
	내부위생	화장실, 탈의실 및 샤워실	
학습 공간	교사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별/교과교실, 실내 체육시설(소규모)	학교환경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UD적 요소
	외부	운동장	
휴식 교류 공간	교사	휴식 공간 및 광장	
	외부	놀이터, 외부정원(학교숲 등)	
지원 공간	일반형	교과연구실, 보건실/상담실(Wee Class), 돌봄·돌봄교실	학교환경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UD적 요소
	대규모형	식당, 다목적강당(체육관), 정보관/도서관, 시청각실	
지역 교류 공간	주변 교육영향권	통학로 주변	

5. 구성 및 체계

가이드라인 구성 체계

가이드라인의 중분류 항목에 세부항목을 분류하여 내용이 진행되며,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텍스트 1차 설명을 하고, 텍스트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은 2차적으로 실제 사례나 이미지로 설명이 진행됨

가이드라인 내용의 법적기준 및 관련지침을 왼쪽 상단에 기재하며, 내용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참고자료를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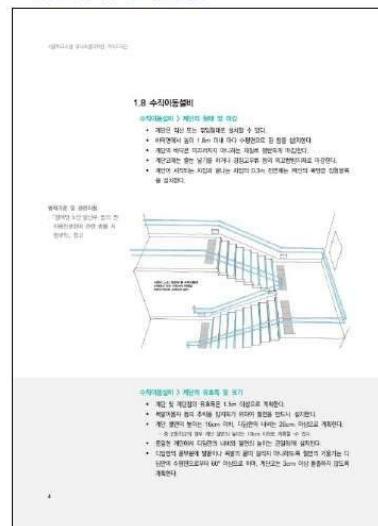
가이드라인 사항들 중 이미 많은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범용적으로 제시되는 내용인 경우 일반지침,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처음 제시되거나 강조하는 부분의 내용인 경우 특수지침으로 구분하여 제시

일반지침의 경우, 기본적인 흰색 바탕으로 표현하고, 특수지침인 경우 회색바탕으로 하여 보는 사람들에게 쉽게 구별하여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함

특수지침은 세부항목 안으로 특수지침이 들어가는 경우와 종분류 목차 전체가 특수지침으로 들어가는 경우 2가지를 예로 들 수 있음

일반 지침: 환색 바탕
특수 지침: 회색 바탕

1. 세부항목중 특수자체 있는 경우



2 중분류 전체가 특수지침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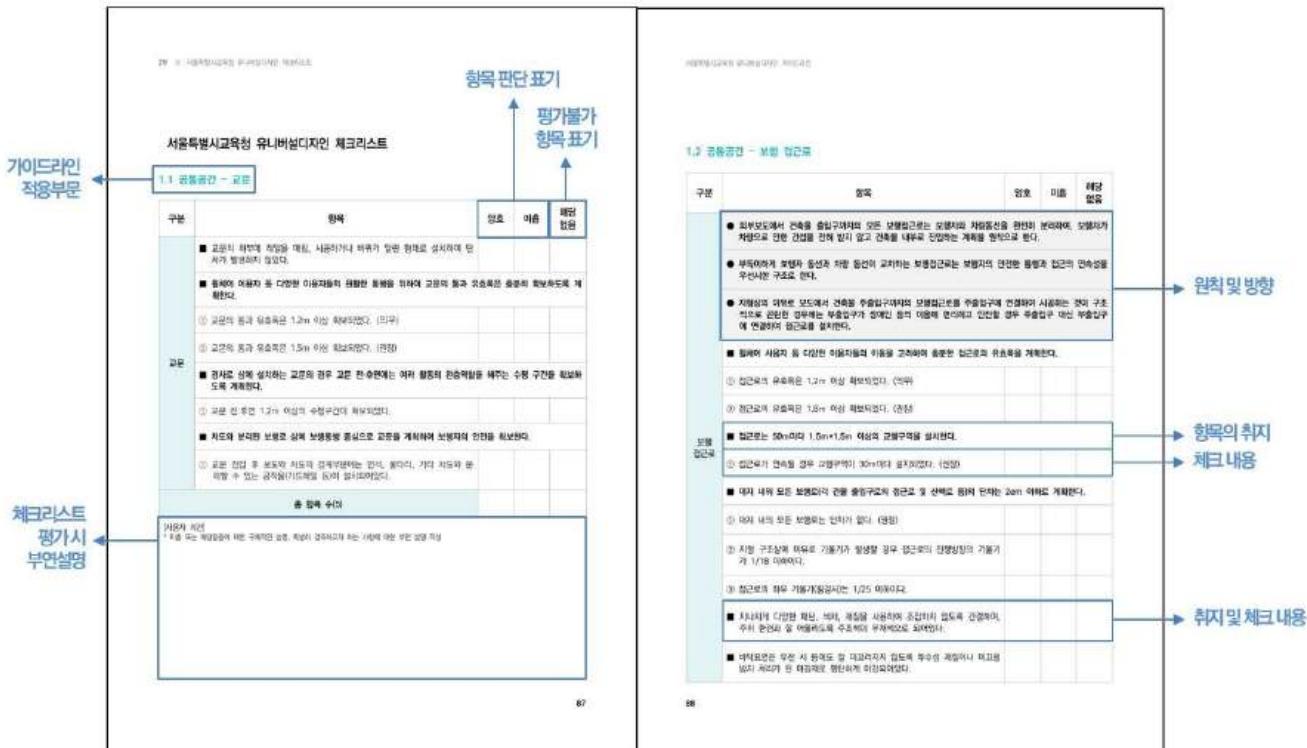
체크리스트 구성 체계

체크리스트는 가이드라인의 구성 체계를 토대로 큰 분류는 공통공간, 학습공간, 휴식교류공간, 지원공간, 지역교류공간으로 하고, 중분류 항목인 교문, 보행접근로 등에 따라 체크리스트 표를 구분하여 실무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함

항목 판단 기준은 양호/미흡으로 기준을 구분하여 UD적용 정도에 따라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평가가 불가한 상목에 대해서는 해당없음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함

가이드라인 적용부문별로 기본적인 원칙 및 방향 제시를 통해 이해를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경우 먼저 제시해주고, 각 항목별 취지에 그에 따른 체크내용 순으로 내용이 진행됨

추가로 체크리스트 평가 시 미흡 또는 해당없음에 해당하는 항목에 있어서 구체적인 설명이나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부연 설명을 기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개별적으로 자세한 UD가이드라인 적용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2부

III.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1. 공통공간

- 1.1 교문
- 1.2 보행접근로
- 1.3 주차장 및 차량출입구
- 1.4 학교 경계설치(담장, 용벽 등)
- 1.5 건물출입구
- 1.6 복도
- 1.7 실내출입문
- 1.8 수직이동설비
- 1.9 방재 및 피난시설
- 1.10 안전설비
- 1.11 화장실
- 1.12 탈의실 및 샤워실

2. 학습공간

- 2.1 일반학급
- 2.2 특수학급
- 2.3 특별/교과교실
- 2.4 실내체육시설(소규모)
- 2.5 유치원
- 2.6 운동장

3. 휴식교류공간

- 3.1 휴식 공간 및 광장
- 3.2 놀이터
- 3.3 외부정원(학교 숲 등)

4. 지원공간

- 4.1 교과연구실
- 4.2 보건실/상담실(Wee Class)
- 4.3 돌봄 · 늘봄교실
- 4.4 식당
- 4.5 다목적강당(체육관)
- 4.6 정보관/도서관
- 4.7 시청각실

5. 지역교류공간

- 5.1 주변 교육영향권

IV.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III.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1. 공통공간**
- 2. 학습공간**
- 3. 휴식교류공간**
- 4. 지원공간**
- 5. 지역교류공간**

1.1 교문(대지출입구) 외부접근

교문 > 단차

법적 기준 및 관련 지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고

■ 교문 참고자료 1

- 교문의 하부에 레일을 매립, 시공하거나 바퀴가 달린 형태로 설치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교문 > 유효폭

- 휠체어 이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문의 통과 유효폭은 충분히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 교문의 통과 유효폭은 1.2m 이상 확보한다. (의무)
 - 교문의 통과 유효폭은 1.5m 이상 확보한다.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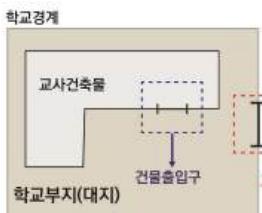


그림 1 ○○초중학교 단차 없는 교문



그림 2 ○○고등학교 단차 없는 교문

교문 > 수평참 확보

- 경사로 상에 설치하는 교문의 경우 교문 전·후면에는 여러 활동의 완충역할을 해주는 수평구간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 교문 전·후면 완충 폭은 1.2m 이상의 공간은 수평구간으로 계획한다.

교문 > 보차 구분

- 차도와 분리된 보행로 상에 보행통행 중심으로 교문을 계획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 교문 진입 후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 올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 물(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다.

1.2 보행접근로 외부접근

보행접근로 > 기본방향

법적 기준 및 관련 지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참고

- 외부보도에서 건축물 출입구까지의 모든 보행접근로는 보행자와 차량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여, 보행자가 차량으로 인한 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 건축물 내부로 진입하는 계획을 원칙으로 한다.
- 부득이하게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이 교차하는 보행접근로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과 접근의 연속성을 우선시한 구조로 한다.
- 지형상의 이유로 보도에서 건축물 주출입구까지의 보행접근로를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부출입구가 장애인 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할 경우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한다.

보행접근로 > 유효폭

-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들의 이동을 고려하여 충분한 접근로의 유효폭을 계획한다.
 - 접근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계획한다. (의무)
 - 접근로의 유효폭은 1.8m 이상으로 계획한다. (권장)
- 접근로는 50m마다 1.5m×1.5m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한다.
 -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30m마다 설치한다. (권장)



그림 3 ○○초중학교 보행접근로 사례



그림 4 ○○고등학교 보행접근로 사례



보행접근로 > 단차 및 기울기

- 대지 내의 모든 보행로(각 건물 출입구로의 접근로 및 산책로 등)의 단차는 2cm 이하로 계획한다.
 - 대지 내의 모든 보행로(각 건물 출입구로의 접근로 및 산책로 등)의 단차는 제거한다. (권장)
 - 지형 구조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기울기가 발생할 경우 접근로 진행방향의 경사로 기울기는 1/18 이하로 계획한다.
 - 접근로의 좌우 기울기(횡경사)는 1/25 이하로 계획하여 휠체어 등의 전도를 방지한다.

1. 공통공간 2. 학습공간 3. 휴식교류공간 4. 지원공간 5. 지역교류공간

보행접근로 > 바닥 마감 및 덮개

- 지나치게 다양한 패턴, 색채, 재질을 사용하여 조잡하지 않도록 간결하게 하며, 주위 환경과 잘 어울리도록 주조색은 무채색으로 한다.
- 바닥표면은 우천 시 등에도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투수성 재질이나 미끄럼방지 처리가 된 마감재로 평탄하게 마감한다.
 - 투수성포장은 기후변화 대응 및 빗물이용차원에서 전체 포장면적의 30% 이상 조성한다.
- 블록 등의 포장의 경우,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 틈새 간격은 1c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인터로킹 블록 등을 바닥 마감재로 사용할 경우 그 이음새의 줄눈간격은 0.5c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장애인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한다.
- 배수로는 보행접근로를 가로질러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배수구 덮개의 격자구멍 간격은 모두 2cm 이하로 계획한다.
 - 또한, 덮개는 휠체어 이용자 등의 이용을 위하여 높이차이가 전혀 없도록 동일한 높이로 계획한다.
- 보행로 측으로 돌출되는 건물 외벽의 우수 선호통은 배수구 덮개 내부로 매립하여 시공한다.
- 우수 및 오수관의 덮개는 시각장애인 유도블록과의 간섭이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보행접근로 > 보차 구분

-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등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 명확한 보차분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연석의 높이는 6cm~15cm로 하며, 색상과 질감은 접근로의 바닥재와 다르게 설치 가능하다.
- 보도와 차도가 교차하는 구간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고원식(험프식), 또는 평면형)를 설치한다.
-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횡단보도 양측의 보도부분에는 횡단보도 폭만큼 접형블록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 등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다.
- 통학로 부근에 있는 횡단보도는 안전 표시 옐로 카펫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알코브*란?
서양식 건축에서 벽의 한 부분으로 쑥 들어가게 만들어 높은 부분을 말한다.
(출처: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 가이드라인 내에서는 보행로 안쪽으로 각종 시설물과 벤치 등을 설치하는 형태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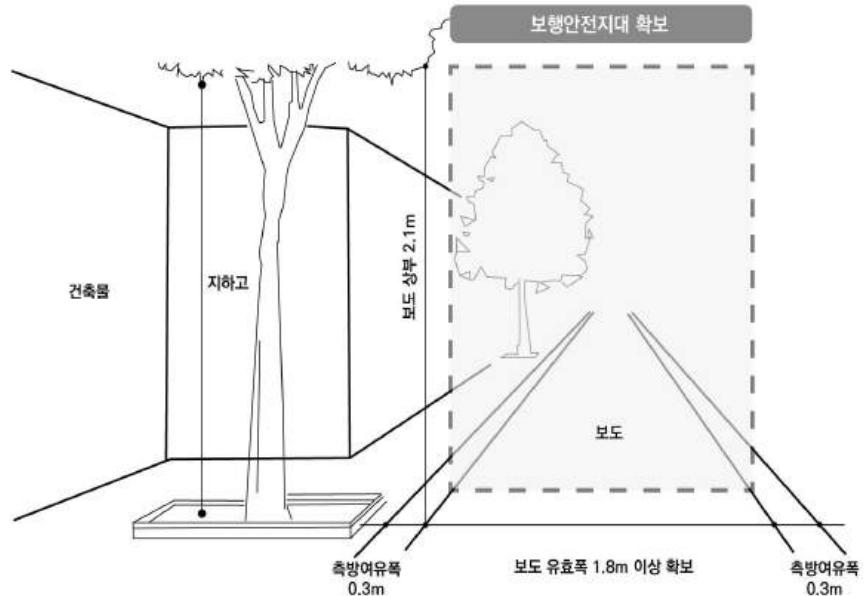
<예시이미지>



보행접근로 > 보행 장애물

- 보행접근로의 유효폭 내에는 보행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 접근로에 설치하는 각종 안내표지판·가로등·전주·필로티 기둥 등은 시설물은 보행에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경구간 등의 공간에 설치한다.
- 각종 벤치 등은 보행에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알코브* 형태로 설치한다.
- 필로티 하부기둥 등 보행로 상에 설치하는 독립기둥의 바닥 주위 0.3m 이상 보행로 질감 및 색상과 명확히 구별되는 질감과 색상으로 구분하여 주위를 환기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우천 시 등 우산을 쓰는 경우를 고려하여 보행접근로의 지면에서 높이 2.1m 이내 상부에는 가로수 나뭇가지(지하고)나 안내사인 등의 상부돌출물이 없도록 한다.



보행접근로 > 안전 계획

-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벗겨진 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등(燈)기구의 설치는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 기구 몸체의 교체와 철거가 쉽도록 설치한다.
- 옥외에 시설하는 전구는 빗방울로 인하여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갓이나 글로브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먼지·벌레·물방울 등이 등 기구 내부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한다.

1.3 주차장 및 차량 출입구 외부접근

주차장 및 차량 출입구 >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법적 기준 및 관련 지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고

- 주차장 출입구는 보행자의 대지 출입구 등 보행자 동선과 명확히 분리하여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 등 이용 가능한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한다.
- 주차장 출입구 안내사인은 도로에서 쉽게 눈에 띄어 인지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 등 이용 가능한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훨체어이용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단차를 제거한다.
 -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 등 이용 가능한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계획한다.

주차장 및 차량 출입구 > 주차구역

- 일반주차구역의 크기는 신체적 차이에 따른 문제가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직각주차 형식의 경우, 폭 2.5m 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설치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직각주차 형식으로 계획한다.
 - 직각주차 형식의 경우,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계획하고, 측면에 폭 1.2m 이상의 훨체어 활동 공간을 노면에 표시한다.
 - 평행주차 형식의 경우, 폭 2m 이상, 길이 6m 이상으로 계획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1/50 이하로 계획한다.
-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한다.
- 보행안전통로의 유효폭 및 유효높이, 바닥마감 등의 설치기준은 ‘1.2 보행 접근로’의 기준에 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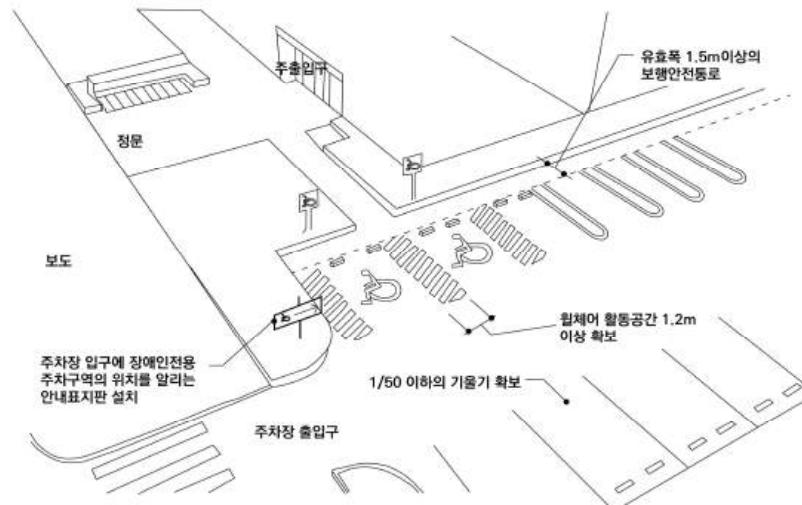
주차장 및 차량 출입구 > 안내 및 유도표시

- 대지경계선의 차량 진출입구부터 주요 굴절지점에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 구역선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장애인전용표시를 설치한다.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역번호)○○○ -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지역번호)○○○ -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및 차량 출입구 > 안전 계획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 등 이용 가능한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바닥에 보행통로를 도색하고 차량의 간섭이 전혀 없도록 계획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 등 이용 가능한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가 어쩔 수 없이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과 질감은 차도의 바닥재와 다르게 마감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내표지판은 보행에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경 구간 등의 공간에 설치한다.
- 계도문(입식안내표지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전면의 벽에 부착(벽부형)하여 보행자의 보행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1. 공통공간 2. 학습공간 3. 휴식교류공간 4. 지원공간 5. 지역교류공간

1.4 학교 경계설치(담장, 옹벽 등) 외부접근

학교 경계설치 > 담장 및 옹벽의 역할

- 단순 치안과 안전을 위한 경계뿐만 아니라 학교의 상징 및 정체성을 담은 타일을 사용해서 담장 및 옹벽을 계획한다.
 - 학교의 상징 및 정체성 뿐 아니라 지역의 역사를 상징하는 타일을 사용한다.
 - 또한, 자연친화적인 벽화 혹은 타일을 사용한다.



그림 5 지역역사가 담긴 타일 담장



그림 6 자연친화적인 담장 예시

학교 경계설치 – 담장 > 형태

- 담장 안팎으로 자연감시가 가능한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하고 디자인 패턴은 세로형으로 계획한다.
- 담장의 높이는 접근통제가 목적이므로 학교 주변 상황이나 담장에 설치되는 보안 시스템 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다.
 - 안전한 지역인 경우 바닥면에서 최소 높이 1.5m 이상으로 설치한다. (권장)
 - 위험에 노출이 많은 지역인 경우 바닥면에서 최소 높이 2.0m 이상으로 설치한다. (권장)
- 담장의 주 지지대는 접근통제를 위해 학교부지(대지) 한쪽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 야간에도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등의 목적으로 담장 주변의 상황을 인식 가능한 설비를 비치해야 한다.
- 담장 주변으로 자연스러운 관목 중심의 식재처리로 이질적이고, 획일적인 기단부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한다.

학교 경계설치 – 담장 > 주변 환경

- 담장 주변 안팎으로 나무, 기둥, 구조물 등과 같이 기어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는 시설물 설치나 적치물을 두지 않아야 한다.
 - 담장 주변 안팎으로 교목을 식재할 경우는 경계로부터 2m 이상 이격하여야 하며 지하고가 2.5m 이상이 되는 대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권장)
 - 교목은 바닥에서부터 2.5m까지는 자연감시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이나 구조물 설치를 지양 해야 한다. (지피류 식재나 관목 식재는 가능) (권장)

학교 경계설치 – 옹벽 > 형태

- 옹벽부를 제외한 담장의 높이는 ‘1.4 학교경계설치의 담장 > 형태’의 기준을 준용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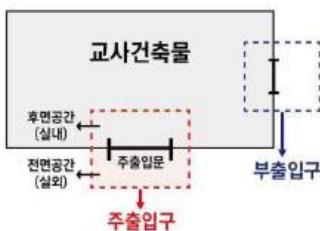
- 외부와의 단차부분은 자연스런 옹벽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 옹벽부 경사는 식재가 가능한 정도로 설계한다. 특히, 구릉지나 산 주변의 학교시설의 경우 산사태를 예방하는 설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정기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1.5 건물출입구(주/부출입구) 외부접근

법적 기준 및 관련 지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고

■ 건물출입구 참고자료 1



건물출입구 >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의 역할

-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로의 이동 및 이용이 많을 경우, 부출입구의 가이드라인은 주출입구 기준에 준용하여 계획한다.

건물출입구 > 배치 및 위치

- 주·부출입구의 위치는 학교시설을 처음 방문한 사람이라도 대지 출입구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주차구역에서 인지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한다.
- 주·부출입구에서 실내로 들어서면 각 실의 배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 계단, 화장실 등의 접근이 쉬운 공간구조로 계획한다.
- 야간에도 주·부출입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조명을 설치하고, 충분한 밝기의 조도를 확보하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LED 조명기구를 적극 활용한다.

건물출입구 > 전·후면공간

- 주·부출입구의 전·후면공간에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하더라도 혼잡하지 않도록 시설의 규모에 비례하여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 옥외 전면공간의 상부에는 비, 눈, 햇빛으로부터 보호되는 지붕 등의 차양시설을 설치하되 기둥 등이 보행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모든 출입문의 전·후면에는 휠체어 이용자가 문을 열거나, 경사로 이용 시 회전이 가능하도록 수평면으로 된 활동 공간을 충분히 계획한다.
 - 자동문, 미닫이 문 : 문 끝에서 1.2m 이상 수평면으로 된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 여닫이 문 : 문이 열린 상태에서 문 끝에서 1.2m 이상 수평면으로 된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 모든 출입문의 개폐를 위한 손잡이 측 벽면에는 휠체어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를 위하여 일정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 휠체어 이용자의 활동 폭을 고려하여 0.6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건물출입구 > 유효폭

- 모든 건물의 주·부출입구의 출입문은 휠체어 이용자가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효폭을 충분히 확보한다.
 - 출입문의 유효폭은 1.2m 이상 확보하여 계획한다.
- 전면유효거리는 휠체어의 회전 및 출입문의 개폐 동작에 어려움이 없도록 계획한다.
 - 여닫이문의 경우 열리는 쪽은 1.5m 이상, 반대쪽은 1.2m 이상 확보한다.
 - 미닫이문의 경우 좌우폭 1.9m 이상, 깊이 1.2m 이상을 확보한다.
- 모든 출입문의 하부에는 문틀, 씰 등을 매립 설치하여 단차가 없도록 계획한다.



그림 7 ○○초중학교 주출입구, 부출입구 단차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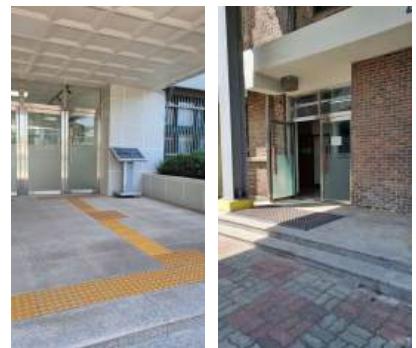


그림 8 □□ 초등학교 주출입구, 부출입구 단차O

건물출입구 > 주·부출입문

- 주·부출입문은 휠체어 사용자와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어려운 회전문으로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며, 양손에 짐을 들고 있는 사람 등 누구나 접근 및 이동이 편리한 자동문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주·부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상시를 대비해 별도로 수동 개폐 할 수 있는 문을 병설하고,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 옆에 설치하여야 한다.
 - 수동개폐문은 여닫이문이나 미닫이문으로 설치한다.
- 주·부출입문 전·후면에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한다.
 - 출입문 전후면 0.3m에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바닥 색상 및 재질을 달리하여 계획한다.
- 문을 유리로 계획할 경우 어린이나 시각장애인 등이 유리면에 부딪히지 않도록 수평띠나 인지하기 쉬운 주위 환기용 표식 등을 부착한다.
 - 수평띠는 바닥면에서 1.5m 높이에 폭 10cm 이상으로 설치한다.
- 유리문은 손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도록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며, 유리문은 파손이 어려운 강화유리 등으로 계획한다.
- 주출입문에 접근하기 위한 경로 상에는 계단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단이 있는 경우, 기준에 맞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경사로를 이용하는 장애학생 및 이동약자 등이 멀리 돌아가지 않도록 계단에 인접하여 경사로를 설치한다.



그림 9 ○○초등학교 주출입문 수평띠



그림 10 ○○고등학교 주출입문 앞 계단과 경사로

1. 공통공간 2. 학습공간 3. 휴식교류공간 4. 지원공간 5. 지역교류공간

건물출입구 >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KoddiUD온고딕’*이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서체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읽기
쉽고, 익숙한 명조꼴의 편안한
손맛을 응용하여 고딕
글꼴임에도 불구하고 가독성
높게 디자인했다.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 출입문의 손잡이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설치한다.
 - 수직막대형 손잡이의 경우, 중앙지점이 바닥면에서 0.8m~0.9m에 위치하도록 계획한다.
- 주출입구 측면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지판을 설치한다.
 - 점자표지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실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한다.
 - 점자표지판에 사용하는 글씨체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개발한 ‘KoddiUD온고딕’* 폰트로 사용한다. (권장)



건물출입구 > 기타

- 대지경계선에서부터 건축물의 주출입구까지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설치한다.
- 주출입구 측면의 촉지도식 안내판은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으로 이어지는 출입문의 측면에 설치한다.
- 주출입구에 시각장애인의 출입을 위해 점자안내판과 함께 음성안내 장치를 설치하며, 청각장애인을 위해 문자안내를 병행하도록 한다.
- 점자안내판은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으로 이어지는 출입문 측면에 설치하며, 동선 내에 보행 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 문자안내와 안내판은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등의 방문을 고려하여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픽토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 픽토그램*이란? 사물이나 시설, 사회적인 행위나 개념 따위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나타낸 그림 문자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EDUCATION / SCHOOL & UNIVERSITY

30 PREMIUM ICONS



1.6 복도 내부이동

복도 > 구조 및 동선

법적 기준 및 관련 지침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고

■ 복도 참고자료 1



그림 11 ○○중학교 복도



그림 12 ○○초중학교 복도

복도 > 유효폭 및 바닥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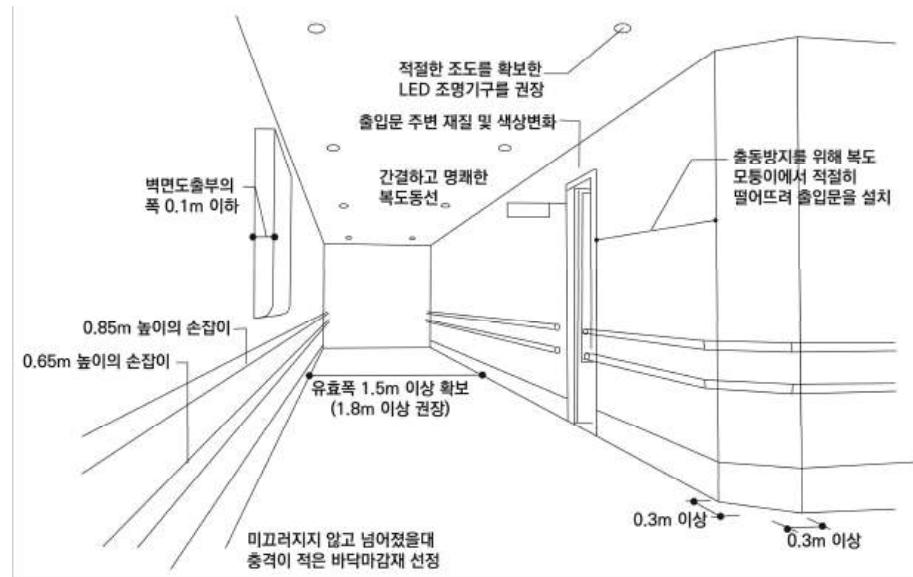
- 휠체어를 포함한 다양한 이용자의 이동을 위하여 실내복도의 단차는 제거한다.
 - 어쩔 수 없이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한 경사로를 설치한다.
- 모든 복도는 휠체어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도록 유효폭을 확보한다.
 - 복도의 유효폭은 최소 1.5m 이상, 통행량이 많은 복도는 휠체어가 상호 교행 할 수 있도록 1.8m 이상 확보한다.
-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교육연구시설의 복도 폭은 다음 기준에 준하여 계획한다.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복도 양옆에 교실이 있는 경우 2.4m 이상 확보해야 하며, 기타 복도는 1.8m 이상 확보해야 한다.
- 바닥 마감재는 잘 미끄러지지 않고 충격을 흡수하는 울림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며, 이음새 틈이나 미세한 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坦하게 설치한다.
 - 복도 폭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 등이 통행하기 쉬운 마감재와 시각 장애인 등이 걷기 쉬운 마감재 등으로 나누어 설치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 바닥마감은 ‘물갈기’ 형태의 마감으로 계획하지 않도록 한다.
 - ‘물갈기’ 형태란 대리석 본연의 미끄러운 단면 재질의 상태를 의미한다.
- 단차로 오인하기 쉬운 문양이나 패턴의 바닥마감은 지양한다.

복도 > 안전계획

- 복도에 노출되는 벽, 기둥 모서리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한다.
 - 보행자가 안전하고 쉽게 방향전환을 할 수 있도록 벽 모서리를 0.3m 이상 사선 방향 또는 등글게 면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복도에 독립 기둥이 설치된 경우 고무재질의 코너 보호대 등을 이용하여 충돌 방지조치를 하도록 한다.
 - 각종 돌출형 안내표지판 등 일정 높이 이상에 설치하여 보행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돌출형 안내표지판은 바닥에서 2.1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 바닥면에서 높이 0.6m~2.1m의 벽면 돌출물의 돌출 폭은 0.1m 이하로 계획한다.
 - 화장실 및 여닫이 출입문은 가능한 실내 측으로 열리도록 계획하여 복도를 이동하는 학생 등의 충돌을 방지하도록 한다.
 -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도록 소화기, 신발장 등은 벽면 매립식(Built-in, Built-in)으로 설치한다.
 - 벽면 매립식이 어려운 경우는 보도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복도 > 손잡이

- 복도에 손잡이를 설치할 경우, 진행방향, 몸의 균형유지, 보행보조, 추락방지 등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므로,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 위치, 형태, 설치 방법을 결정한다.



- 손잡이는 반드시 연속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손잡이의 단면 형상은 움켜잡기 쉬운 크기의 원형으로 하고, 차갑지 않은 재질로 설치한다.
- 시각장애인에게 손잡이는 현재의 위치, 진행방향, 주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므로, 필요한 위치마다 손잡이 상부 면에 점자로 정보를 표시한다.
- 손잡이는 장애학생 등 다양한 사용자의 신체적 조건 및 이용행태를 고려하여 가급적 2단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 하단 손잡이와 벽의 이격 거리는 손잡이 직경의 1/2만큼을 더하여 상단 손잡이보다 복도 측으로 내밀게 설치하는 것이 하단 손잡이를 잡기에 용이하다.
- 손잡이의 시작과 끝 부분에 옷자락 등이 걸리지 않도록 아랫방향 또는 벽 방향으로 굽히거나 2단 손잡이는 상하 손잡이를 연결하여 설치한다.



그림 13 ○○중학교 복도 손잡이



그림 14 ○○유치원 복도 이중 손잡이

복도 > 조명(조도)계획

- 학생 등의 접근 및 이동 등의 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도록 한다.
- 한국산업규격(KS) 기준에 적합한 조도기준을 확보하도록 한다.

공간	조도범위(lx)	작업면 조명방법
계단, 복도, 승강구	300-400-600	작업면 조명

- 통행 시 눈부심이 없도록 하며, 발밑조명, 비상용 조명 장치를 적절히 배치한다.
- 통행에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고 눈부심이 없도록 하며, 발밑조명, 비상용 조명 장치를 적절히 배치한다.

복도 > 환경색채 및 마감

- 학생 등이 자신의 위치 및 목적지를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층별, 또는 영역별로 구분하여 색채를 계획한다.

1. 공통공간 2. 학습공간 3. 휴식교류공간 4. 지원공간 5. 지역교류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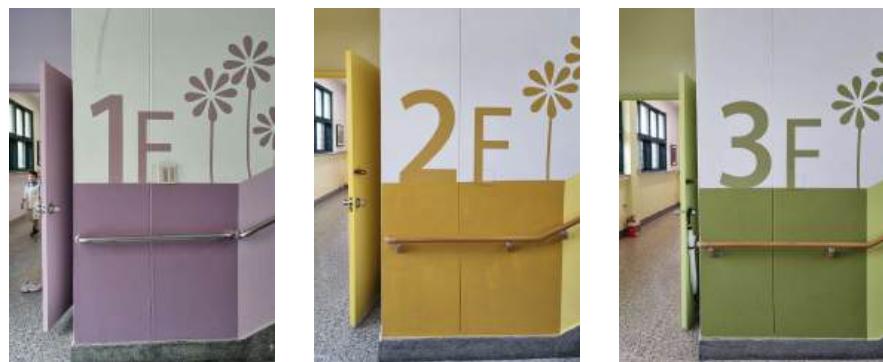


그림 15 ○○초등학교 복도 층수 표시

- 정서발달에 좋은 재질 및 색상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약시나 어느 정도 빛을 느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가급적 중복도가 아닌 편 복도로 하여 자연채광을 확보하거나 한쪽 벽면의 색을 바꾸어 방향성을 인식하기 쉽도록 설치한다.
- 각 실의 출입문 주변이나 휴게 등 특정 공간으로 이어지는 바닥은 패턴을 달리하여 변화감 있는 공간으로 연출한다.

1.7 실내 출입문 내부이동

실내 출입문 > 출입문 및 마감재

법적 기준 및 관련 지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건축법 시행령 제39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고

- 실내출입문이 복도통행 및 실내출입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문 반대편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투시창을 설치한다.
- 자동문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 시간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 범위를 넓게 해야 한다.
 - 특히, 접촉 시에는 작동이 멈추도록 제동기능 센서와 장치를 의무화해야한다.
- 미닫이문일 경우 가벼운 재질로 하고,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교실을 출입하는 사람과 복도를 통행하는 사람과의 충돌 방지를 위해 실내 출입문의 설치 위치는 복도가 꺾이는 모퉁이 부분에서 충분히 떨어진 곳으로 하며, 필요 한 경우에는 출입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기 위해 알코브형태로 계획한다.
- 복도 벽면 마감재와 실내출입문의 색상 등을 달리하여 출입문을 인지하기 쉽게 하 고,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문턱이나 흄과 같은 단차가 없이 계획한다.

실내 출입문 > 유효폭 및 단차

- 출입문의 폭보다 통과 유효폭이 좁다는 점에 유의하여 유효폭을 확보한다.
- 1.1m 이상의 여닫이문은 여닫기가 힘들고 문과 휠체어의 회전범위가 커져 오히려 불편하므로 지나치게 큰 폭의 여닫이문은 설치를 지양한다.
 - 출입문의 유효폭은 0.9m 이상 확보한다. (의무), 미닫이문일 경우 유효폭 1.2m 이상 확보 한다. (권장)
 - 출입문의 손잡이 측 벽면에는 0.6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 실내 출입문의 하부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흄을 설치하지 않는다.

실내 출입문 > 문손잡이

- 유아, 저학년 학생, 양손에 짐을 들고 있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등을 위해 적은 힘으로도 문을 손쉽게 여닫을 수 있는 문손잡이를 설치한다.
 - 문손잡이 형태는 돌려서 사용하는 노브형은 지양하고, 반드시 수평 또는 수직 막대형이나 레버형으로 설치한다.
 -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0.8m~0.9m 높이에 설치한다.
- 출입문의 손잡이 측 벽면의 1.5m 높이(점자표지 기준)에 실명안내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 시각 장애인의 이용을 배려한다.

1.8 수직 이동설비(계단 및 승강기)

내부이동

수직이동설비 > 계단의 형태 및 마감

법적 기준 및 관련 지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고

- 계단은 평상시 층간 이동에 유용한 공간이면서 화재 등 비상시 피난 이동경로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므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형태와 유효폭 등을 갖춰야 한다.
 - 계단의 바닥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한다.
 - 계단코에는 줄눈 넛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한다.
- 저학년 학생, 장애학생 등이 높은 계단을 오르내릴 경우 잠시 휴식할 수 있고, 실족 시에 계속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계단 중간에 계단참을 설치하도록 한다.
 - 수평면으로 된 참은 바닥면에서 높이 1.8m 이내 마다 설치하고, 수평면으로 된 1.5m×1.5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 수평면 기준으로 상 하 계단 수를 동일하게 설치한다.
-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m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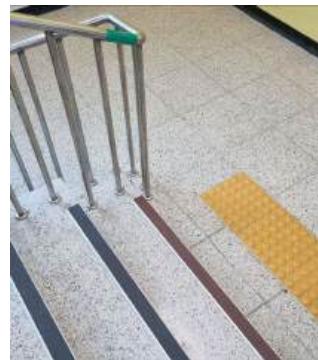


그림 16 계단 끝 점형블록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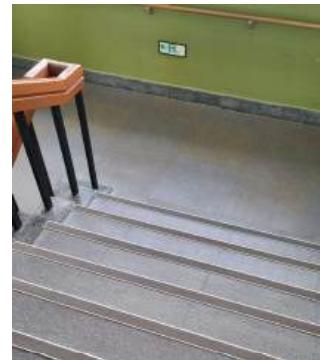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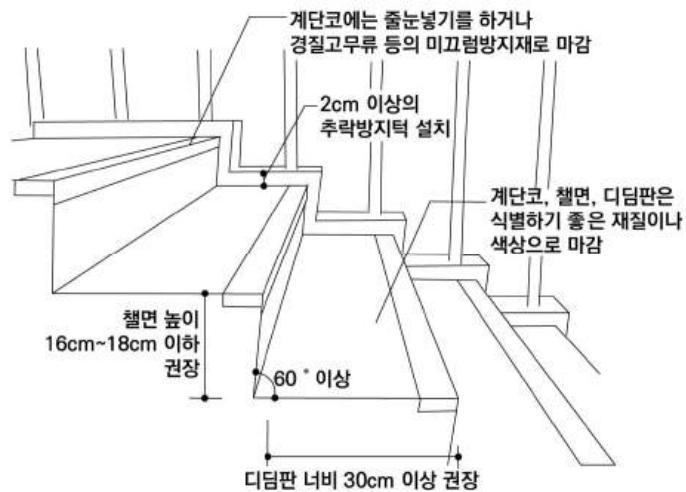


그림 17 계단 끝 점형블록 미설치



수직이동설비 > 계단의 유효폭 및 크기

- 계단의 유효폭 및 높이는 2명이 여유있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계단의 유효폭은 1.5m 이상, 머리가 계단 하부에 부딪히지 않도록 2.1m 이상 높이를 확보한다.
- 한 개의 계단에서 디딤판 너비와 챠면 높이가 도중에 바뀌게 되면 넘어지는 주 원인이 되므로, 균일한 치수로 하여야 한다.
- 목발이용자 등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챠면을 반드시 설치한다.
 - 초등학교 계단의 챠면의 높이는 0.16m 이하, 디딤판의 너비는 0.3m 이상으로 계획한다.
 - 중·고등학교 계단의 챠면의 높이는 0.18m 이하, 디딤판의 너비는 0.28m 이상으로 계획한다.
 - 챠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 이상으로 하며, 계단코는 3cm 이상 돌출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수직이동설비 > 계단 기타 설비

- 계단의 양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양쪽 측면에 모두 설치한다.
 - 계단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에서 0.85m 높이에 설치한다.
 - 저학년 학생의 이용을 고려하여 바닥에서 0.65m 높이에 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한다.
 -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m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한다.
 -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한다.
- 계단의 측면에 벽면 등이 없는 경우에는 어린이 등이 추락하지 않도록 손잡이 지지대의 사이 간격에 유의하며, 지지대는 수평형이 아니라 수직형으로 해야 하며, 영유아의 신체가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록 난간 사이의 간격을 확보한다.
 - 난간 사이의 간격은 8cm이하로 계획한다.
 - 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하부에 바닥면에서 높이 2cm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한다.

수직이동설비 > 계단 안전계획

- 계단이용 시, 넘어지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디딤판, 챠면, 계단코는 약시 등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바닥마감재의 색상·명도·채도, 질감 등을 달리하도록 한다.
- 계단 손잡이의 난간살은 난간이 수직재인 경우, 디딤판 한단에 2개 이상으로 하고, 수평재인 경우에는 15cm 이하로 한다.
- 옥상 및 계단참에 설치하는 난간의 난간살은 가능한 한 수직재로 계획하여, 학생들이 밟고 올라가지 않도록 설치한다.

1. 공통공간 2. 학습공간 3. 휴식교류공간 4. 지원공간 5. 지역교류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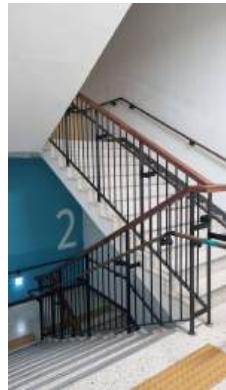


그림 18 ○○고등학교 계단 사례



그림 19 ○○유치원 계단 사례

수직이동설비 > 승강기 위치 및 크기

- 엘리베이터는 유아, 저학년 어린이, 장애학생, 짐을 가진 사람 등의 층간이동에 매우 편리한 수직이동 수단이므로, 층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 승강로비는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인지하기 쉽고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며, 각 층에서는 그 층의 중심공간으로 접근이 쉽게 배치한다.
- 계단 등의 수직이동 수단과 근접 설치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이동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 승강기 전면에는 1.4m×1.4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바닥 사이에는 턱이 없어야 하며, 틈은 3cm 이하로 한다.
 -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6m 이상, 깊이 1.4m 이상으로 한다.
 - 승강기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설치한다.

수직이동설비 > 승강기 설비

- 호출버튼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 등 저학년 학생, 훨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등 누구나 알기 쉽고 조작하기 쉬운 구조로 계획한다.
 - 승강기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는 바닥면에서 0.8m~1.2m 범위에 설치한다.
 - 훨체어 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높이는 바닥면에서 0.85m 내외로 하여, 수평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한다.
 - 내부의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m~0.9m의 위치에 연속하여 설치한다.
-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총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시를 한다.
- 승강기 내부에서 훨체어가 180° 회전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훨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m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한다.
- 장애학생 등이 엘리베이터를 잠시 앉아 기다릴 수 있도록 의자 등을 둘 수 있는 공간 확보를 고려하며,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잠시 걸터앉을 수 있도록 접이식 의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수직이동설비 > 승강기 안전계획

- 광감지식 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에서 0.3m~1.4m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 장치를 설치한다. 특히 장애학생 등은 행동특성상 반응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문의 닫히는 속도를 열리는 것보다 느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한다.
 - 층수 선택버튼이 버튼(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커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깨지면서 최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한다.
-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도록 계획한다.

수직이동설비 > 계단 및 승강기 조명(조도)계획

- 계단은 에너지절감과 쾌적함을 위해 외벽에 면한 계단은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측창이나 천창을 설치하는 등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한다.
- 야간에도 발을 헛딛지 않도록 천장조명, 발밑조명, 비상용조명 등을 적재적소에 설치하여 디딤판과 챕면의 구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 승강기 전면의 활동 공간은 학생 등의 승강기 승/하차 등의 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도록 한다.
- 한국산업규격(KS) 기준에 적합한 조도기준을 확보하도록 한다.

공간	조도범위(lx)	작업면 조명방법
계단, 복도, 승강구	300~400~600	작업면 조명

1.9 방재 및 피난시설

내부이동

방재 및 피난시설 > 위치 및 형태

법적 기준 및 관련 지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참고

- 피난경로는 시설규모가 작더라도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하며, 막다른 복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코니 등을 설치한다.
- 피난경로에는 순차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공간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복도, 로비, 전실,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등을 안전구획으로 설치한다.
- 학생들이나 이용자가 도로나 공지에 용이하게 다다를 수 있는 경로, 소방대가 시설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m 이상이어야 한다.
 - 자동문 설치 시 문의 개폐 시간은 3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 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구성원이 문의 손잡이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방재 및 피난시설 > 옥외 공간 및 피난발코니

- 피난층을 제외한 층 중에서 장애학생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실이 있는 해당 층에는 층별, 주요실 별로 외부 피난이 가능한 옥외 공간, 발코니 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 내부의 화염과 연기로부터 안전한 옥외공간이나 피난발코니 등의 일시 대피공간은 여러 명이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지상 등 안전한 곳으로 피난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방재 및 피난시설 > 마감재

- 내장재 제한 및 방재설비 설치에 대한 세부내용은 건축법과 소방법에 준한다.
- 내장재는 기본적으로 불연·준 불연 재료를 사용하여 급격한 연소 확대를 방지하도록 한다.
- 장애 학생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시설은 시설 규모가 작더라도 화재발생 초기단계에 작동하는 스프링클러의 설치를 권장한다.



그림 20 ○○초등학교 피난설비



그림 21 □□초등학교 피난설비

1.10 안전설비 내부이동

안전설비 > 사각지대관리

- 보행이용자 측면에서 모든 외부공간(출입구와 담장경계 포함)은 장비의 사각지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시스템화를 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CCTV, 자연감시, 조명 등의 장비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지 수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한다.
 - 건축물 벽면의 요철 구조, 조경 식재, 부지 바닥의 높이 차이로 인해 예상되는 사각지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차량이용자의 사각지대는 언제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서의 차량 속도는 최소한으로 하며, 가급적 주변 통행자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 차량속도는 10~20km/h 이내로 유도한다.
 - 차량이용공간(주차장, 차량통행로 등)에 설치되는 안전시설의 높이는 충분한 시야확보가 가능하도록 바닥에서부터 0.8m 이상 높이로 설치한다.

1.11 화장실 내부위생

법적 기준 및 관련 지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고

화장실 > 위치 및 접근성

- 화장실은 계단, 승강기 등과 함께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장애 학생을 포함하여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층마다 설치하여 사용편의성과 접근성을 확보한다.
-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면서 주변 시선의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반화장실 내부에 함께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부득이하게 따로 구분해서 설치할 경우 각 층별로 남녀를 구분하여 1개소 이상 설치해야하며, 일반화장실 출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가족 혹은 보호자가 함께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일반 화장실 내부에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 경우 출입문은 자동문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훨체어 이용자가 지나갈 수 있는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 화장실 출입문의 유효폭은 0.9m 이상 확보한다. (의무), 자동문이나 미닫이문일 경우 1.5m 이상 확보한다. (권장)
 - 휠체어 이용자가 불편함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단차는 없게 계획한다.
- 화장실은 외기에 면하게 배치하여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적극 활용한다.



그림 22 ○○초등학교 화장실 출입구 및 점자 표시



그림 23 □□초등학교 화장실

화장실 > 유형 및 마감재

- 유아 및 어린이의 이용이 많은 학교시설은 어린이용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며, 밝고 청결하며 경쾌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색채계획, 마감재 등을 선정한다.
- 타일 혹은 판석마감인 경우에는 0.05m 이하의 줄눈으로 걸려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평탄하게 마감한다.
- 바닥, 벽, 천장의 마감재는 오염에 강하고 자국, 흠집이 생기지 않는 내마모성이 우수하며 미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마감재를 사용한다.
 - 특히 청소하기 용이하도록 틈새가 적고, 파손 시 마감재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
- 복도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화장실 출입구 주변 벽, 바닥, 천장마감재 등을 달리 하여 남녀화장실,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의 시인성을 높이도록 한다.
 - 특히 외국인 학생 등 누구나 알기 쉬운 픽토그램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에 점자표기를 포함한 남녀 구분안내표지, 화장실 내부를 안내하는 촉지도식 안내표지, 음성유도장치 및 점형블록 등을 설치한다.
 - 벽면 높이 1.5m 위치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한다.

화장실 > 세면대

- 세면대는 다양한 이용 행태를 위해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 세면대는 신체적 조건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높이에 설치한다.
 - 상단높이 기준 바닥면에서 0.85m 이상, 하단 깊이 0.45m 이상, 높이 0.65m 이상으로 설치하여 세면대 하부공간을 확보한다.
 - 세면대는 카운터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거울은 이용자의 다양한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전면거울을 설치한다.
 - 세면대 전면의 거울은 세로로 0.65m 이상, 하단높이가 바닥면에서 0.9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 세면대의 거울은 가로 0.6m 이상, 세로 0.9m 이상의 전면 거울로 설치한다.
- 세면대 수도꼭지는 광감자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레버식 일 경우, 냉수·온수 구분을 위해 색상과 점자표시를 부착한다.
- 세면대 주변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핸드드라이어, 종이 타올, 선반, 외투걸이, 우산걸이 등을 설치한다.
 - 세면대 주변에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높이의 핸드 드라이어 및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 어린이용 세면대는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한다.
 - 바닥면에서 세면대 상단까지의 높이가 0.6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대를 설치해야 한다.



그림 24 ○○중학교 세면대



그림 25 □□초등학교 세면대



그림 26 ○○초등학교 세면대

화장실 > 소변기

- 남자 화장실 내의 소변기 중 1개소 이상의 소변기는 바닥 부착형으로 설치한다.
- 소변기의 양옆에는 개인 프라이버시 존중을 위한 가림막을 설치한다.
 - 가림막의 길이는 벽면에서 0.2~0.3m 내외로 돌출되도록 설치한다.
 - 가림막의 높이는 바닥면에서부터 1.5m 이상부터 0.45m 내외로 설치한다.
- 장애인 등의 다양한 이용자들을 위한 소변기의 양옆에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한다.
 -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0.8m~0.9m 내외, 길이는 벽면에서 0.55m 내외, 좌우 손잡이 간격을 0.6m 내외로 한다.

1. 공통공간 2. 학습공간 3. 휴식교류공간 4. 지원공간 5. 지역교류공간

-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1.1m~1.2m, 돌출 폭은 벽면에서 0.25m 내외로 하며, 하단부가 훨체어의 이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바닥면에서 0.2~0.3m의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화장실 > 일반 대변기부스

- 대변기부스의 유효바닥면적은 다양한 신체적 특성을 지닌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계획한다.
 - 유효바닥면적은 폭 1.0m 이상, 깊이 1.8m 이상 확보한다.
- 대변기부스 출입문은 사람들이 출입하기 원활한 유효폭을 확보하며, 여닫이문일 경우 문 개폐 방향은 바깥쪽으로 열리도록 한다.
 - 출입문의 유효폭은 0.9m 이상 확보한다.
- 대변기부스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춰야한다.
 - 잠금장치는 견고하면서도 쉽게 조작할 수 있고, 비상시 외부에서 열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세정 장치는 광감지식, 누름버튼, 레버식 등 작동이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도 고려하여 점자를 표기한다.
- 세정 장치, 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 대변기부스 내에 가방이나 짐을 둘 수 있는 선반이나 옷 등을 걸 수 있는 후크 등을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한다.
- 대변기는 양변기로 설치하며,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일정 비율의 화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
- 어린이용 대변기는 어린이전용 양변기를 설치하도록 하며, 일반 양변기와 겸용할 경우에는 어린이전용 변기좌대를 설치해야 한다.

화장실 >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 화장실

- 출입문은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한 버튼식 형태의 잠금장치를 설치하며, 잠금장치는 비상시 외부에서 열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출입문의 유효폭과 전면공간의 통로는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 출입문의 전면공간은 훨체어가 방향전환 할 수 있는 폭 1.5m 이상을 확보한다.
 -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9m 이상을 확보하고, 자동문으로 설치한다.
- 유효바닥면적은 훨체어 사용자 등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한 활동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폭 2.0m 이상, 깊이 2.1m 이상, 대변기 측면에 0.75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 대변기의 전면에는 훨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5m×1.5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 대변기는 양변기로 좌대높이는 훨체어의 규격과 비슷하게 계획하여 훨체어 이용자 가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좌대높이는 바닥면에서 0.4m~0.45m 내외의 높이로 설치한다.

- 대변기 측면 벽면에는 이용자가 보조할 수 있는 수평, 수직 손잡이를 설치한다.
 - 수평손잡이는 높이 0.6m~0.7m 위치에 설치하며, 변기 중심에서 0.4m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한다.
 - 수평손잡이와 연결하여 0.9m 이상의 길이로 수직손잡이를 설치한다.
 - 다른 쪽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m 내외로 설치한다.
- 세정장치는 광감지식, 누름버튼, 레버식 등 작동하기 쉬운 형태로 한다.
-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불이 켜지는 문자시각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손잡이는 차갑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움켜잡기 쉬운 두께로 설치한다.
 - 손잡이 단면 지름 3.2cm~3.8cm의 범위로 설치한다.
-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내부의 세면대는 카운터형으로 설치하고, 양 옆에 수평손잡이를 상하회전형으로 설치한다.
- 이외의 사항은 일반화장실(일반 대변기부스)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한다.



그림 27 ○○초등학교 장애인용 화장실



그림 28 □□초등학교 장애인용 화장실

화장실 > 안전성 및 쾌적성

■ 장애인 화장실 참고자료 1



-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며, 비상시에 호출 등 대응이 가능한 구조와 공간계획을 해야 한다.
 - 화장실 안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화장실 외부에 설치된 경광등에 적색불이 켜지면서 경보음이 울려 위급 상황임을 알릴 수 있도록 한다.
-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시야가 확보되어야 하고, 부적절하거나 위험한 행동이 발생하기 어려운 공간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 화장실 내 위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벨은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세면대 주변, 대변기부스마다 손이 달기 쉬운 높이에 설치한다.
 - 비상벨은 대변기와 가까운 곳에 바닥면에서 0.6m~0.9m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되, 바닥면에서 0.2m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비상벨에 대한 설명 및 작동법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부착한다.

1. 공통공간 2. 학습공간 3. 휴식교류공간 4. 지원공간 5. 지역교류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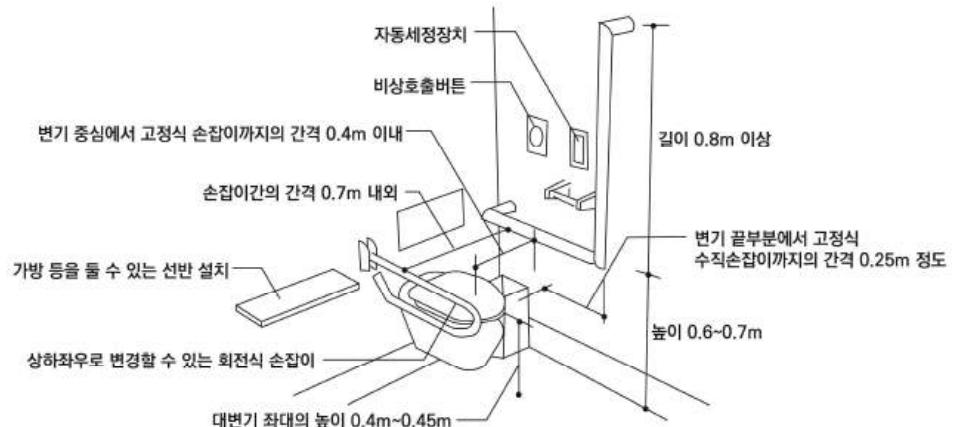
- 화장실 내부에는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기를 설치한다.
- 조명설비는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붙인다.
 - 화장실, 샤워실 등 습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조명기구는 가능한 방수형으로 한다.
- 화장실 내부는 쾌적하고 청결한 느낌을 주는 색채의 마감재를 사용하고, 이와 어울리는 조명등과 색상을 고려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한다.

화장실 > 조명(조도)계획

- 저녁 시간이나 흐린 날을 기준으로 조도기준을 설정하여 부족한 조도를 향상 시키고 눈부심 없는 부드러운 조명계획을 수립한다.
- 학생 등이 대변기로의 접근 및 조작기기의 작동, 탈의 등을 하기에 충분한 조도를 확보한다.

공간	조도범위(lx)	작업면 조명방법
세면대/화장실	60-100-150	공간의 전반 조명

- 조명은 눈부심 없는 부드러운 조명계획을 수립하며, 발열량이 적고 고효율인 LED 조명기구를 활용하도록 한다.
- 한국산업규격(KS) 기준에 적합한 조도기준을 확보하도록 한다.



1.12 탈의실 및 샤워실 내부위생

탈의실 및 샤워실 > 설치장소 및 구조

법적 기준 및 관련 지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고

- 탈의실 및 샤워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한다.
-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계획한다.
- 탈의실과 샤워실의 출입문 단자는 제거하여 모두가 이용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탈의실과 샤워실에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충분한 바닥면적과 손잡이를 함께 계획한다.
 - 샤워실(샤워부스 포함)의 유효바닥면적은 $0.9m \times 0.9m$ 또는 $0.75m \times 1.3m$ 이상으로 설치한다.
 - 샤워실 내에는 장애인 등이 신체 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를 설치한다.

탈의실 및 샤워실 > 기타설비

- 샤워실의 바닥면 기울기는 1/30 이하로 계획하고,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한다.
-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한다.
- 샤워기는 얇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한다.
- 샤워실 내에는 훨체어 이용자 등의 접근이 편리한 위치에 샤워용 접이식의자를 설치한다.
 - 샤워용 접이식의자의 높이와 깊이는 0.4m~0.45m로 설치한다.
- 탈의실의 수납공간의 높이는 훨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에서 0.4m~1.2m로 설치하며, 하부는 무릎 및 훨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한다.

탈의실 및 샤워실 > 안전 및 조명 계획

- 탈의실 및 샤워실 내부에는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기를 설치한다.
 - 탈의실 내에만 설치할 경우에는, 샤워실 내에서도 확인 가능하도록 샤워실 출입문 상부를 투명유리 등으로 계획한다.
- 조명설비는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붙인다.
- 샤워실 등 습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조명기구는 방수형으로 한다.
- 학생 등이 탈의를 하기에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도록 한다.
- 한국산업규격(KS) 기준에 적합한 조도기준을 확보하도록 한다.

공간	조도범위(lx)	작업면 조명방법
탈의실	60-100-150	공간의 전반 조명

2.1 일반학급 교사

법적 기준 및 관련 지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참고

일반학급 > 교실 출입문

- 교실 출입문은 ‘1.7 실내출입문’ 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일반학급 > 교실 내 통로 및 구성

- 교실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기본적인 안전과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일시적 또는 장기적) 장애를 가진 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구성원이 학습 과정에 배제됨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교실 내의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 가능한 책상까지 원활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접근 경로의 유효폭을 충분히 확보한다.
 - 접근경로의 유효폭은 0.9m 이상의 폭을 확보한다.
 - 접근경로의 회전구간은 1.4m 이상의 폭을 확보한다.
- 학생들의 성장 정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책걸상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그룹 활동에 따른 책걸상 이동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가볍고 이동이 용이한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학급 > 교구 및 기자재

- 가급적 불박이 가구 등 고정된 가구들을 적게 두는 것이 유리하고, 교실 가까이 휠체어나 보조기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학습지원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며 개별 상황에 맞게 실내온도와 통풍을 단계별로 직접 조절 가능하도록 설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초등학교 교실은 교실과 교실 사이의 가변적 파티션 벽체시스템 설치 또는 교실 복도 사이를 개방하거나, 투명한 가변형의 벽체로 구성하여 복도 공간을 교수-학습공간으로 확장하는 것 등을 통해 전형적인 학습공간을 탈피하고 학습경험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학습의 대부분은 말하기와 듣기, 시청각정보 활용하기를 통해서 이뤄지기에 교실 내 시각환경과 음환경에 대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 칠판, 책상, 의자 등의 교구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높이, 하부공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 교탁은 휠체어 이용자의 이용을 고려하여 바닥면에서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 책상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에서 0.7m~0.9m로 계획한다.

일반학급 > 안전계획

- 미닫이문에는 손끼임 방지설비를 설치하며, 손잡이와 문틀 사이에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 문틀 사이에 여유 공간은 5cm 이상의 공간을 둔다.
 -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문이 자동으로 천천히 닫히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한다.
- 반대편이 보일 수 있도록 일정 높이에 고정된 유리창을 설치하며, 유리는 충격에 의한 관통 및 파손 시 파편의 비산이 없도록 한다.
- 창대의 높이가 실내바닥면에서 1.2m 이하인 경우에는 창호 외부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 교실 출입문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한다.
- 피난경로에 있는 모든 문을 열었을 때 피난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 난방기구의 표면온도가 높아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천장이나 벽에 설치하는 선풍기는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

일반학급 > 조명(조도)계획

- 넓은 면적에 밝은 색을 사용할 경우 과도한 자극이 될 수 있고, 어두운 배경에 밝은 색은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음. 특히,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교가 남향배치를 고수하는 점을 고려하여 칠판, 모니터 등의 눈부심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ex. 곡면 칠판, 교실 창문 루버 설치 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하며 각 교실의 상황에 맞게 교사와 학생이 조명을 단계적으로 조절 가능하도록 설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학생 등이 학습 및 생활하기에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도록 한다.
- 한국산업규격(KS) 기준에 적합한 조도기준을 확보하도록 한다.

공간	조도범위(lx)	작업면 조명방법
교실(칠판)	300lx(최저)-400lx(표준)-600lx(최고)	작업면 조명

- 기둥이나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 벽의 두께, 교구 배치, 칸막이 등을 고려한다.
- 바닥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구의 배치, 예상 통로 등을 고려하며, 물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콘센트 설치의 일반적인 높이는 벽의 경우에는 바닥 위 300mm, 작업대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대 위 100mm~300mm 정도로 하고, 기계실·전기실·주차장의 경우는 바닥 위 500mm~1,000mm 정도로 한다.

2.2 특수학급

교사

특수학급 > 위치 및 접근성

법적 기준 및 관련 지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참고

-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지체 장애가 아닌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특수학급을 1층에 배치하는 것보다 학교 내 다른 학급과 시설들을 이용하는 효율적인 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특수학급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 화장실, 교과교실, 식당, 체육관 등의 시설 위치를 고려한다.
- 특수학급 배치 시 승강기와 화장실이 인접하도록 하여 학생들과 교사의 동선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 지적·자폐성 장애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특수학급을 배치한다.
 - 소음이 발생하는 곳과 최대한 이격시키고, 창 밖 풍경 등 전경을 고려한다.
- 교실 내부 또는 교실 가까이에 특수교사 및 활동 보조교사들의 휴게 및 사무 공간들을 배치하고, 장애학생의 학부모들이 대기 또는 휴식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의 기능을 겸하도록 한다.

특수학급 > 시설계획

- 교실 출입문은 '1.7 실내 출입문' 기준에 준하여 설치하고, 교실 내 통로의 유효폭은 '2.1 일반학급'에 교실 내 통로의 유효폭 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 지적장애의 경우, 학습의 장이 생활의 장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인 건축개념에서 적용되는 공적, 반공적, 사적영역의 영역구분 및 학습과 놀이에 따른 정적, 동적공간의 영역구분이 특수학급 공간계획에 적용되어야 한다.
- 바닥과 벽은 날카로운 모서리와 돌출부가 없도록 하여 사고나 부주의한 사용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특수학급 내에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하고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접근경로를 확보한다.
 - 부득이하게 특수학급 내에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특수학급과 가까운 곳에 화장실을 확보하여 학생과 교사의 동선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한다.
-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내부구조 및 활동 공간 등은 '1.11 화장실' 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특수학급 > 교구 및 기자재

- 특수학급은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 필요한 다양한 학습 보조용품 및 의료 용품들을 구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납공간이 계획되어야 한다.
- 가구와 도구는 공간의 유연한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볍고 이동이 용이한 구조로 하고, 다양한 배치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 가구와 도구는 쉽게 청소가 가능하고 감염방지를 위한 관리가 용이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 특수학급 내의 칠판, 책상, 의자 등의 교구는 휠체어 이용자들을 포함하여 누구나 이

용이 가능하도록 높이, 하부 공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 특수학급 내의 교단, 교탁, 책상은 ‘2.1 일반교실의 교구 및 기자재’ 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그림 30 ○○유치원 특수학급 내부



그림 31 □□초등학교 특수학급 내부

특수학급 > 조명(조도) 및 환경색채

- 기본적인 조명은 ‘2.1 일반교실의 조명(조도)계획’ 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 특수학급은 장애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편안한 빛의 조명 및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 자폐성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원색 등의 과도한 색상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빛을 과도하게 반사시키는 물건은 최소화한다.
-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한 교실에서 6년 동안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편안한 가정집 분위기로 조성하되 가변적인 모듈러 디자인 등을 통해 공간의 변화를 주어 창의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한다.
- 밝고 따뜻한 자연채광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여 학생들의 우울감 해소 및 에너지를 제공하고, 학습의 질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 자연채광은 공간을 활기차고 쾌적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공간을 편안한 분위기로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림 32 ○○초중학교 특수학급 실내조명



그림 33 □□초등학교 창문

2.3 특별/교과교실

교사

특별/교과교실 > 시설계획

법적 기준 및 관련 지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참고

- 각 특별교실은 해당 교과의 참여에 있어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개인자리 확보를 고려하고, 휠체어 사용자와 보행약자의 이동에 필요한 내부 활동 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 교실 출입문은 '1.7 실내 출입문' 기준에 준하여 설치하고, 교실 내 통로의 유효폭은 '2.1 일반학급'에 교실 내 통로의 유효폭 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 교실 내 세면대 하부는 휠체어사용자의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싱크대 세정장치는 레버식으로 하여야 한다.
- 예능 교실(미술실, 음악실 등), 가정계 교실(기술, 가정, 예절교실 등) 등의 실습교실에는 휠체어 접근 및 교육 참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단상 없이 무단차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상이 있을 경우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을 고려하여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한다.
- 컴퓨터실은 복도와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 휠체어 이용자 등이 컴퓨터실 내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엑세스 플로어 등으로 인한 단차 발생 시에는 1/12 이하 기울기의 경사로를 설치한다.



특별/교과교실 > 안전계획

- 교과교실제 시행에서는 학생들의 이동이 빈번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교과교실존 출입과 이동에 있어서 (일시적 또는 장기적) 장애를 가진 학생과 교사의 접근과 이동상의 안전과 편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
- 교과교실존 (교실 + 교과연구실 + 교과학습지원공간(미디어스페이스) 등) 내부와 인접지역 구성에 있어 휴식, 교류의 요소 (ex. 소규모 벤치, 그룹모임 공간 등)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비상 시 신속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는 위치로 계획하도록 해야 한다.

- 기본적인 사항은 ‘2.1 일반교실의 안전계획’ 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 화학약품을 사용하거나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특별교실은 바닥표면을 내화학성 제품이나 난연재료 이상으로 마감한다.
- 특별교실과 준비실 사이에는 교사가 관리할 수 있는 창을 두며 위험한 실험재료나 기구 등은 준비실에 교사가 관리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특별교실 > 조명(조도)계획

- 학생 등이 실험 및 실습을 하기에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도록 한다.
- 한국산업규격(KS) 기준에 적합한 조도기준을 확보하도록 한다.

공간	조도범위(lx)	작업면 조명방법
실험	일반	300~400~600
실습실	제봉, 정밀작업	600~1,000~1,500

- 기둥이나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 벽의 두께, 교구 배치, 칸막이 등을 고려한다.
- 바닥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구의 배치, 예상 통로 등을 고려하며, 물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콘센트 설치의 일반적인 높이는 벽인 경우에는 바닥 위 300m, 작업대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대 위 100mm~300mm 정도로 하고, 기계실·전기실·주차장의 경우는 바닥 위 500mm~1,000mm 정도로 한다.

특별교실 > 교구 및 기자재

- 특별교실 내의 실험대, 세척용 싱크대, 컴퓨터 열람석, 칠판, 책상, 의자 등의 교구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높이, 하부 공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 특별교실 내의 교단, 교탁, 책상은 ‘2.1 일반교실의 교구 및 기자재’ 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실험 실습실〉

- 개수대(세척용 싱크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에서 0.85m 내외, 하단높이는 0.65m 이상으로 한다.
- 개수대의 하부는 무릎 및 훨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개수대의 수도꼭지는 레버형으로 설치하며, 냉·온수 점자표지를 부착한다.
- 실습대(작업대)의 전면에는 훨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실습대 상단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0.7m~0.9m로 한다.
- 실습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훨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에서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

〈예능교실(미술실, 음악실 등)〉

- 미술실 내의 개수대, 실습대는 ‘실험 실습실의 개수대’ 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 한국의 전통건축 양식(마루 구조 등)으로 설치된 예절교실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 훨체어 이용자를 포함한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컴퓨터실〉

- 컴퓨터실의 책상은 ‘실험 실습실의 실습대’ 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2.4 실내체육시설(소규모)

교사

법적 기준 및 관련 지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고

실내체육시설(소규모) > 종목

- 실내 규모에 적합한 스포츠 종목 선정하도록 한다.
 - 탁구, 당구, 헬스, 스쿼시, 골프연습장 등의 스포츠로 선정한다.
 -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장비 유효활동 공간에서 실내 벽과의 거리를 최소 2m 이상 이격하도록 한다.
 - 벽 설치에 관하여서는 '4.5 다목적강당(체육관)'의 기준을 준용한다.

실내체육시설(소규모) > 부대시설

- 실내 소규모 체육시설과 인접하여 탈의실과 샤워실을 설치한다.
 - 탈의실과 샤워실은 '1.12 탈의실 및 샤워실'의 기준에 준하여 계획한다.

2.5 유치원

교사

유치원 > 주출입구(문)

법적 기준 및 관련 지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고

- 유치원의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의 출입문은 휠체어 이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들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계획한다. (의무), 1.2m 이상 확보한다. (권장)
 - 휠체어 이용자가 문을 열거나, 경사로 이용 시 회전이 가능하도록 수평면으로 된 활동공간을 1.2m 이상 계획한다.
 - 출입문 개폐를 위한 손잡이 측 벽면에 0.6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모든 출입문의 하부에는 문틀, 씰 등을 매립하여 단차가 없도록 계획한다.
- 출입문의 손잡이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설치한다.
 - 중앙 지점이 바닥면에서 0.8m~0.9m에 위치하도록 계획한다.
- 유치원 주출입구의 문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 주출입구의 0.3m 전/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 유치원 동이 대지 내에 별도로 설치될 경우에는, 대지경계선에서부터 유치원의 주출입구까지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설치한다.
 - 측지도식 안내판은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으로 이어지는 출입문의 측면에 설치한다.

유치원 > 보육실 출입문

- 보육실 출입문은 ‘1.7 실내 출입문’ 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 보육실 출입문의 손잡이는 다양한 신장을 가진 이용자들을 고려하여 수직 손잡이를 설치한다. (불가능할 경우 수평 또는 레버형으로 설치한다.)
 - 수직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0.6m~0.7m 내외로 설치하며, 수직 손잡이 길이를 1.2m 이상 설치한다. (권장)
- 출입문의 손잡이 측 벽면의 1m 높이에 실명안내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배려한다. (권장)

유치원 > 시설계획

- 유치원생은 연령대별로 신체사이즈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연령대별 가구크기를 고려하여 사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만 3~4세 : 테이블 400mm 내외, 고정 작업대 550mm 내외, 의자 높이 210mm 내외
 - 만 5~6세 : 테이블 600mm 내외, 고정 작업대 600mm 내외, 의자 260mm 내외

유치원 > 안전계획

- 기본적인 사항은 ‘2.1 일반교실의 안전계획’ 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 유치원의 주출입문이 자동문만 설치된 경우에는 문이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 옆에 설치한다.
- 안전과 관련하여 옥외 휴식공간의 경계에 울타리나 담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2.6 운동장

외부

운동장 > 접근 계단

법적 기준 및 관련 지침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고

- 운동장 접근을 위한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한 번에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것을 고려하여 충분한 크기로 계획한다.
 -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계획한다. (의무), 1.5m 이상으로 계획한다. (권장)
-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동일한 계단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철면의 높이는 균일하게 계획한다.
 - 디딤판의 너비는 0.28m 이상, 철면의 높이는 0.18m 이하로 계획한다.
- 계단의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 계단의 측면이 스탠드 등 사람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공간일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계단 손잡이를 계획한다.
 - 계단 손잡이의 높이는 0.8m~0.9m로 계획한다.
 - 계단 손잡이의 두께는 지름 32mm~38mm로 계획한다.
 -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m 이상의 수평 손잡이를 설치한다.
 -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한다.
- 계단의 바닥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坦하게 마감한다.
- 계단코에는 줄눈 넣기를 하거나 경질 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한다.
-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m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 운동장 바닥마감이 굽은 모래(마사토) 등으로 점형블록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점형블록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림 34 ○○초등학교 운동장 접근로 계단

운동장 > 접근 경사로

- 교문 및 각 건물에서 운동장으로 평坦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어쩔 수 없이 경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1/18 이하 기울기의 경사로를 설치한다.
- 운동장 접근을 위한 보행로의 유효폭은 다양한 이용자를 위해 충분한 유효폭과 미끄럼지 않은 재질로 마감한다.
 - 보행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 어린 학생들의 안전과 다양한 학생들의 이용을 고려하여 보행로의 경사로 양측에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0.8m~0.9m 내외로 설치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 위쪽 손잡이는 0.85m, 아래쪽 손잡이는 0.65m로 한다.
 - 손잡이의 지름은 3.2cm~3.8cm 내외로 한다.
 -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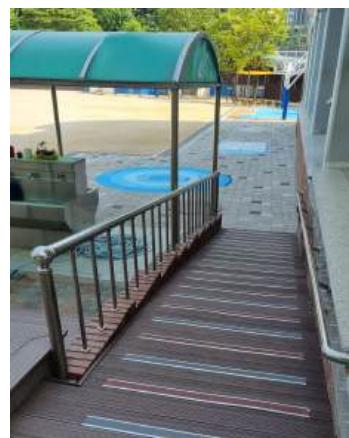


그림 35 ○○초등학교 운동장 접근 경사로



그림 36 □□초등학교 운동장 접근 경사로

3.1 휴식 공간 및 광장(휴식 공간, 홈베이스, 실내광장)

휴식 공간 및 광장 > 역할 및 기본방향

- 홀과 복도공간을 단순한 통행공간으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창의, 인성 함양을 위해 다양한 휴식 및 놀이 등을 통한 사회적 교류 공간으로 이해하여 다양한 활동 공간이 가능하도록 조성할 필요가 있다.
- 또한, 휴식 공간을 잠깐 쉬는 공간으로 단순화 시키지 않고 공간의 형태로 구분하고, 사용시간별로 구분하여 휴식의 종류에 따른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휴식 공간 및 광장에서 자연스러운 놀이와 모임이 형성되도록 곳곳에 각종 놀이공간과 학생들의 생각을 공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조성함이 바람직하다.

휴식 공간 및 광장 > 접근로 및 마감재

- 다양한 행위 및 활동이 자연스럽게 유발될 수 있도록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독특하고 재미있는 기구, 가구, 포켓 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특히 층별 또는 공간영역(zone)별 특성에 따라 학생들의 사회성과 감성을 기를 수 있도록 조성할 필요가 있다.
 - 휴식 공간 및 광장의 기능, 형태, 색채, 마감재 등을 다양하게 사용한다.
- 또한 학생들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바닥의 색채 및 마감재는 형태에 따라 따뜻한 분위기를 줄 수 있는 색채를 사용하고, 차가운 시멘트보다는 목재 마감재를 사용하여 조성한다.
- 접근로의 유효폭 및 안전계획은 ‘1.6 복도의 유효폭과 안전계획’ 기준에 준한다.

휴식 공간 및 광장 > 휴식 공간의 구성

■ 휴식 공간 및 광장 참고1 (휴식 공간)



■ 휴식 공간 도면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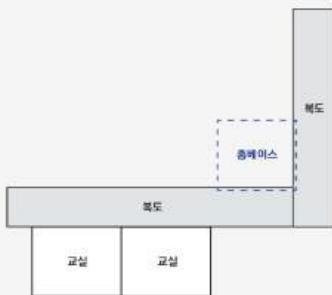
그림 37 ○○초중학교 휴식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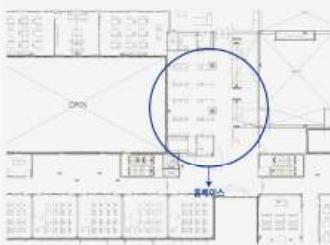
그림 38 ○○초등학교 휴식 공간

휴식 공간 및 광장 > 홈베이스 동선 및 공간

■ 휴식 공간 및 광장 참고2 (홈베이스)



■ 홈베이스 도면 사례



- 홈베이스는 복도와 바로 인접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공간이 존재하며 학생들에게 학습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홈베이스 영역 내에 다양한 학습자료, 과제성과물, 정보 등을 게시 비치할 수 있도록 한다.
- 홈베이스와 연계되는 훌이나 로비는 내·외부인을 환영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30분 이상 충분한 휴식을 하며 소통, 휴식 및 놀이, 학습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면적과 층고 확보가 필요하다.
- 학생들의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교사동의 중심적인 위치, 층별로 동일한 위치에 배치하고, 학년별, 성별 분산배치 함이 바람직하다.



그림 39 ○○초등학교 홈베이스



그림 40 ○○초중학교 홈베이스

휴식 공간 및 광장 > 실내광장의 구성

■ 휴식 공간 및 광장 참고3 (실내광장)



■ 실내광장 도면 사례



- 실내광장은 홈베이스와 마찬가지로 복도와 연계되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며 약 4m×4m(대인 거리 중 공적거리 준용)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작품이나 과제물 등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 조성한다.
- 학생들이 복도를 오가며 전시 광장을 볼 수 있고, 30분 이내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 곤충, 식물 등이 서식, 성장하는 모습을 항상 관찰할 수 있는 관찰 공간 등을 조성함이 바람직하다.
- 특히 실내광장과 연계되는 훌이 주출입구 훌일 경우에는 학부모 대기, 상담, 대화 등 다양한 응접(reception)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개방 가능한 도서실, 식당 등을 개방무대(open stage)와 함께 연계 배치함으로 지역사회와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는 복합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 또한, 학교의 역사, 지역의 특성 등 학교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역사적 전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41 ○○중학교 실내 미술작품 전시



그림 42 ○○중학교 실내광장

3.2 놀이터 외부

놀이터 > 보행로

법적 기준 및 관련 지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고

-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통행 가능하도록 유효폭을 충분하게 계획한다.
 -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계획한다.
 - 50m마다 1.5m×1.5m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한다.
 - 접근로의 단차는 2cm 이하로 계획한다.
 -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미끄럼지 않은 재질로 평坦하게 마감한다.

놀이터 > 접근로

- 놀이공간 내의 놀이시설의 경우, 휠체어 이용 학생 등의 이용이 가능한 놀이기구를 설치한다. 설치가 어려울 경우, 놀이기구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옥내놀이터를 어린이집의 최상층 바닥면에 설치하는 경우, 울타리나 보호난간은 바닥면 최하단으로부터 1.2m까지는 콘크리트·조적(벽돌 등) 또는 강화유리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3 외부 정원(학교 숲) 외부

외부정원 > 기본방향

법적 기준 및 관련 지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고

- 외부정원은 옥외에 설치된 자연과 어우러진 휴게공간으로 학생, 교사들에게 휴식 제공과 학습효율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서 다양한 여가, 체험활동까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 외부정원은 실내 휴게공간보다 자연친화적인 분위기에서 완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교내의 휴게공간과도 연계하여 휴식의 연결성을 제공해야 한다.
- 학교 숲은 외부정원보다 규모가 크고 더욱 자연에 가까운 형태를 띠며, 학습으로부터 벗어나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외부정원 및 학교 숲은 학교시설의 구조에 따라 조성할 수 있다.
 - 선형, 포켓형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한다.
- 외부정원 및 학교 숲을 통해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온도저감 효과, 정서적 안정감 제공, 집중력 증가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림 43 ○○초등학교 2층 테라스에서 본 외부정원



그림 44 □□초등학교 학교 숲 사례

외부정원 > 외부정원의 위치

- 교사건축물의 형태에 따라 곳곳에 외부정원을 위치시켜 어디서든 가볍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교내에 유휴부지가 있는 경우, 해당 공간에 다양한 식재 및 산책로, 휴게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여 활용되지 못하던 공간을 학생들의 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교내 운동장이나 체육관, 주차장 등 각종 학교시설의 위치를 고려하여 학습공간으로의 완충이 필요한 공간에 외부정원 또는 학교 숲을 계획한다.
- 외부정원은 실내 공간에서 최대한 많은 면이 접하도록 중정형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한 경우 교사건축물과 최대한 인접한 곳에 계획한다.
 - 학교시설의 폐쇄적인 분위기를 감소시키기 위해 최대한 외기와 접하는 면이 많아지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교사건축물 사이 공간에 주차장보다는 외부정원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4 참고)
- 교사건축물 중 휴식 공간, 홈베이스, 실내광장 등 학생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과

1. 공통공간 2. 학습공간 3. 휴식교류공간 4. 지원공간 5. 지역교류공간

의 동선을 고려하여 외부정원을 계획함으로써 휴식의 연결성 및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외부정원이 1층에 있을 경우, 교사건축물 2층에 테라스를 계획하여 다양한 시각에서의 관망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층 뿐 아니라 다른 층에서도 외부정원을 조망할 수 있도록 외부정원 방향에 있는 창문의 크기를 크게 계획하는 것을 고려한다.



그림 45 ○○초등학교 중정형 외부정원 사례



그림 46 ○○중학교 중정형 외부정원 조성가능 공간

외부정원 > 접근로 및 내부 보행로

- 교사건축물에서 외부정원으로 향하는 접근로 및 내부 보행로는 훨체어 사용자 등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유효폭, 기울기, 단차제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접근로의 유효폭, 기울기, 단차는 ‘1.2 보행접근로’ 기준에 준하여 계획한다.
- 접근로 및 내부 보행로 상의 가로등, 벤치, 파고라, 설명 안내판 등 각종 시설물은 보행로와 구분되도록 설치하여 안전하고 명쾌한 동선이 되도록 한다.
- 내부 보행로의 바닥은 자연친화적인 재질로 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돌길과 같이 굴곡이나 흠 등으로 인해 훨체어 사용자 등이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있는 설계는 지양하여야 한다.
 - 차가운 이미지의 석재보다는 목재와 같은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한다.
- 외부정원과 인접한 건물 외벽을 자연과 비슷한 색상, 소재로 마감하거나 일반 외벽과 다른 디자인으로 계획하여 완전한 휴식공간으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그림 47 ○○유치원 나무데크 산책로



그림 48 ○○초등학교 텃밭 및 산책로

외부정원 > 내부 시설

- 비오톱, 텃밭 등의 체험공간은 훨체어 이용 장애학생 등의 접근 및 이동, 이용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 외부정원 및 학교 숲에는 지하고가 높은 식재로 조성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 벤치, 파고라, 음수대 등은 훨체어 사용자, 아동 등 모든 이용자가 사용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을 설치하거나 주변 건물에 처마를 설치하여 차양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 학생들의 정서 및 인성 함양을 위해 옥외공간에 자연생태학습장 (예, 텃밭, 식물원, 사육장 등)을 조성할 경우, 훨체어 사용자가 관망하거나 수업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 텃밭 등의 체험 공간 내 보행로는 각종 시설물(벤치 등)과 구분하여 설치하여 학생 등이 보행 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알코브 등의 형태로 계획한다.
- 생태연못, 텃밭 등에 설치하는 설명 안내판 등은 보행 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보행로와 구분하여 설치한다.

4.1 교과연구실 일반형

법적 기준 및 관련 지침

「건축법 시행령」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고

교과연구실 > 역할

- 교과연구실은 홈베이스, 교과학습지원공간(미디어스페이스), 교과교실과 인접하게 배치하여 학생생활지도에 유리하도록 계획한다.
- 홈베이스와 교과학습지원공간, 교과교실을 인접시켜 이용하는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교사의 시야가 확보되는 동시에 교사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할 수 있도록 반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한다.
- 교과연구실과 함께 학습준비물센터가 별도로 조성되면, 각 교실마다의 교구, 재료 등이 차지하는 면적이 줄어들어 교실을 좀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 가의 기자재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4.2 보건실/상담실(Wee Class)

일반형

보건실/상담실 > 역할 및 구조

법적 기준 및 관련 지침

「건축법 시행령」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고

- 학교시설 초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건실을 별도의 공간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 보건실의 규모는 일반교실 1실 이상의 규모로 계획하며, 보건실의 기능이나 역할 강화,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그 규모를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다.
- 보건실 내 공간은 대기공간, 휴식공간 및 안정실, 진료실과 물품공간, 업무공간, 상담공간 등을 갖추도록 한다.
- 출입문은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로 직접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응급상황 시 구급차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다.
- 보건실/상담실 내 안정실, 교사실, 상담실 등 기능별 공간은 각 기능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분리 배치하며, 교사의 업무공간은 학생들의 보건실 출입 및 안정실을 항상 관찰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한다.
- 상담실은 학생들의 감성과 문화에 맞는 환경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부담감을 해소하고 안락함과 안정감을 제공하여야 한다.

보건실/상담실 > 출입문

- 보건실/상담실의 출입문은 '1.7 실내출입문' 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보건실/상담실 > 내부 및 마감재

- 보건실/상담실 내 훨체어 이용과 접근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 보건실/상담실 내의 실내 통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 확보한다.
 - 휠체어 이용자의 주요 경로에서의 회전구간은 1.4m 이상의 폭을 확보한다.
- 보건실/상담실 내의 바닥마감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한다.
 - 청소 및 유지관리가 유용하도록 하여 깨끗한 위생 상태를 유지한다.
- 내부 벽과 천정은 따뜻한 느낌을 갖도록 마감하고, 가구는 가급적 목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 안정실의 침대 수는 학생 수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하고 남녀공간을 구분하여 준다.
- 치료 및 처치실은 처치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드레싱카를 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 상담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하여 상담공간에는 칸막이, 유리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고, 가능하면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교내 상담실을 보건실과 인접하게 설치하여 함께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상담공간은 최소한 가로 3m× 세로 2m로 구성하고, 테이블, 의자, 교육자료 수납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1. 공통공간 2. 학습공간 3. 휴식교류공간 4. 지원공간 5. 지역교류공간

보건실/상담실 > 안전계획

- 보건실·행정실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으로 이어지는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이용을 배려하여 경보·피난 설비는 비상벨 설비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 경보등을 함께 설치하고,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피난계단의 출입문은 명확히 인지 가능한 색상으로 표현한다.
- 화장실이나 식당 등 습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기구는 될 수 있는 대로 방수형으로 한다.

보건실/상담실 > 조명(조도)계획

- 조명은 직접 및 간접광을 혼합 구성함으로써, 눈부심을 방지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 안정실과 상담실의 조명은 별도의 조절장치를 활용하여 세부 기능에 맞도록 적합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한국산업규격(KS) 기준에 적합한 조도기준을 확보하도록 한다.

공간	조도 범위(lx)	작업면 조명방법
보건실	150~200~300	작업면 조명

4.3 돌봄·늘봄교실(초등학교 해당)

일반형

돌봄·늘봄교실 > 기본방향

- 돌봄·늘봄교실은 정규수업 외에 등교 전, 방과 후 시간에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간으로, 교내 일반적인 공간과는 다르게 한 공간에서 학습, 독서, 신체 활동, 식사, 수면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도교사 또는 지도원과 함께 할 수도 있다.
 - 한 교실에서 정적활동과 동적활동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간 구조의 계획이 중요하다.
-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하여 늘봄학교 단일체제로 개선될 것을 고려하여 기존 돌봄 교실의 공간 개선이 필요하며, 늘봄학교의 더욱 다양해진 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가변적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 돌봄·늘봄교실은 초등학생, 특히 저학년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방과 후 늦은 시간대에 운영을 하므로 안전에 유의한 계획이 필요하다.
- 기존 학교시설에서의 돌봄 교실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 외부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 지역사회와의 공공기관이나 평생학습 시설을 활용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학교 인근에 공원이 있는 경우 공원의 부속시설을 신설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돌봄 교실의 경우, 초등학생 저학년의 이용이 많으므로 학교와 가까우면서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

돌봄·늘봄 교실 > 위치 및 접근

- 돌봄·늘봄교실은 정규수업 시간에 이용하지 않는 시설이므로 일반학급과 분리된 위치에 계획하되,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을 하기 위해 교과교실 또는 도서관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을 고려하여 위치를 설정한다.
- 이용시간이 종료된 후 부모님이나 보호자 등의 외부인의 출입이 발생하므로 안전을 위해 내부 동선을 통제하고 외부에서 별도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는 것을 고려한다.

돌봄·늘봄 교실 > 출입문

- 돌봄·늘봄교실의 출입문은 ‘1.7 실내 출입문’의 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돌봄·늘봄 교실 > 내부구조 및 시설

- 돌봄·늘봄교실의 운영 규모나 대상이 되는 학생 수 및 활동시간대 등의 운영방법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면적으로 계획한다.
- 교실 내 시설물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한 교실에서 이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모든 학생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크기로 조성한다.
- 각종 시설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벽면 및 모서리에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특히 신체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에는 더욱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1. 공통공간 2. 학습공간 3. 휴식교류공간 4. 지원공간 5. 지역교류공간

- 장시간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한다.
 - 충분한 수납공간과 교육 활동실, 독서코너, 수면실 등을 계획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아침과 저녁 식사 및 간식 제공을 위한 조리 공간과 식사 공간을 함께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하나의 교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을 수용하기 위해 활동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공간을 구분하여 계획할 필요가 있다.

〈돌봄·놀봄 교실 구성 예시〉

- 활동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할 수 있다.



- 신체활동실과 수면실이 바로 인접해 있는 경우,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이격시키는 등의 계획이 필요하고, 조명설비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한다.
 - 조명 밝기는 교육활동 > 신체활동 > 식사 > 독서 및 휴식 > 수면의 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독서를 위한 공간에는 스탠드 조명설비 등을 제공하여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각 활동의 접점부는 완충, 전이 공간으로 휴식공간이나 교류공간을 조성하고 신체활동이 활발한 공간과 식사공간의 접점부에는 위생공간을 가까이 둔다.

4.4 식당 대규모형

식당 > 역할 및 기본방향

법적 기준 및 관련 지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참고

- 식당은 학생들의 협동 작업이나 개별적 공부를 위한 장소로도 활용 될 수 있도록 하며, 식사장소인 동시에 학교의 핵심학습센터로서 기능 할 수 있게 한다.
- 식당에서 외부의 자연경관이 잘 보일 수 있는 외벽구조로 공간을 조성한다.
- 식당공간의 훈잡은 일부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가능성이 높으므로, 충분한 여유 공간 확보, 흡음과 차음성능을 고려한 마감재 선택이 중요하다.

식당 > 유효폭 및 활동 공간

- 식당의 출입문은 ‘1.7 실내출입문’의 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식당 > 내부 통로와 교구 및 기자재

- 식판 등을 들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가구와 가구 사이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휠체어의 이동을 위한 공간 확보에 유의해야 한다.
 - 식당 내의 통로 유효폭은 1.2m 이상 확보한다.
 - 휠체어 이용자의 주요 경로에서의 회전구간은 1.4m 이상의 폭을 확보한다.
- 휠체어 이용 학생이 식당 출입구부터 배식대 및 식탁까지 접근 가능한 경로를 확보한다.
- 휠체어 이용 학생 등 다양한 학생을 배려한 식탁과 의자를 조성한다.
 - 휠체어 이용 학생을 배려하여 식탁과 의자가 일체로 된 형태는 지양한다.
 - 어쩔 수 없이 일체형을 설치할 경우 배식대 및 출입구와 가까운 쪽에 식탁·의자 분리형 식탁을 각각 배치한다.
 - 식탁 상단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0.7m~0.9m로 계획한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생의 신체적 요건을 고려한다.)
 - 휠체어 이용 학생을 위하여 식탁의 하부는 바닥면에서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



그림 50 ○○초중학교 휠체어 이용 식탁



그림 51 ○○고등학교 휠체어 이용 식탁

1. 공통공간 2. 학습공간 3. 휴식교류공간 4. 지원공간 5. 지역교류공간

식당 > 안전(피난) 계획

- 관련법규 및 기준에 적합한 직통계단 및 피난계단을 계획한다.
- 식당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으로 이어지는 가장 가까운 거리의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50m 이하(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가 되도록 설치한다.
-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이용을 배려하여 경보·피난 설비는 비상벨 설비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하고,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피난계단의 출입문은 명확히 인지 가능한 색상으로 표현한다.

식당 > 조명 계획

- 가급적 외부 전망과 경관 등이 좋은 곳에 배치하고, 실내조경을 통해 친환경적 공간으로 조성한다.
- 학생 등이 식당 내에서의 이동 및 식사 등의 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조도를 확보한다.

공간	조도범위(lx)	작업면 조명방법
급식실, 식당, 주방	150-200-300	작업면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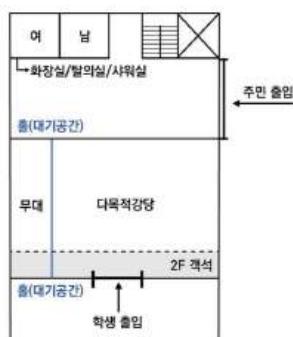
4.5 다목적강당(체육관) 대규모형

법적 기준 및 관련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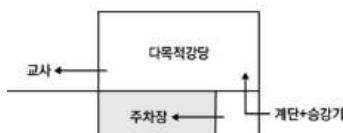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참고

- 다목적강당 구조 참고자료

- 다목적강당 구조 평면도



- 다목적강당 구조 단면도



다목적강당(체육관) > 위치 및 접근성

- 다목적강당은 체육활동 이외의 대규모 공간을 필요로 하는 교과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교내 시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갖출 수 있도록 조성한다.
- 외부 공간(운동장 등)과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성이 필요하므로 외부공간으로 진출입이 가능하게 조성한다.
 - 외부로 진출입이 가능한 문을 별도로 설치한다.
 - 다목적강당(체육관)이 1층에 위치해있는 경우 한쪽 벽면은 셔터로 개방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을 고려한다.
- 위치는 학습권과 보전을 위하여 환기와 채광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 배치하고 지하는 지향한다.
- 지역개방 시 다양한 지역주민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외부에서도 출입이 편리한 위치에 배치한다.
-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이용하는 출입문과 지역개방 시 주민들이 이용하는 출입문을 구분하여 외부인의 무분별한 학교시설 출입을 방지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한다.
- 다목적강당(체육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건물 근처 또는 1층 필로티를 활용하여 개별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 다목적강당(체육관)의 주차장은 '1.3 주차장 및 차량출입구'의 기준에 준하여 계획한다.
- 다목적강당(체육관)이 2층 이상일 경우, 지상 층의 보행로에서 다목적강당으로의 외부 승강기를 계획한다.
 - 외부 승강기는 '1.8 수직이동설비'의 기준에 준하여 계획하면서, 외부 승강기와 가까운 곳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 다목적강당(체육관)의 출입문의 기본적인 사항은 '1.7 실내출입문'의 기준에 준하여 계획한다.
- 다목적강당(체육관)은 교내 일반시설에 비해 대규모 이동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출입문은 양쪽 개폐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출입문 안팎으로 대규모 인원의 충분한(약 50~100명 수용) 크기의 대기공간을 조성하고, 단차와 기울기는 제거한다.

다목적강당(체육관) > 내부 접근

- 훨체어 이용자 등이 다목적 강당 내의 장애인 객석, 무대 등으로 원활한 접근이 가능하고 통로 회전구간은 여유 있는 폭을 확보한다.
 - 실내 통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 확보한다.
 - 실내 통로에서의 회전구간은 1.4m 이상의 폭을 확보한다.
- 다목적강당(체육관) 내의 창고 출입문은 교구 및 기자재 등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 창고 출입문은 양여닫이 문으로 설치한다.

1. 공통공간 2. 학습공간 3. 휴식교류공간 4. 지원공간 5. 지역교류공간

- 다목적강당 내의 바닥마감은 미끄럼지 않은 재질로 평坦하게 마감해야 하며, 신체 활동이 많은 공간임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넘어졌을 경우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목적강당(체육관) > 무대 접근

- 다목적강당(체육관)의 무대공간은 별도의 소재로 계획하여 시각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권장한다.
- 무대 접근을 위한 경사로는 무대 앞 쪽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불가능할 경우 뒤편에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자동 슬로프를 설치할 수 있다.
 - 무대 앞 쪽으로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무대 앞 쪽의 길이가 최소화되도록 설치하여 체육 활동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무대접근을 위한 경사로의 유효폭은 0.9m 이상, 기울기는 1/12 이하로 설치하고, 경사로 양측에 5cm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한다.
- 이미 경사로가 없이 계획된 학교의 경우, 이동식 슬로프를 활용하여 휠체어 학생 등이 무대 접근을 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림 52 ○○고등학교 자동 슬로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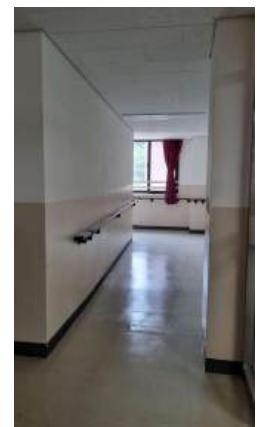


그림 53 □□초등학교 접근로

다목적강당(체육관) >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석

-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석은 전체 관람석의 1% 이상 설치한다.
- 장애인 등 이용이 가능한 객석의 배치는 고정하지 않으며, 복수의 객석이 선택 가능하도록 고려한다.
- 고정식 객석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장애인용 객석표지(접근성 표지)를 부착하지 않도록 하여 자유롭게 객석선택이 가능하도록 한다.
- 장애인 등 이용이 가능한 객석의 위치는 출입구 및 피난통로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호자석과 함께 설치하는 것을 고려한다.
- 객석의 유효바닥은 통로와 구분하여 좌석을 설치하도록 한다.
 - 바닥 면적은 1석당 폭 0.9m 이상, 깊이 1.3m 이상으로 설치하며, 1.2m 이상 통로와 구분한다.

-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은 휠체어 이용자의 시야확보를 위하여 일정 높이 이하로 설치한다.
 - 난간은 0.8m 이하로 설치하며, 앞좌석에 일반석 의자와 등판 등이 설치된 경우 바닥에서 높이 0.3m 이하로 설치한다.

■ 휠체어 전용 좌석 참고 1



그림 54 ○○초중학교 다목적강당 좌석 및 휠체어 전용 좌석

다목적강당(체육관) > 시설 안전 및 활용계획

- 다목적강당(체육관) 벽면 및 바닥은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마감재로 설치하며, 소리에 예민한 다양한 사용자들을 고려하여 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다목적강당(체육관) 내의 각종 운동기구, 돌출된 모서리 등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구선이 있는 재질로 마감하도록 한다.
- 다목적강당(체육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으로 이어지는 거리는 최소가 되도록 설치한다.
 -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이용을 배려하여 경보·피난 설비는 비상벨 설비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 경보등을 함께 설치하고,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청각장애인을 위해 집단보청시스템, 시각표시장치 등의 설비나 기기 등이 적절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피난계단의 출입문은 명확히 인지 가능한 색상으로 표현한다.



그림 55 ○○초등학교 체육관 벽면



그림 56 □□중학교 체육관 벽면

1. 공통공간 2. 학습공간 3. 휴식교류공간 4. 지원공간 5. 지역교류공간

다목적강당(체육관) > 조명(조도)계획

- 한국산업규격(KS) 기준에 적합한 조도기준을 확보하도록 한다.

공간	조도범위(lx)	작업면 조명방법
창고	30~40~60	공간의 전반조명
세면장, 화장실/탈의실	60~100~150	
실내 체육관	150~200~300	작업면 조명

- 다목적강당(체육관)의 전등 교체 및 수리를 위하여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전등설비를 고려한다.

다목적강당(체육관) > 지역사회복합

- 체육교과, 행사, 동아리 활동, 학교개방 등에서 각종 운동에 필요한 공간규모를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의 방재거점으로의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한다.
- 학생과 주민의 이용시간을 분리하여 학교의 주목적인 학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교문에서부터 복합화시설까지 접근경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주요시설에 대한 유도 및 안내판이 이동동선 내에 연속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 시설복합화로 인한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을 관리하기 위해 운영 및 통제 등의 부분은 ‘스쿨매니저’ 도입을 통해 관리한다.

사례)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2024년 5월 30일 서울 용산구와 서울시 교육청이 스쿨매니저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함

- 지역개방 시 다양한 지역 주민의 이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반화장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탈의실, 수납공간 등의 부속시설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 다목적강당(체육관)과 인접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은 ‘1.11 화장실’ 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 다목적강당(체육관)과 인접하여 설치하는 탈의실 및 샤워실은 ‘1.12 탈의실 및 샤워실’ 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다목적강당(체육관) > 기타

- 다목적강당(체육관) 내의 농구대는 높이 조절이 가능한 형태의 농구대로 계획한다.
- 다목적강당(체육관)의 고창은 전동설비 등으로 계획하여 개폐 가능하도록 고려한다.
 - 전동커튼설비로 채광 등을 조절하거나 레일형 조명설비를 통해 적절한 조명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체육관 내 수영장을 설치할 경우, 휠체어 사용자, 노인 등이 안전하게 수영장으로 입수가 가능하도록 입수용 경사로의 설치를 고려한다.
 - 입수용 경사로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입수용 리프트를 비치하도록 한다.
- 운동기구는 빌트인 또는 부착 이동형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인다.

4.6 정보관/도서관 대규모형

정보관/도서관 > 역할 및 기본방향

법적 기준 및 관련 지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참고

- 초등학교 도서실은 서가와 열람공간을 엄격하게 구분하기보다는 학생들이 편안하게 활동 할 수 있도록 서가와 열람공간을 자유롭게 배치하고, 바닥에 앉거나 누워 서 책 읽는 공간을 조성하여 자발적인 독서활동을 유도함이 바람직하다.
- 도서실 내 소규모 그룹이 모이거나 학생들이 바닥에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며, 도서실 내부 또는 인접한 곳에 컴퓨터실을 배치하여 상호 간의 공간 활용 시너지를 높이도록 한다.

정보관/도서관 > 유효폭 및 활동 공간

- 정보관/도서관의 출입문은 '1.7 실내출입문' 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정보관/도서관 > 내부 통로와 교구 및 기자재

- 수업, 토론,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활용 등 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교구를 설치한다.
 - 도서실 내부에 발표 및 토론수업, 영화감상 등 활동의 성격에 따라 독립된 공간을 조성한다.
 - 집단 학습, 그룹 학습 등 도서실을 활용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조성한다.
- 휠체어 이용자 등이 정보관/도서관 내의 열람석, 서가(책 선반) 사이를 원활히 이동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정보관/도서관 내의 통로 유효폭은 1.2m 이상 확보한다.
 - 휠체어 이용자의 주요 경로에서의 회전구간은 1.4m 이상의 폭을 확보한다.
- 정보관/도서관 내의 바닥마감은 미끄럼지 않은 재질로 마감한다.
- 휠체어 이용자가 정보관/도서관 출입구에서 열람석까지 접근 가능한 경로를 확보한다.
- 휠체어 이용 학생 등 다양한 학생을 배려한 열람석과 안내데스크를 조성한다.
 - 열람석과 안내데스크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 열람석과 안내데스크 상단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0.7m~0.9m로 계획한다.
 - 휠체어 이용 학생을 위하여 열람석 및 안내데스크의 하부는 바닥면에서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



그림 57 ○○고등학교 도서관

1. 공통공간 2. 학습공간 3. 휴식교류공간 4. 지원공간 5. 지역교류공간

정보관/도서관 > 기타(검색 게이트)

- 도서관(실)내에 검색(보안) 게이트가 설치될 경우 충분한 유효폭을 확보하고, 출입문과 충분한 거리를 이격해 설치한다.
 - 검색(보안) 게이트의 통과 유효폭은 0.9m 이상 확보한다.
 - 검색(보안) 게이트가 출입문에서 1.2m 정도 이격된 위치에 설치한다.
 - 출입문이 자동문이며 검색(보안) 게이트가 1.2m 이상 이격하여 설치될 경우, 자동문의 닫히는 시간을 3초 이상 확보하여 훨체어 이용자 등의 이동을 배려하도록 한다.
- 도서관(실)내의 출입문이 터치 버튼에 의하여 작동되는 자동문일 경우, 터치 버튼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0.8m~0.9m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정보관/도서관 > 안전(피난) 계획

- 정보관/도서관의 안전 계획은 ‘4.4 식당의 안전 계획’ 기준에 준하여 계획한다.

정보관/도서관 > 지역사회복합

- 학교와 지역의 특성에 따른 방법대책을 적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한 후,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하여야 한다.
- 학교의 학습공간과의 안전하고 편리한 접근 동선은 물론 지역주민의 이용 동선과 학생과 주민의 이용시간을 분리하여 학교의 주목적인 학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지역주민이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고 찾기 쉬운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정보관/도서관 > 조명(조도) 계획

- 학생 등이 독서 등의 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조도를 확보한다.
 - 휴식을 취하며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학습에 도움을 주는 따뜻한 조명을 사용한다.
- 한국산업규격(KS) 기준에 적합한 조도기준을 확보하도록 한다.

공간	조도범위(lx)	작업면 조명방법
도서 열람실	600~1,000~1,500	작업면 조명

4.7 시청각실 대규모형

시청각실 > 유효폭 및 활동 공간

법적 기준 및 관련 지침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참고

- 시청각실 출입문은 ‘1.7 실내 출입문’ 기준에 준하여 계획한다.

시청각실 > 내부 통로 및 무대 접근

- 휠체어 이용자 등이 시청각실 내의 장애인 객석, 무대 등으로 원활히 접근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시청각실 내의 통로 유효폭은 1.2m 이상 확보한다.
 - 휠체어 이용자의 주요 경로에서의 회전구간은 1.4m 이상의 폭을 확보한다.
- 시청각실 내의 바닥마감은 미끄럼지 않은 재질로 마감한다.
- 시청각실 내의 무대는 단을 두지 않도록 설치한다.
 - 어쩔 수 없이 단을 두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적합한 경사로를 설치한다.
 - 경사로의 유효폭 0.9m 이상, 기울기 1/12 이하, 경사로 양측에 5cm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한다.



그림 58 ○○초등학교 시청각실 무대단차X



그림 59 ○○고등학교 시청각실 무대단차O

시청각실 > 장애인 등 이용 가능한 객석

- 출입구 및 피난통로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 장애인 등 이용 가능한 객석의 배치는 이동식 좌석 또는 접이식 좌석을 사용하여 마련하도록 한다. 이동식 좌석의 경우 한 개씩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휠체어 사용자가 아닌 동행인이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고정식 객석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장애인용 객석표지(접근성 표지)를 부착하지 않도록 하여 자유롭게 객석선택이 가능하도록 한다.
-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기둥이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등을 두지 않는다.
-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관람석이 중간 또는 제일 뒷줄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앞좌석과의 거리는 일반 좌석의 1.5배 이상으로 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객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m 이상, 깊이 1.3m 이상으로 설치하며, 1.2m 이상의 통로와 구분하여 좌석을 설치하도록 한다.
 - 난간은 0.8m 이하로 설치하며 앞좌석에 의자의 등판 등이 설치된 경우, 0.3m 이하로 설치하도록 한다.
-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은 휠체어 이용자의 시야확보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1. 공통공간 2. 학습공간 3. 휴식교류공간 4. 지원공간 5. 지역교류공간



그림 60 ○○고등학교 휠체어 이용자 자리



그림 61 ○○초등학교 휠체어 이용자 자리

시청각실 > 안전(피난) 계획

- 시청각실의 안전 계획은 ‘4.4 식당의 안전 계획’ 기준에 준하여 계획한다.

5.1 주변 교육영향권

〈○○초 통학출입구 분석 사례〉



① 정문 (통학출입구 X)

- 통학 빈도수 가장 떨어짐
- 설계상의 정문과 실제 이용 출입구가 상이함



② 후문 (통학출입구)

- 통학 빈도수 세 곳 중 중간정도
- 교차로부분에 통학 여유 공간이나 전이 공간 등의 부족하여 학교 정체성이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③ 후문 (통학주출입구)

- 후문이나 가장 많은 통학빈도수를 나타냄
- 통학을 위한 충분한 공간 부족
- 차량출입과 상충, 통학 시 안전문제
- 학생들이 학교의 정문으로 사용하는데 비해 학교이미지 형성에 미흡

주변 교육영향권 > 주요통학로 지정

- 학생들의 통학(등교, 하교) 시 주변의 위해요소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학교 내 UD 가이드라인 뿐 아니라 지역과 함께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UD적 조치가 필요하다.
-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학교 주변 주요통학로를 지정하여 지역에서 학교로 오는 주요통행로로 권장한다.
- 주요통학로는 학교별 주요 통학출입구를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주요통학로는 통학권 내 학생들의 통학 행태를 분석하여 가장 통학빈도가 높은 곳을 통학로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림 62 통학출입구 지정

- 통학권은 학구도안내서비스를 참고하여 학교 출입구에서부터 약 200m 이내로 본다.
- 200m 이상에 통학주거지가 있는 경우 그 범위를 일부 확장하여 지정하는 것을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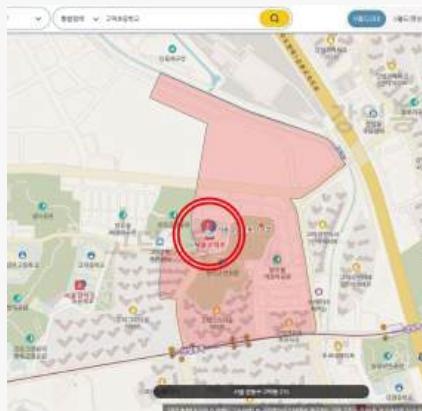


그림 63 학구도안내서비스



그림 64 학교 출입구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설정



그림 65 주요 통학로 지정

1. 공통공간 2. 학습공간 3. 휴식교류공간 4. 지원공간 5. 지역교류공간

- 향후 새로운 주거지가 생길 경우 주요통학로 변경 또는 신규 지정이 필요하다.

주변 교육영향권 > 주요통학로 바닥 포장

- 차도의 경우, 일반차도와 구별이 되게 도장하여야 하며, 교차부, 횡단부, 경사부 등의 차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30km/h) 도장과 함께 통학로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보도의 경우, 물고임으로 인한 미끄럼방지를 위해 투수성 포장으로 하고, 일반 보도블록과 구별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보도와 차도가 만나는 부분이나 보도의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획한다.
 - 차도의 교차부, 횡단부와 만나는 부분에서는 보도높이를 우선적으로 하여 조성하여야 한다.(험프형 횡단보도)
 - 차도포장보다는 보도포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66 신규 통학로 추가(신규 주거지)

주변 교육영향권 > 주요통학로 구성

- 통학로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에는 차량 운전자 높이에서도 보도(통학로)가 인지될 수 있도록 펜스형의 경계 처리 시설을 설치한다.



그림 67 통학로 변 펜스 및 주차방식

- 노선형의 노상주차장이 통학로 보도 쪽에 설치될 경우, 통학로 보도 쪽으로의 전면주차를 원칙으로 하여 후진 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 노상주차장의 경우 통학로 보도 쪽에 주차멈춤턱(카스토퍼)을 설치하도록 한다.



그림 68 통학로변 주차장 카스토퍼 설치 사례

주변 교육영향권 > 안전계획

- 통학로 주변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건축물 용도로 차량관련용도가 허용되지 않도록 한다.
 - 차량정비소, 주차장의 진출입구 등의 차량관련용도



그림 69 통학로변 건축물 불허용도(차량 관련 시설) 지정

- 통학로 방향으로 차량 진출입이 빈번한 시설을 들어오지 않도록 하며, 차량 진출입구를 다른 도로로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그림 70 불허용도 사례



그림 71 통학로변 차량 진출입 지양

- 통학로 변에는 적치물 등 보행 장애물로 인해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림 72 통학로 적치물 사례1 그림 73 통학로 적치물 사례 2그림 74 통학로 내 불법주차 사례

1. 공통공간 2. 학습공간 3. 휴식교류공간 4. 지원공간 5. 지역교류공간

- 통학로변에는 학생들의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는 원색의 입간판 사용을 지양하도록 한다.



그림 75 원색 입간판 지양 사례



그림 76 입간판 권장 사례

- 통학로로의 접근이 없는 용도의 건축물이나 부지가 인접해있는 경우, 경계펜스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한다.
 - 접근이 없는 용도의 건축물이나 부지는 입구가 없는 아파트 단지경계, 공원, 산 등을 말한다.



그림 77 통학로 변 펜스 설치 필요 구간 1 그림 78 통학로 변 펜스 설치 필요 구간 2

- 학교 주변에 주요통학로로 지정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 가급적 학생의 통행을 제한시키고 주요통학로 이용을 유도한다.
 - 주요통학로로 지정되지 않은 도로는 대부분 공원이 인접한 도로나 출입구가 없는 큰 부지의 관공서 경계부 도로 등을 말한다.



그림 79 통학로 변 펜스 설치 필요 구간 3

- 등·하교시간에는 통학로 주변으로의 차량진출입을 제한하고, 통학로 교차부, 차도 중심 도로부, 기타 사람통행이 없는 동선부 등에는 학부모 자율도우미를 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 주민과의 교류를 유도한다.
 - 등하교시간은 등교 8:00~9:30, 하교 14:30~16:00의 시간으로 한다.
 - 부득이하게 차량 통행이 필요한 도로의 경우 차량속도를 20km/h 이하로 유도(이면도로 제한속도 30km/h일 때)



그림 80 통학로 변 시간제 통행제한속도 구간

- 차량 정차 허용부는 주요통학로로 지정된 도로 이외의 도로 중 왕복 3차선 이상인 곳으로 설정하고 정차 시에는 동행자나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승하차를 유도한다.
- 최근 초등학교의 경우 아파트 단지 안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근 아파트의 코어를 개방형으로 설계하도록 한다.



그림 81 왕래가 없는 통학로의 경우 자연감시가 가능한 설계 유도

- 통학로로 설정된 구간에 아파트 단지로의 진출입 없는 경계가 100m 이상 연속적으로 접하는 경우 60m 이내 간격으로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음으로서 수시로 자연감시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그림 82 통학로 지정 도로(왕복 6차선 이상 도로에도 안전도로 채색)

IV.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1.1 공통공간 – 교문

구분	항목	양호	미흡	해당 없음
교문	■ 교문의 하부에 레일을 매립, 시공하거나 바퀴가 달린 형태로 설치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았다.			
	■ 휠체어 이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문의 통과 유효폭은 충분히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① 교문의 통과 유효폭은 1.2m 이상 확보되었다. (의무)			
	② 교문의 통과 유효폭은 1.5m 이상 확보되었다. (권장)			
	■ 경사로 상에 설치하는 교문의 경우 교문 전·후면에는 여러 활동의 완충역할을 해주는 수평 구간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① 교문 전·후면 1.2m 이상의 수평구간이 확보되었다.			
	■ 차도와 분리된 보행로 상에 보행통행 중심으로 교문을 계획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① 교문 진입 후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 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가드레일 등)이 설치되어있다.			
	총 항목 수(5)			
	[사용자 의견]			

* 미흡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 작성

1.2 공통공간 – 보행 접근로

구분	항목	양호	미흡	해당 없음	
보행 접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보도에서 건축물 출입구까지의 모든 보행접근로는 보행자와 차량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여, 보행자가 차량으로 인한 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 건축물 내부로 진입하는 계획을 원칙으로 한다. ● 부득이하게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이 교차하는 보행접근로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과 접근의 연속성을 우선시한 구조로 한다. ● 지형상의 이유로 보도에서 건축물 주출입구까지의 보행접근로를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부출입구가 장애인 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할 경우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한다. <p>■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들의 이동을 고려하여 충분한 접근로의 유효폭을 계획한다.</p>				
	① 접근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 확보되었다. (의무)				
	② 접근로의 유효폭은 1.8m 이상 확보되었다. (권장)				
	■ 접근로는 50m마다 1.5m×1.5m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한다.				
	①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 교행구역이 30m마다 설치되었다. (권장)				
	■ 대지 내의 모든 보행로(각 건물 출입구로의 접근로 및 산책로 등)의 단차는 2cm 이하로 계획한다.				
	① 대지 내의 모든 보행로는 단차가 없다. (권장)				
	② 지형 구조상에 이유로 기울기가 발생할 경우 접근로의 진행방향의 기울기가 1/18 이하이다.				
	③ 접근로의 좌우 기울기(횡경사)는 1/25 이하이다.				
	■ 지나치게 다양한 패턴, 색채, 재질을 사용하여 조잡하지 않도록 간결하며, 주위 환경과 잘 어울리도록 주조색이 무채색으로 되어있다.				
■ 바닥표면은 우천 시 등에도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투수성 재질이나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마감재로 평坦하게 마감되어있다.					

	<p>■ 블록 등의 포장의 경우,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p>		
	<p>① 틈새 간격은 1cm 이하이다.</p>		
	<p>② 인터로킹 블록 등을 바닥 마감재로 사용할 경우 그 이음새의 줄눈간격은 0.5cm 이하이다.</p>		
	<p>■ 장애인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서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되었다.</p>		
	<p>■ 배수로는 보행접근로를 가로질러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① 배수로가 설치된 경우, 배수구 덮개의 격자구멍 간격은 모두 2cm 이하이다.</p>		
	<p>② 덮개는 휠체어 이용자 등의 이용을 위하여 배수로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되었다.</p>		
	<p>■ 보행로 측으로 돌출되는 건물 외벽의 우수 선홍통은 배수구 덮개 내부로 매립하였다.</p>		
	<p>■ 우수 및 오수관의 덮개는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시각장애인 유도블록과 간섭이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였다.</p>		
	<p>■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등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 명확한 보차분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p>		
	<p>① 연석의 높이는 6cm~15cm이며, 색상과 질감은 접근로의 바닥재와 다르게 설치되었다.</p>		
	<p>■ 보도와 차도가 교차하는 구간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고원식(험프식), 또는 평면형)가 설치되어있다.</p>		
	<p>■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시각장애인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횡단보도 양측의 보도부분에 횡단보도 폭만큼 점형블록이 설치되었다.</p>		
	<p>■ 통학로 부근에 있는 횡단보도는 안전 표시 엘로 카펫이 설치되었다.</p>		
	<p>■ 보행접근로의 유효폭 내에는 보행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p>		

	<p>① 접근로에 설치하는 각종 안내표지판·가로등·전주·필로티 기둥 등의 시설물은 보행에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경구간 등의 공간에 설치되었다.</p> <p>■ 각종 벤치 등은 보행에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알코브 형태로 설치되었다.</p> <p>■ 필로티 하부기둥 등 보행로 상에 설치하는 돋립기둥의 바닥 주위 0.3m 이상은 보행로 질감 및 색상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설치되었다.</p> <p>■ 우천 시 등 우산을 쓰는 경우를 고려하여 보행접근로의 지면에서 높이 2.1m 이내 상부에는 가로수 나뭇가지(지하고)나 안내사인 등의 상부돌출물이 없도록 조성하였다.</p> <p>■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벗겨진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p> <p>■ 등(燈)기구의 설치는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 기구 몸체의 교체와 철거가 쉽도록 설치되었다.</p> <p>■ 옥외에 설치하는 전구는 빗방울로 인하여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것이나 글로브 등을 사용하며, 먼지·벌레·물방울 등이 등 기구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있다.</p>			
총 항목 수(26)				

1.3 공통공간 – 주차장 및 차량 출입구

구분	항목	양호	미흡	해당 없음
주차장 및 차량 출입구	● 주차장 출입구는 보행자의 대지 출입구 등 보행자 동선과 명확히 분리하여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 등 이용 가능한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한다.			
	● 주차장 출입구 안내사인은 도로에서 쉽게 눈에 띄어 인지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 등 이용 가능한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훨체어 이용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단차를 제거한다.			
	①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 등 이용 가능한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 확보되었다.			
	■ 일반주차구역의 크기는 신체적 차이에 따른 문제가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① 직각주차 형식의 경우, 폭 2.5m, 길이 5m 이상으로 설치되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직각주차 형식으로 계획한다.			
	① 직각주차 형식의 경우,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설치되었으며, 측면에 폭 1.2m 이상의 훨체어 활동공간이 노면에 표시되어있다.			
	② 평행주차 형식의 경우, 폭 2m 이상, 길이 6m 이상으로 설치되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1/50 이하이다.			
	■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坦하게 마감되었다.			
	■ 보행안전통로의 유효폭 및 유효높이, 바닥마감 등은 ‘1.2 보행 접근로’의 기준에 준하여 설치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내 및 유도표시는 대지경계선의 차량 진출입구부터 주요 굴절지점에 연속적으로 설치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 구역선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장애인전용표시가 되어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 등 이용 가능한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가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과 질감은 차도의 바닥재와 다르게 마감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내표지판이 보행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경구간 등의 공간에 설치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도문(입식안내표지판)이 보행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전면의 벽에 부착되었다.(벽부형)			
총 항목 수(12)				

1.4 공통공간 – 학교 경계 설치(담장, 옹벽 등)

구분	항목	양호	미흡	해당 없음
학교 경계 설치	■ 단순 치안과 안전을 위한 경계뿐만 아니라 학교의 상징 및 정체성을 담은 벽화 혹은 타일을 사용해서 담장 및 옹벽을 계획한다.			
	① 학교의 상징 및 정체성 뿐 아니라 지역의 역사를 상징하는 벽화 혹은 타일을 사용하였다.			
	② 자연친화적인 벽화 혹은 타일을 사용하였다.			
	■ 담장 안팎으로 자연감시가 가능한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하고, 디자인 패턴은 세로형으로 설치되었다.			
	■ 담장의 높이는 접근통제가 목적이므로 학교 주변 상황이나 담장에 설치되는 보안시스템 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다.			
	① 안전한 지역인 경우 바닥면에서 최소 높이 1.5m 이상으로 설치되었다. (권장)			
	② 위험에 노출이 잦은 지역인 경우 바닥면에서 최소 높이 2.0m 이상으로 설치되었다. (권장)			
	■ 담장의 주 지지대는 접근통제를 위해 학교부지(대지) 한쪽에 위치하도록 설치되었다.			
	■ 야간에도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등의 목적으로 담장 주변의 상황이 인식 가능한 설비를 비치하였다.			
	■ 담장 주변으로 자연스러운 식재처리로 이질적이고, 획일적인 기단부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 담장 주변 안팎으로 나무, 기둥, 구조물 등과 같이 기어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는 시설물 설치나 적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① 담장 주변 안팎으로 교목을 식재할 경우 경계로부터 2m 이상 이격하였으며, 지하고가 2.5m 이상이 되는 대교목을 식재하였다. (권장)			

	<p>② 교목은 바닥에서부터 2.5m까지는 자연감시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이나 구조물 설치를 지양하였다. (지피류 식재나 관목 식재는 가능) (권장)</p> <p>■ 옹벽부를 제외한 담장의 높이는 ‘1.4 학교경계설치의 담장 > 형태’의 기준에 준하여 설치되었다.</p> <p>■ 외부와의 단차부분은 자연스런 옹벽처리를 하였다.</p> <p>■ 옹벽부는 식재가 가능한 정도의 경사로 되어있다.</p> <p>■ 구릉지나 산 주변의 학교시설의 경우 산사태를 예방하는 설계 기준을 충족 해야 하며 정기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환경이다.</p>			
	<p>총 항목 수(14)</p>			

1.5 공통공간 – 건물출입구(주/부출입구)

구분	항목	양호	미흡	해당 없음
건물 출입구	●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로의 이동 및 이용이 많을 경우, 부출입구의 가이드라인은 주출입구 기준에 준용하여 계획한다.			
	● 주·부출입구의 위치는 학교시설을 처음 방문한 사람이라도 대지 출입구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주차구역에서 인지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한다.			
	● 주·부출입구에서 실내로 들어서면 각 실의 배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 계단, 화장실 등의 접근이 쉬운 공간구조로 계획한다.			
	● 점자안내판은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으로 이어지는 출입문 측면에 설치하며, 동선 내에 보행 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 야간에도 주·부출입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조명을 설치하고, 충분한 밝기의 조도 확보가 가능하며 에너지효율이 높은 LED 조명기구가 활용되었다.			
	■ 주·부출입구 앞 옥외 전·후면공간에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하더라도 혼잡하지 않도록 시설의 규모에 비례하여 여유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다.			
	■ 옥외 전면공간의 상부에는 비, 눈, 햇빛으로부터 보호되는 지붕 등의 차양 시설을 설치하되 기둥 등이 보행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 모든 출입문의 전·후면에는 휠체어 이용자가 문을 열거나, 경사로 이용 시 회전이 가능하도록 수평면으로 된 활동공간을 충분히 계획한다.			
	① 자동문, 미닫이 문 : 문 끝에서 1.2m 이상 수평면으로 된 활동 공간이 확보되었다.			
	② 여닫이 문 : 문이 열린 상태에서 문 끝에서 1.2m 이상 수평면으로 된 활동 공간이 확보되었다.			
	■ 모든 출입문의 개폐를 위한 손잡이 측 벽면에는 휠체어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를 위하여 일정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① 휠체어 이용자의 활동 폭을 고려하여 0.6m 이상의 활동 공간이 확보되었다.			
	■ 모든 건물의 주·부출입구의 출입문은 휠체어 이용자가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효폭을 충분히 확보한다.			
	① 출입문의 유효폭이 1.2m 이상 확보되었다.			

	<p>■ 전면유효거리는 훨체어의 회전 및 출입문의 개폐 동작에 어려움이 없도록 계획한다.</p>			
	① 여닫이문의 경우 열리는 쪽은 1.5m 이상, 반대쪽은 1.2m 이상 확보되었다.			
	② 미닫이문의 경우 좌우폭 1.9m 이상, 깊이 1.2m 이상 확보되었다.			
	<p>■ 모든 출입문의 하부에는 문틀, 씰 등을 매립 설치하여 단차가 없다.</p>			
	<p>■ 주·부출입문은 훨체어 사용자와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어려운 회전문으로 설치하지 않았으며, 양손에 짐을 들고 있는 사람 등 누구나 접근 및 이동이 편리한 자동문으로 설치되었다.</p>			
	<p>■ 주·부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상시를 대비해 별도로 수동 개폐할 수 있는 문을 병설하고,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이 자동문 옆에 설치되었다.</p>			
	① 수동개폐문은 여닫이문이나 미닫이문으로 설치되었다.			
	<p>■ 주·부출입문 전·후면에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p>			
	① 출입문 전후면 0.3m에 점형블록을 설치하였거나 바닥 색상 및 재질을 달리하였다.			
	<p>■ 문을 유리로 계획할 경우 어린이나 시각장애인 등이 유리면에 부딪히지 않도록 수평띠나 인지하기 쉬운 주위 환기용 표식 등을 부착한다.</p>			
	① 수평띠는 바닥면에서 1.5m 높이에 폭 10cm 이상으로 부착되었다.			
	<p>■ 유리문은 손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도록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유리문은 파손이 어려운 강화유리 등으로 설치되었다.</p>			
	<p>■ 주출입문에 접근하기 위한 경로 상에는 계단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단이 있는 경우, 기준에 맞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p>			
	① 경사로를 이용하는 장애학생 및 이동약자 등이 멀리 돌아가지 않도록 계단에 인접하여 경사로가 설치되었다.			
	<p>■ 출입문의 손잡이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설치한다.</p>			
	① 수직막대형 손잡이의 경우, 중앙지점이 바닥면에서 0.8m~0.9m에 위치한다.			

<p>■ 주출입구 측면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지판을 설치한다.</p> <p>① 점자표지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실의 배치가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되었다.</p> <p>② 점자표지판에 사용하는 글씨체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개발한 ‘KoddiUD 온고딕’ 폰트가 사용되었다. (권장)</p>		
<p>■ 대지경계선에서부터 건축물의 주출입구까지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이 설치되었다.</p>		
<p>■ 주출입구 측면의 점자안내판은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으로 이어지는 출입문의 측면에 설치되었다.</p>		
<p>■ 점자안내판과 함께 음성안내 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해 문자안내를 병행하였다.</p>		
<p>■ 문자안내와 안내판은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등의 방문을 고려하여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픽토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였다.</p>		
총 항목 수(23)		

1.6 공통공간 – 복도

구분	항목	양호	미흡	해당 없음
복도	● 복도는 방향전환이 적으면서 명쾌하고 간결한 동선을 이루어야 한다.			
	● 최단거리로 각 실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동선을 계획해야 하며, 학교를 처음 방문하는 이용자나 시각장애인 등이 방향을 인지하기에 용이한 구조로 되어야 한다.			
	● 복잡한 구조 또는 한 번에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로 계획된 경우, 유도 및 안내표지판 등을 연속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외국어 병기나 픽토그램을 적극 활용한다.			
	● 교실 등 학습공간으로 이어지는 복도의 경우, 단순하고 간결한 동선으로 계획하여 학습 분위기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휴식교류공간으로 이어지는 복도는 학생들에게 안정감 있고 편안한 분위기와 사고의 전환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구조, 자유로운 곡선 등을 활용하여 계획한다.			
	● 학생 등의 접근 및 이동 등의 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도록 한다.			
	■ 휠체어를 포함한 다양한 이용자의 이동을 위하여 실내복도의 단차는 제거한다.			
	① 실내복도에 단차가 없거나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 기준에 적합한 경사로가 설치되었다.			
	■ 모든 복도는 휠체어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도록 유효폭을 확보한다.			
	① 복도의 유효폭은 최소 1.5m 이상, 통행량이 많은 복도는 휠체어가 상호 교행 할 수 있도록 1.8m 이상 확보되었다.			
	■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교육연구시설의 복도 폭은 다음 기준에 준하여 계획한다.			
	① 복도 양옆에 교실이 있는 경우 복도 폭은 2.4m 이상 확보되었으며, 기타 복도는 1.8m 이상 확보되었다.			
	■ 바닥 마감재는 잘 미끄러지지 않고 충격을 흡수하는 울림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며, 이음새 틈이나 미세한 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탄하게 설치한다.			
	① 복도 폭에 여유가 있는 경우, 휠체어 사용자 등이 통행하기 쉬운 마감재와 시각 장애인 등이 걷기 쉬운 마감재 등으로 나누어 설치하였다. (권장)			

	■ 바닥마감은 물갈기 형태의 마감으로 계획하지 않도록 한다.			
① 물갈기 형태(대리석 본연의 미끄러운 단면 재질의 상태)가 아닌 바닥마감이다.				
■ 단차로 오인하기 쉬운 문양이나 패턴으로 바닥마감을 하지 않았다.				
	■ 복도에 노출되는 벽, 기둥 모서리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한다.			
① 보행자가 안전하고 쉽게 방향전환을 할 수 있도록 벽 모서리를 0.3m 이상 사선 방향 또는 둥글게 면 처리를 하였다.				
■ 복도에 독립 기둥이 설치된 경우 고무재질의 코너 보호대 등을 이용하여 충돌 방지조치를 하였다.				
	■ 각종 돌출형 안내표지판 등 일정 높이 이상에 설치하여 보행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① 돌출형 안내표지판은 바닥에서 2.1m 이상의 높이에 설치되었다.				
② 바닥면에서 높이 0.6m~2.1m의 벽면 돌출물의 돌출 폭은 0.1m 이하이다.				
■ 화장실 및 여닫이 교실출입문은 복도를 이동하는 학생 등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실내 측으로 열리도록 설치되었다.				
	■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도록 소화기, 신발장 등은 벽면 매립식(빌트인,Built-in)으로 설치한다.			
① 벽면 매립식(빌트인)으로 설치되었거나 벽면 매립식이 어려운 경우 보도 유 효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 복도에 손잡이를 설치할 경우, 진행방향, 몸의 균형유지, 보행보조, 추락방지 등 안전이 목적이므로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 위치, 형태, 설치방법을 통해 설치되었다.				
■ 손잡이는 연속되도록 설치되었으며, 손잡이의 단면 형상은 움켜잡기 쉬운 크기의 원형으로 하고, 차갑지 않은 재질로 설치되었다.				
■ 시각장애인에게 손잡이는 현재의 위치, 진행방향, 주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필요한 위치마다 손잡이 상부 면에 점자로 정보가 표시되었다.				

	<p>■ 손잡이는 장애학생 등 다양한 사용자의 신체적 조건 및 이용행태를 고려하여 가급적 2단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p>			
	<p>① 하단 손잡이와 벽의 이격 거리는 손잡이 직경의 1/2만큼을 더하여 상단 손잡이보다 복도 측으로 내밀게 설치되었다.</p>			
	<p>■ 손잡이의 시작과 끝 부분에 옷자락 등이 걸리지 않도록 아랫방향 또는 벽 방향으로 굽히거나 2단 손잡이는 상하 손잡이를 연결하여 설치되었다.</p>			
	<p>■ 통행에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고 눈부심이 없도록 하였으며, 발밀조명, 비상용 조명 장치가 적절히 배치되었다.</p>			
	<p>■ 학생 등이 자신의 위치 및 목적지를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층별, 또는 영역별로 구분하여 색채 구분을 하였다.</p>			
	<p>■ 정서발달에 좋은 재질 및 색상을 사용하였다.</p>			
	<p>■ 약시나 어느 정도 빛을 느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가급적 중복도가 아닌 편복도로 하여 자연채광을 확보하거나 한쪽 벽면의 색을 바꾸어 방향성을 인식하기 쉽도록 되어있다.</p>			
	<p>■ 각 실의 출입문 주변이나 휴게 등 특정 공간으로 이어지는 바닥은 패턴을 달리하여 변화감 있는 공간으로 연출하였다.</p>			
<p>총 항목 수(22)</p>				

1.7 공통공간 – 실내 출입문

구분	항목	양호	미흡	해당 없음	
실내 출입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을 출입하는 사람과 복도를 통행하는 사람과의 충돌 방지를 위해 실내 출입문의 설치 위치는 복도가 꺾이는 모퉁이 부분에서 충분히 떨어진 곳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기 위해 알코브형태로 계획하는 것을 고려한다. ● 출입문의 폭보다 통과 유효폭이 좁다는 점에 유의하여 유효폭을 확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출입문이 복도통행 및 실내출입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문 반대편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투시창이 설치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문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 시간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였으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 범위를 넓게 확보되도록 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닫이문일 경우 짐을 들고 있는 사람 등 누구나 쉽게 문을 열 수 있도록 가벼운 재질의 문으로 설치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되도록 충분하게 확보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도벽면마감재와 실내출입문의 색상 등을 달리하여 출입문을 인지하기 쉽도록 설치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m 이상의 여닫이문은 여닫기가 힘들고 문과 휠체어의 회전범위가 커져 오히려 불편하므로 지나치게 큰 폭의 여닫이문은 설치를 지양한다. 				
	① 출입문의 유효폭은 0.9m 이상 확보되었다. (의무)				
	② 미닫이문일 경우 출입문의 유효폭은 1.2m 이상 확보되었다. (권장)				
	③ 출입문의 손잡이 측 벽면에는 0.6m 이상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출입문 하부에는 휠체어 사용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흄을 설치하지 않았다. 					

	<p>■ 유아, 저학년 학생, 양손에 짐을 들고 있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등을 위해 적은 힘으로도 문을 손쉽게 여닫을 수 있는 문손잡이를 설치한다.</p>			
	<p>① 문손잡이 형태는 돌려서 사용하는 노브형은 지양하고, 수평 또는 수직 막대형이나 레버형으로 설치되었다.</p>			
	<p>②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0.8m~0.9m 높이에 설치되었다.</p>			
	<p>■ 시각 장애인의 이용을 배려하여 출입문의 손잡이 측 벽면의 1.5m 높이(점자표지 기준)에 실명안내점자표지판을 부착하였다.</p>			
총 항목 수(12)				

1.8 공통공간 – 수직 이동설비(계단, 승강기)

구분	항목	양호	미흡	해당 없음
수직 이동 설비	■ 계단은 평상시 층간 이동에 유용한 공간이면서 화재 등 비상시 피난 이동경로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므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형태와 유효폭 등을 갖춰야 한다.			
	① 계단의 바닥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坦하게 마감되었다.			
	② 계단코에는 줄눈 넛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되었다.			
	■ 저학년 학생, 장애학생 등이 높은 계단을 오르내릴 경우 잠시 휴식할 수 있고, 실족 시에 계속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계단 중간에 계단참을 설치하도록 한다.			
	① 수평면으로 된 참은 바닥면에서 높이 1.8m 이내 마다 설치하였고, 수평면으로 된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었다.			
	② 수평면 기준으로 상하 계단 수가 동일하게 설치되었다.			
	■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m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이 설치되었다.			
	■ 계단의 유효폭 및 높이는 2명이 여유있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① 계단의 유효폭은 1.5m 이상, 머리가 계단 하부에 부딪히지 않도록 2.1m 이상의 높이가 확보되었다.			
	■ 한 개의 계단에서 디딤판 너비와 챤면 높이가 도중에 바뀌게 되면 넘어지는 주 원인이 되므로, 균일한 치수로 설치되었다.			
	■ 목발이용자 등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챤면을 반드시 설치한다.			
	① 초등학교 계단의 챤면의 높이는 0.16m 이하, 디딤판의 너비는 0.3m 이상으로 설치되었다.			
	② 중·고등학교 계단의 챤면의 높이는 0.18m 이하, 디딤판의 너비는 0.28m 이상으로 설치되었다.			

	③ 챠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 이상으로 하였으며, 계단코는 3cm 이상 돌출하지 않도록 설치되었다.			
■ 계단의 양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양쪽 측면에 모두 설치한다.				
	① 계단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에서 0.85m 높이에 설치되었다.			
	② 저학년 학생의 이용을 고려하여 바닥에서 0.65m 높이에 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권장)			
	③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m 이상의 수평손잡이가 설치되었다.			
	④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굽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이 부착되었다.			
■ 계단의 측면에 벽면 등이 없는 경우에는 어린이 등이 추락하지 않도록 손잡이 지지대의 사이 간격에 유의 하며, 지지대는 수평형이 아니라 수직형으로 해야 하며, 영유아의 신체가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록 난간 사이의 간격을 확보한다.				
	① 난간 사이의 간격은 8cm 이하로 설치되었다.			
	② 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난간하부에 바닥면에서 높이 2cm 이상의 추락방지턱이 설치되었다.			
■ 계단 이용 시, 넘어지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디딤판, 챠면, 계단코는 약시 등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바닥마감재의 색상·명도·채도·질감 등을 달리하여 설치되었다.				
■ 계단 손잡이의 난간살은 난간이 수직재인 경우, 디딤판 한단에 2개 이상으로 하고, 수평재인 경우에는 15cm 이하로 설치되었다.				
■ 옥상 및 계단참에 설치하는 난간의 난간살은 가능한 한 수직재로 계획하여, 학생들이 밟고 올라가지 않도록 설치되었다.				
■ 엘리베이터는 유아, 저학년 어린이, 장애학생, 짐을 가진 사람 등의 층간이동에 매우 편리한 수직이동 수단이므로, 층 규모와 관계없이 설치되었다. (권장)				

	<p>■ 승강로비는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인지하기 쉽고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되었으며, 각 층에서는 그 층의 중심공간으로 접근이 쉽도록 배치되었다.</p>			
	<p>■ 계단 등의 수직이동 수단과 근접 설치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이동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p>			
	<p>① 승강기 전면에는 1.4m×1.4m 이상의 활동 공간이 확보되었다.</p>			
	<p>②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 바닥 사이에는 턱이 없으며, 틈은 3cm 이하이다.</p>			
	<p>③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6m 이상, 깊이 1.4m 이상이다.</p>			
	<p>④ 승강기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설치되었다.</p>			
	<p>■ 흐출버튼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 등 저학년 학생,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등 누구나 알기 쉽고 조작하기 쉬운 구조로 계획한다.</p>			
	<p>① 승강기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는 바닥면에서 0.8m~1.2m 범위에 설치되었다.</p>			
	<p>②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되었고, 높이는 바닥면에서 0.85m 내외로 하여, 수평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하였다.</p>			
	<p>③ 내부의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m~0.9m의 위치에 연속하여 설치되었다.</p>			
	<p>■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총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p>			
	<p>①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시가 되었다.</p>			
	<p>■ 승강기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 회전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휠체어 이용자가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후진하여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m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이 설치되었다.</p>			
	<p>■ 장애학생 등이 엘리베이터를 잠시 앉아 기다릴 수 있도록 의자 등을 둘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잠시 걸터앉을 수 있도록 접이식 의자 등이 설치되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감지식 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에서 0.3m~1.4m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 장치를 설치하였으며, 특히 장애학생 등은 행동특성상 반응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문이 닫히는 속도가 열리는 것보다 느리도록 설치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이 설치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한다. 		
	<p>① 층수 선택버튼이 버튼(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깨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도록 설치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단은 에너지절감과 쾌적함을 위해 외벽에 면한 계단은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측창이나 천창을 설치하는 등 자연에너지가 적극 활용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에도 발을 헛딛지 않고, 디딤판과 챕면의 구별이 용이하도록 천장조명, 발밑조명, 비상용조명 등이 적재적소에 설치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기 전면의 활동공간은 학생 등의 승강기 승/하차 등의 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조도가 확보되었다. 		
	총 항목 수(39)		

1.9 공통공간 – 방재 및 피난시설

구분	항목	양호	미흡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난층을 제외한 층 중에서 장애학생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실이 있는 해당 층에는 층별, 주요실 별로 외부 피난이 가능한 옥외 공간, 발코니 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의 화염과 연기로부터 안전한 옥외공간이나 피난발코니 등의 일시 대피공간은 여러 명이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지상 등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장재 제한 및 방재설비 설치에 대한 세부내용은 건축법과 소방법에 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장재는 기본적으로 불연·준 불연 재료를 사용하여 급격한 연소 확대를 방지하도록 한다. 			
방재 및 피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난경로는 시설규모가 작더라도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며, 막다른 복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코니 등이 설치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난경로에는 순차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공간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복도, 로비, 전실,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등이 안전구획으로 설치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나 이용자가 도로나 공지에 용이하게 다다를 수 있는 경로, 소방대가 시설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확보되었다. 			
	①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m 이상 확보되었다.			
	② 자동문 설치 시 문의 개폐 시간은 3초 이상 확보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 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구성원이 문의 손잡이를 잡을 수 있도록 설치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되었다. 			

	■ 장애 학생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시설은 시설 규모가 작더라도 화재발생 초기단계에 작동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었다. (권장)			
총 항목 수(7)				

1.10 공통공간 – 안전설비

구분	항목	양호	미흡	해당 없음
안전 설비	■ 보행이용자 측면에서 모든 외부공간(출입구와 담장경계 포함)은 장비의 사각지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시스템화를 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① CCTV, 자연감시, 조명 등의 장비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지 수시 점검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② 건축물 벽면의 요철 구조, 조경 식재, 부지 바닥의 높이 차이로 인해 예상되는 사각지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 차량이용자의 사각지대는 언제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서의 차량 속도는 최소한으로 하며, 가급적 주변 통행자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① 차량속도는 10~20km/h 이내로 유도하고 있다.			
	② 차량이용공간(주차장, 차량통행로 등)에 설치되는 안전시설은 충분한 시야확보가 가능하도록 바닥에서부터 0.8m 이상 높이로 설치되었다.			
총 항목 수(4)				

1.11 공통공간 – 화장실(장애인용 화장실 포함)

구분	항목	양호	미흡	해당 없음
화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은 계단, 승강기 등과 함께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장애 학생을 포함하여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층마다 설치하여 사용편의성과 접근성을 확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및 주변 시선의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반화장실 내부에 함께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득이하게 따로 구분해서 설치할 경우 각 층별로 남녀를 구분하여 1개소 이상 설치해야하며, 일반화장실 출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가족 혹은 보호자가 함께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은 외기에 면하게 배치하여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적극 활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 및 어린이의 이용이 많은 학교시설은 어린이용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며, 밝고 청결하며 경쾌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색채계획, 마감재 등을 선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화장실 내부에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 경우 출입문은 자동문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휠체어 이용자가 지나갈 수 있는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p>① 화장실 출입문의 유효폭은 0.9m 이상 확보되었다. (의무)</p>			
	<p>② 자동문이나 미닫이문일 경우 1.5m 이상 확보되었다. (권장)</p>			
	<p>③ 휠체어 이용자가 불편함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단차 없이 설치되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일 혹은 판석마감인 경우에는 0.5cm 이하의 줄눈으로 걸려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평탄하게 마감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 벽, 천장의 마감재는 오염에 강하고 자국, 흡집이 생기지 않는 내마모성이 우수하며 미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마감재를 사용한다. 			
	<p>① 청소하기 용이하도록 틈새가 적고, 파손 시 마감재 교체가 용이한 재료가 사용되었다.</p>			

<p>■ 복도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화장실 출입구 주변 벽, 바닥, 천장마감재 등을 달리하여 남녀화장실,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의 시인성을 높이도록 한다.</p>			
<p>① 벽이나 천장마감 등을 달리하거나 누구나 알기 쉬운 픽토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화장실의 시인성을 높였다.</p>			
<p>■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에 점자표기를 포함한 남녀 구분안내표지, 화장실 내부를 안내하는 촉지도식 안내 표지, 음성유도장치 및 점형블록 등을 설치한다.</p>			
<p>① 벽면 높이 1.5m 위치에 점자표지판이 설치되었다.</p>			
<p>■ 세면대는 다양한 이용 행태를 위해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설치되었다.</p>			
<p>■ 세면대는 신체적 조건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높이에 설치한다.</p>			
<p>① 상단높이 기준 바닥면에서 0.85m, 하단 깊이 0.45m, 높이 0.65m 이상으로 설치하여 세면대 하부공간이 확보되었다,</p>			
<p>② 세면대는 카운터형으로 설치되었다.</p>			
<p>■ 거울은 이용자의 다양한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전면거울을 설치한다.</p>			
<p>① 세면대 전면의 거울은 세로로 0.65m 이상, 하단높이가 바닥면에서 0.9m 이상의 높이에 설치되었다.</p>			
<p>② 세면대의 거울은 가로 0.6m 이상, 세로 0.9m 이상의 전면 거울로 설치되었다.</p>			
<p>■ 세면대 수도꼭지는 광감지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였으며, 레버식일 경우, 냉수·온수 구분을 위해 색상과 점자표시가 부착되었다.</p>			
<p>■ 세면대 주변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핸드드라이어, 종이 타올, 선반, 외투걸이, 우산걸이 등을 설치한다.</p>			
<p>① 세면대 주변에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높이의 핸드 드라이어 및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다.</p>			
<p>■ 어린이용 세면대는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한다.</p>			

	① 바닥면에서 세면대 상단까지의 높이가 0.6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였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대가 설치되었다.			
	■ 남자 화장실 내의 소변기 중 1개소 이상의 소변기는 바닥 부착형으로 설치되었다.			
■ 소변기의 양옆에는 개인 사생활 존중을 위한 가림막을 설치한다.				
	① 가림막의 길이는 벽면에서 0.2~0.3m 내외로 돌출되도록 설치되었다.			
	② 가림막의 높이는 바닥면에서부터 1.5m 이상부터 0.45m 내외로 설치되었다.			
■ 장애인 등의 다양한 이용자들을 위한 소변기의 양옆에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한다.				
	①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0.8m~0.9m, 길이는 벽면에서 0.55m 내외, 좌우 손잡이 간격을 0.6m 내외로 설치되었다.			
	②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1.1m~1.2m 내외이며, 하단부가 훨체어의 이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돌출 폭은 벽면에서 0.25m 내외로 설치되었다.			
■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변기의 벽제 배수구를 바닥면에서 0.2~0.3m의 높이로 설치되었다.				
■ 대변기부스의 유효바닥면적은 다양한 신체적 특성을 지닌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계획한다.				
	① 유효바닥면적은 폭 1.0m 이상, 깊이 1.8m 이상 확보되었다.			
■ 대변기부스 출입문은 사람들이 출입하기 원활한 유효폭을 확보하며, 여닫이문일 경우 문 개폐 방향은 바깥쪽으로 열리도록 한다.				
	① 대변기부스의 출입문 유효폭은 0.9m 이상 확보되었다.			
■ 대변기부스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 장치를 갖춰야한다.				
	① 잠금장치는 견고하면서도 쉽게 조작할 수 있고, 비상시 외부에서 열 수 있는 구조이다.			

	■ 세정 장치는 광감지식, 누름버튼, 레버식 등 작동이 쉬운 형태로 설치하였으며,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도 고려하여 점자가 표기되었다.			
	■ 세정 장치, 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①	편의제공을 위해 대변기부스 내에 가방이나 짐을 둘 수 있는 선반이나 옷 등을 걸 수 있는 후크 등이 설치되었다.			
■	대변기는 양변기로 설치하였으며,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일정 비율의 화변기가 설치되었다. (권장)			
■	어린이용 대변기는 어린이전용 양변기를 설치하였으며, 일반 양변기와 겸용 할 경우에는 어린이전용 변기좌대가 설치되었다,			
■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의 출입문은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한 버튼식 형태의 잠금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잠금장치는 비상시 외부에서 열 수 있는 구조이다.			
■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출입문의 유효폭과 전면공간의 통로는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①	출입문의 전면공간은 휠체어가 방향전환 할 수 있는 폭 1.5m 이상 확보되었다.			
②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9m 이상 확보되었으며, 자동문으로 설치되었다.			
■	유효바닥면적은 휠체어 사용자 등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한 활동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①	폭 2.0m 이상, 깊이 2.1m 이상, 대변기 측면에 0.75m 이상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었다.			
②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5m×1.5m 이상의 활동 공간이 확보되었다.			
■	대변기는 양변기로 좌대높이는 휠체어의 규격과 비슷하게 계획하여 휠체어 이용자가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좌대높이는 바닥면에서 0.4m~0.45m 내외의 높이로 설치되었다.			
■	대변기 측면 벽면에는 이용자가 보조할 수 있는 수평, 수직 손잡이를 설치한다.			

	① 수평손잡이는 높이 0.6m~0.7m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변기 중심에서 0.4m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되었다.			
	② 수평손잡이와 연결하여 0.9m 이상의 길이로 수직손잡이가 설치되었다.			
	③ 다른 쪽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였으며, 손잡이 간의 간격은 0.7m 내외로 설치되었다.			
	■ 세정장치는 광감지식, 누름버튼, 레버식 등 작동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되었다.			
	■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불이 켜지는 문자시각설비가 설치되었다.			
	■ 손잡이는 차갑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움켜잡기 쉬운 두께로 설치한다.			
	① 손잡이 단면 지름 3.2cm~3.8cm의 범위로 설치되었다.			
	■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내부의 세면대는 카운터형으로 설치하였고, 양옆에 수평손잡이는 상하회전형으로 설치되었다.			
	■ 이외의 사항은 일반화장실(일반 대변기부스)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되었다.			
	■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공간계획이며, 비상시에 호출 등 대응이 가능한 구조와 공간계획으로 설치되었다.			
	① 화장실 안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화장실 외부에 설치된 경광등에 적색불이 켜지면서 경보음이 울려 위급 상황임을 알릴 수 있도록 하였다.			
	■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시야가 확보되어야 하고, 부적절하거나 위험한 행동이 발생하기 어려운 공간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화장실 내 위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벨은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세면대 주변, 대변기 부스마다 손이 닿기 쉬운 높이에 설치한다.			
	① 비상벨은 대변기와 가까운 곳에 바닥면에서 0.6m~0.9m 사이의 높이에 설치되며, 바닥면에서 0.2m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② 비상벨에 대한 설명 및 작동법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이 부착되었다.			

	<p>■ 화장실 내부에는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기가 설치되었다.</p>			
	<p>■ 조명설비는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붙인다.</p>			
	<p>① 화장실, 샤워실 등 습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조명기구는 가능한 방수형으로 설치되었다.</p>			
	<p>■ 화장실 내부는 쾌적하고 청결한 느낌을 주는 색채의 마감재를 사용하고, 이와 어울리는 조명등과 색상을 고려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p>			
	<p>■ 저녁 시간이나 흐린 날을 기준으로 조도기준을 설정하여 부족한 조도를 향상시키고 눈부심 없는 부드러운 조명으로 설치되었다.</p>			
	<p>■ 학생 등이 대변기로의 접근 및 조작기기의 작동, 탈의 등을 하기에 충분한 조도가 확보되었다.</p>			
총 항목 수(51)				

1.12 공통공간 – 탈의실 및 샤워실

구분	항목	양호	미흡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의실 및 샤워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한다. ● 탈의실과 샤워실의 출입문 단자는 제거하여 모두가 이용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학생 등이 탈의를 하기에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의실 및 샤워실의 출입문은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설치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의실과 샤워실에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충분한 바닥면적과 손잡이를 함께 계획한다. 			
	<p>① 샤워실(샤워부스 포함)의 유효바닥면적은 $0.9m \times 0.9m$ 또는 $0.75m \times 1.3m$ 이상으로 설치되었다.</p>			
	<p>② 샤워실 내에는 장애인 등이 신체 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 손잡이가 설치되었다.</p>			
탈의실 및 샤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샤워실의 바닥면 기울기는 $1/30$ 이하이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되었다. ■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였으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되었다. ■ 샤워기는 얇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샤워실 내에는 휠체어 이용자 등의 접근이 편리한 위치에 샤워용 접이식의자를 설치한다. 			
	<p>① 샤워용 접이식의자의 높이와 깊이는 $0.4m \sim 0.45m$로 설치되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의실의 수납공간의 높이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에서 $0.4m \sim 1.2m$로 설치되었으며,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의실 및 샤워실 내부에는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기를 설치한다. 			

	①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기를 탈의실 내에만 설치할 경우에는 샤워실 내에서도 확인 가능하도록 샤워실 출입문 상부를 투명유리 등으로 설치하였다.			
	■ 조명설비는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붙였다.			
	■ 샤워실 등 습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조명기구는 방수형으로 하였다.			
총 항목 수(11)				

2.1 학습공간 – 일반학급

구분	항목	양호	미흡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기본적인 안전과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일시적 또는 장기적) 장애를 가진 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구성원이 학습 과정에 배제됨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급적 불박이 가구 등 고정된 가구들을 적게 두는 것이 유리하고, 교실 가까이 휠체어나 보조기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학습지원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며 개별 상황에 맞게 실내온도와 통풍을 단계별로 직접 조절 가능하도록 설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교실은 교실과 교실 사이의 가변적 파티션 벽체시스템 설치 또는 교실 복도 사이를 개방하거나, 투명한 가변형의 벽체로 구성하여 복도 공간을 교수-학습공간으로 확장하는 것 등을 통해 전형적인 학습공간을 탈피하고 학습경험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의 대부분은 말하기와 듣기, 시청각정보 활용하기를 통해서 이뤄지기에 교실 내 시각환경과 음환경에 대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반 학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등이 학습 및 생활하기에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도록 한다. <p>■ 교실 출입문은 ‘1.7 실내출입문’ 기준에 준하여 설치되었다.</p>			
	<p>■ 교실 내의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 가능한 책상까지 원활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접근경로의 유효폭을 충분히 확보한다.</p>			
	<p>① 접근경로의 유효폭은 0.9m 이상 확보되었다.</p>			
	<p>② 접근경로의 회전구간은 1.4m 이상 확보되었다.</p>			
	<p>■ 학생들의 성장 정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책걸상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그룹 활동에 따른 책걸상 이동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가볍고 이동이 용이한 것으로 구비하였다.</p>			
	<p>■ 칠판, 책상, 의자 등의 교구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높이, 하부공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한다.</p>			

	① 교탁은 휠체어 이용자의 이용을 고려하여 바닥면에서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었다.			
	② 책상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에서 0.7m~0.9m로 설치되었다.			
■ 미닫이문에는 손끼임 방지설비를 설치하며, 손잡이와 문틀 사이에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① 문틀 사이에 5cm 이상의 여유 공간을 두었다.			
	②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문이 자동으로 천천히 닫히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으로 충분하게 확보되었다.			
■ 반대편이 보일 수 있도록 일정 높이에 고정된 유리창을 설치하였으며, 유리는 충격에 의한 관통 및 파손 시 파편의 비산이 없도록 설치되었다.				
	■ 창대의 높이가 실내바닥면에서 1.2m 이하인 경우에는 창호 외부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설치되었다.			
	■ 교실 출입문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되었다.			
	■ 피난경로에 있는 모든 문을 열었을 때 피난에 장애를 주지 않는다.			
	■ 난방기구의 표면온도가 높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 천장이나 벽에 설치하는 선풍기는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붙였다.			
	■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교가 남향배치를 고수하는 점을 고려하여 칠판, 모니터 등의 눈부심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ex. 곡면칠판, 교실 창문 루버 설치 등)을 적극 고려하였으며 각 교실의 상황에 맞게 교사와 학생이 조명을 단계적으로 조절 가능하도록 설비를 마련하였다.			
	■ 조명 설비를 기둥이나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 벽의 두께, 교구 배치, 칸막이 등을 고려하였다.			
	■ 바닥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구의 배치, 예상 통로 등을 고려하며, 물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p>■ 콘센트 설치의 일반적인 높이는 벽의 경우 바닥 위 300mm, 작업대가 있는 경우 작업대 위 100mm~300mm 내외, 기계실·전기실·주차장의 경우 바닥 위 500mm~1,000mm 내외로 되어있다.</p>			
	<p>총 항목 수(18)</p>			

2.2 학습공간 - 특수학급

구분	항목	양호	미흡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자체 장애가 아닌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특수학급을 1층에 배치하는 것보다 학교 내 다른 학급과 시설들을 이용하는 효율적인 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장애의 경우, 학습의 장이 생활의 장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인 건축개념에서 적용되는 공적, 사적영역의 영역구분 및 학습과 놀이에 따른 정적, 동적공간의 영역구분이 특수학급 공간계획에 적용되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급 배치 시 승강기와 화장실이 인접하도록 하여 학생들과 교사의 동선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급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 화장실, 교과교실, 식당, 체육관 등의 시설 위치를 고려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와 도구는 공간의 유연한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볍고 이동이 용이한 구조로 하고, 다양한 배치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와 도구는 쉽게 청소가 가능하고 감염방지를 위한 관리가 용이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특수 학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한 교실에서 6년 동안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편안한 가정집 분위기로 조성하되 가변적인 모듈러 디자인 등을 통해 공간의 변화를 주어 창의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자폐성 장애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특수학급을 배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음이 발생하는 곳과 최대한 이격시키고, 창 밖 풍경 등 전경을 고려하여 배치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 내부 또는 교실 가까이에 특수교사 및 활동 보조교사들의 휴게 및 사무 공간들을 배치하여, 장애학생의 학부모들이 대기 또는 휴식하거나 상담 할 수 있는 공간의 기능을 겸하도록 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 출입문은 '1.7 실내 출입문' 기준에 준하여 설치되었으며, 교실 내 통로의 유효폭은 '2.1 일반학급'의 교실 내 통로의 유효폭 기준에 준하여 설치되었다. 			

	<p>■ 바닥과 벽은 사고나 부주의한 사용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날카로운 모서리와 돌출부가 없도록 설치되었다.</p>			
	<p>■ 특수학급 내에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되었으며,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접근경로가 확보되었다.</p>			
	<p>① 특수학급 내에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학생과 교사의 동선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특수학급과 가까운 곳에 화장실을 확보하였다.</p>			
	<p>■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내부구조 및 활동 공간 등은 ‘1.11 화장실’ 기준에 준하여 설치되었다.</p>			
	<p>■ 특수학급은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 필요한 다양한 학습 보조용품 및 의료 용품들을 구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납공간이 설치되었다.</p>			
	<p>■ 특수학급 내의 칠판, 책상, 의자 등의 교구는 휠체어 이용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높이, 하부 공간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었다.</p>			
	<p>■ 특수학급 내의 교단, 교탁, 책상은 ‘2.1 일반교실의 교구 및 기자재’ 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p>			
	<p>① 교탁은 휠체어 이용자의 이용을 고려하여 바닥면에서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었다.</p>			
	<p>② 책상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에서 0.7m~0.9m로 설치되었다.</p>			
	<p>■ 기본적인 조명은 ‘ 2.1 일반교실의 조명(조도)계획’ 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p>			
	<p>①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교가 남향배치를 고수하는 점을 고려하여 칠판, 모니터 등의 눈부심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ex. 곡면칠판, 교실 창문 루버 설치 등)을 적극 고려하였으며 각 교실의 상황에 맞게 교사와 학생이 조명을 단계적으로 조절 가능하도록 설비를 마련하였다.</p>			
	<p>② 조명 설비를 기둥이나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 벽의 두께, 교구 배치, 칸막이 등을 고려하였다.</p>			
	<p>③ 바닥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구의 배치, 예상 통로 등을 고려하며, 물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하였다.</p>			

	<p>■ 특수학급은 장애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편안한 빛의 조명 및 색상을 사용하였다.</p>			
	<p>■ 자폐성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원색 등의 과도한 색상을 사용하지 않으며, 빛을 과도하게 반사시키는 물건은 최소화하였다.</p>			
	<p>■ 밝고 따뜻한 자연채광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여 학생들의 우울감 해소 및 에너지를 제공하고, 학습의 질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p>			
	<p>① 자연채광은 공간을 활기차고 쾌적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공간을 편안한 분위기로 조성하였다.</p>			
총 항목 수(16)				

2.3 학습공간 – 특별/교과교실

구분	항목	양호	미흡	해당 없음
특별/ 교과 교실	● 각 특별교실은 해당교과의 참여에 있어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개인자리 확보를 고려하고, 휠체어 사용자와 보행약자의 이동에 필요한 내부 활동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 교과교실제 시행에서는 학생들의 이동이 빈번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교과교실존 출입과 이동에 있어서 (일시적 또는 장기적) 장애를 가진 학생과 교사의 접근과 이동상의 안전과 편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			
	● 교과교실존 (교실 + 교과연구실 + 교과학습지원공간(미디어스페이스) 등) 내부와 인접지역 구성에 있어 휴식, 교류의 요소 (ex.소규모 벤치, 그룹모임 공간 등)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비상 시 신속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는 위치로 계획하도록 해야 한다.			
	● 화학약품을 사용하거나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특별교실은 바닥표면을 내화학성 제품이나 난연재료 이상으로 마감한다.			
	■ 교실 출입문은 ‘1.7 실내 출입문’ 기준에 준하여 설치되었으며, 교실 내 통로의 유효폭은 ‘2.1 일반학급’의 교실 내 통로의 유효폭 기준에 준하여 설치되었다.			
	■ 교실 내 세면대 하부는 휠체어사용자의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되었으며, 싱크대 세정장치는 레버식이다.			
	■ 예능 교실(미술실, 음악실 등), 가정계 교실(기술, 가정, 예절교실 등) 등의 실습교실에는 휠체어 접근 및 교육 참여가 가능하다.			
	① 단상 없이 무단차로 설치되었거나 단상이 있을 경우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을 고려하여 1/12 이하의 경사로가 설치되었다.			
	■ 컴퓨터실은 복도와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 휠체어 이용자 등이 컴퓨터실 내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① 엑세스 플로어 등으로 인한 단차 발생 시에는 1/12 이하 기울기의 경사로가 설치되었다.			
■ 기본적인 사항은 ‘2.1 일반교실의 안전계획’ 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① 문틀 사이에 5cm 이상의 여유 공간을 두었다.			
	②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문이 자동으로 천천히 닫히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으로 충분하게 확보되었다.			
■ 기본적인 조명은 ‘2.1 일반교실의 조명(조도)계획’ 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① 학생 등이 실험 및 실습을 하기에 충분한 조도가 확보되었다.			
	② 조명 설비를 기둥이나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 벽의 두께, 교구 배치, 칸막이 등을 고려하였다.			
	③ 바닥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구의 배치, 예상 통로 등을 고려하며, 물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 특별교실 내의 실험대, 세척용 싱크대, 컴퓨터 열람석, 칠판, 책상, 의자 등의 교구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높이, 하부 공간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었다.			
■ 특별교실 내의 교단, 교탁, 책상은 ‘2.1 일반교실의 교구 및 기자재’ 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① 교탁은 훨체어 이용자의 이용을 고려하여 바닥면에서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었다.			
	② 책상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에서 0.7m~0.9m로 설치되었다.			
■ 실험 실습실				
	① 개수대(세척용 싱크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에서 0.85m 내외, 하단높이는 0.65m 이상으로 설치되었다.			
	② 개수대의 하부는 무릎 및 훨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되었다.			
	③ 개수대의 수도꼭지는 레버형이며, 냉·온수 점자표지가 부착되었다.			
	④ 실습대(작업대)의 전면에는 훨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이 확보되었다.			
	⑤ 실습대 상단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0.7m~0.9m로 설치되었다.			

<p>⑥ 실습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에서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었다.</p>			
<p>■ 예능교실(미술실, 음악실)</p>			
<p>① 미술실 내의 개수대, 실습대는 ‘실험 실습실의 개수대’ 기준에 준하여 설치되었다.</p>			
<p>② 한국의 전통건축 양식(마루 구조 등)으로 설치된 예절교실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 휠체어 이용자를 포함한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이다.</p>			
<p>■ 컴퓨터실</p>			
<p>① 컴퓨터실의 책상은 ‘실험 실습실의 실습대’ 기준에 준하여 설치되었다.</p>			
<p>총 항목 수(21)</p>			

2.4 학습공간 – 실내체육시설

구분	항목	양호	미흡	해당 없음
실내 체육 시설	■ 실내 규모에 적합한 스포츠 종목 선정하도록 한다.			
	① 종목은 탁구, 당구, 헬스, 스쿼시, 골프연습장 등으로 선정하였다.			
	②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장비 유효활동 공간에서 실내 벽과의 거리를 최소 2m 이상 이격하였다.			
	■ 벽에 관하여서는 ‘4.5 다목적강당(체육관)’의 기준에 준하여 설치되었다.			
	■ 실내 소규모 체육시설과 인접하여 탈의실과 샤워장을 설치한다.			
	① 탈의실과 샤워장은 ‘1.12 탈의실 및 샤워장’의 기준에 준하여 설치되었다.			
총 항목 수(4)				

2.5 학습공간 – 유치원

구분	항목	양호	미흡	해당 없음
유치원	■ 유치원의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의 출입문은 휠체어 이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들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①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9m 이상 확보되었다. (의무)			
	②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1.2m 이상 확보되었다. (권장)			
	③ 휠체어 이용자가 문을 열거나, 경사로 이용 시 회전이 가능하도록 수평면으로 된 활동공간이 1.2m 이상 확보되었다.			
	④ 출입문 개폐를 위한 손잡이 측 벽면에 0.6m 이상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었다.			
	■ 모든 출입문의 하부에는 문틀, 씰 등을 매립하여 단차가 없다.			
	■ 출입문의 손잡이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설치한다.			
	① 손잡이의 중앙 지점이 바닥면에서 0.8m~0.9m에 위치하도록 설치되었다.			
	■ 유치원 주출입구의 문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① 주출입구의 0.3m 전·후면에 점형블록이 설치되었다.			
	② 유치원 건물이 대지 내에 별도로 설치될 경우, 대지경계선에서부터 유치원의 주출입구까지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이 설치되었다.			
	③ 점자안내판은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으로 이어지는 출입문의 측면에 설치한다.			
	■ 보육실 출입문은 ‘1.7 실내 출입문’ 기준에 준하여 설치되었다.			
	■ 보육실 출입문의 손잡이는 다양한 신장을 가진 이용자들을 고려하여 수직 손잡이를 설치한다. (불가능할 경우 수평 또는 레버형으로 설치한다.)			
	① 수직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0.6m~0.7m, 길이는 1.2m 이상 설치되었다. (권장)			

	<p>■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배려하여 출입문의 손잡이 측 벽면의 1m 높이에 실명안내점자표지판을 부착하였다. (권장)</p> <p>■ 연령대별 가구크기를 고려하여 사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p>		
	<p>① 만 3~4세의 경우, 테이블 높이 40cm 내외, 고정 작업대 높이 55cm 내외, 의자 높이 21cm 내외이다.</p>		
	<p>② 만 5~6세의 경우, 테이블 높이 60cm 내외, 고정 작업대 높이 60cm 내외, 의자 높이 26cm 내외이다.</p>		
	<p>■ 기본적인 사항은 ‘2.1 일반교실의 안전계획’ 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p>		
	<p>① 문틀 사이에 5cm 이상의 여유 공간을 두었다.</p>		
	<p>②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문이 자동으로 천천히 닫히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으로 충분하게 확보되었다.</p>		
	<p>■ 유치원의 주출입문이 자동문만 설치된 경우에는 문이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문 옆에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이 설치되었다.</p>		
	<p>■ 안전과 관련하여 옥외 휴식공간의 경계에 울타리나 담이 설치되었다.</p>		
	총 항목 수(18)		

2.6 학습공간 – 운동장

구분	항목	양호	미흡	해당 없음
운동장	■ 운동장 접근을 위한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한 번에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것을 고려하여 충분한 크기로 계획한다.			
	①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m 이상 확보되었다. (의무)			
	②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5m 이상 확보되었다. (권장)			
	■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동일한 계단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챌면의 높이는 균일하게 계획한다.			
	① 디딤판의 너비는 0.28m 이상, 챌면의 높이는 0.18m 이하로 설치되었다.			
	■ 계단의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① 계단의 측면이 스탠드 등 사람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공간일 경우를 제외하고 손잡이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었다.			
	■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계단 손잡이를 계획한다.			
	① 계단 손잡이의 높이는 0.8m~0.9m로 설치되었다.			
	② 계단 손잡이의 두께는 지름 32mm~38mm로 설치되었다.			
	③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m 이상의 수평 손잡이를 설치되었다.			
	④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이 부착되었다.			
	■ 계단의 바닥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坦하게 마감되었다.			
	■ 계단코에는 줄눈 넣기를 하거나 경질 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되었다.			
	■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m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 블록이 설치되었다.			

	■ 교문 및 각 건물에서 운동장으로 평坦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①	경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1/18 이하 기울기의 경사로가 설치되었다.			
■ 운동장 접근을 위한 보행로의 유효폭은 다양한 이용자를 위해 충분한 유효폭과 미끄럼지 않은 재질로 마감한다.				
①	보행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 확보되었다.			
■ 어린 학생들의 안전과 다양한 학생들의 이용을 고려하여 보행로의 경사로 양측에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①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0.8m~0.9m 내외로 설치되었으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 위쪽 손잡이는 0.85m, 아래쪽 손잡이는 0.65m 높이에 설치되었다.			
②	손잡이의 지름은 3.2cm~3.8cm 내외로 설치되었다.			
③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이 부착되었다.			
총 항목 수(16)				

3.1 휴식교류공간 – 휴식공간(휴식공간, 홈베이스, 실내 광장)

구분	항목	양호	미흡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홀과 복도공간을 단순한 통행공간으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창의, 인성 함양을 위해 다양한 휴식 및 놀이 등을 통한 사회적 교류공간으로 이해하여 다양한 활동공간이 가능하도록 조성할 필요가 있다. ● 휴식 공간을 잠깐 쉬는 공간으로 단순화 시키지 않고 공간의 형태로 구분하며, 사용시간별로 구분하여 휴식의 종류에 따른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휴식 공간 및 광장에서 자연스러운 놀이와 모임이 형성되도록 곳곳에 각종 놀이공간과 학생들의 생각을 공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조성함이 바람직하다. ● 다양한 행위 및 활동이 자연스럽게 유발될 수 있도록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독특하고 재미있는 기구, 가구, 포켓 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p>■ 층별 또는 공간영역(zone)별 특성에 따라 학생들의 사회성과 감성을 기를 수 있도록 조성할 필요가 있다.</p>			
휴식 공간	<p>① 휴식 공간 및 광장의 기능, 형태, 색채, 마감재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p> <p>■ 학생들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바닥의 색채 및 마감재는 형태에 따라 따뜻한 분위기를 줄 수 있는 색채를 사용하였고, 차가운 시멘트보다는 목재 마감재를 사용하였다.</p> <p>■ 접근로의 유효폭 및 안전계획은 ‘1.6 복도의 유효폭과 안전계획’ 기준에 준하여 설치되었다.</p> <p>■ 복도와 인접하는 휴식 공간을 조성하며 짧은 휴식 시간(10분 이내)에도 편히 쉴 수 있도록 교실과 화장실에 가깝게 배치하였다.</p> <p>■ 학생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실내 공간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사회적 교류, 학습지원의 측면에서 제공하고 있다.</p>			
	<p>① 휴식 공간 내 안락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큰 쿠션과 소파를 배치하였다.</p> <p>■ 홈베이스는 복도와 바로 인접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공간으로 존재하며, 학생들에게 학습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홈베이스 영역 내에 다양한 학습자료, 과제성과물, 정보 등을 게시 비치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베이스와 연계되는 훌이나 로비가 있는 경우 내·외부인을 환영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30분 이상 충분한 휴식을 할 수 있으며 소통, 휴식 및 놀이, 학습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면적과 층고가 확보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교사동의 중심적인 위치, 층별로 동일 위치에 배치하고, 학년별, 성별 분산배치 되어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광장은 복도와 연계되는 별도의 공간으로 존재하며, 약 4m×4m(대인 거리 중 공적거리 준용)이상의 공간으로 다양한 작품이나 과제물 등을 전시 할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 조성되어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복도를 오가며 전시 광장을 볼 수 있고, 30분 이내로 휴식을 취 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곤충, 식물 등이 서식, 성장하는 모습을 항상 관찰할 수 있는 관찰 공간 등이 조성되었다.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광장과 연계되는 훌이 주출입구 훌일 경우에는 학부모 대기, 상담, 대화 등 다양한 응접(reception)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개방 가능한 도서실, 식당 등을 개방무대와 함께 연계 배치함으로 지역사회와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는 복합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역사, 지역의 특성 등 학교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역사적 전시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권장) 		
총 항목 수(13)			

3.2 휴식교류공간 – 놀이터

구분	항목	양호	미흡	해당 없음
놀이터	■ 훨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통행 가능하도록 유효폭을 충분하게 계획한다.			
	① 통행 유효폭은 1.2m 이상 확보되었다.			
	② 통행로 50m마다 1.5m×1.5m 이상의 교행구역이 설치되었다.			
	③ 접근로의 단차는 2cm 이하이다.			
	④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되었다.			
	■ 놀이공간 내의 놀이시설의 경우, 훨체어 이용 학생 등의 이용이 가능한 놀이기구를 설치되었거나 설치가 어려울 경우, 놀이기구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이 가능한 경로가 있다.			
	■ 옥내놀이터를 어린이집의 최상층 바닥면에 설치하는 경우, 울타리나 보호 난간은 바닥면 최하단으로부터 1.2m까지는 콘크리트·조적(벽돌 등) 또는 강화유리 등으로 설치하였다.			
	총 항목 수(6)			

3.3 휴식교류공간 – 외부정원 (학교 숲)

구분	항목	양호	미흡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정원은 옥외에 설치된 자연과 어우러진 휴게공간으로 학생, 교사들에게 휴식 제공과 학습효율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서 다양한 여가, 체험활동까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정원은 실내 휴게공간보다 자연친화적인 분위기에서 완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교내의 휴게공간과도 연계하여 휴식의 연결성을 제공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숲은 외부정원보다 규모가 크고 더욱 자연에 가까운 형태를 띠며, 학습으로부터 벗어나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정원 및 학교 숲을 통해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온도저감 효과, 정서적 안정감 제공, 집중력 증가의 효과를 볼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운동장이나 체육관, 주차장 등 각종 학교시설의 위치를 고려하여 학습공간으로의 완충이 필요한 공간에 외부정원 또는 학교 숲을 계획한다. 			
외부 정원 (학교 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건축물 중 휴식 공간, 흠페이지스, 실내광장 등 학생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과의 동선을 고려하여 외부 정원을 계획함으로써 휴식의 연결성 및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로 및 내부 보행로 상의 가로등, 벤치, 파고라, 설명 안내판 등 각종 시설물은 보행로와 구분되도록 설치하여 안전하고 명쾌한 동선이 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치, 파고라, 음수대 등은 휠체어 사용자, 아동 등 모든 이용자가 사용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p>■ 외부정원 및 학교 숲은 학교시설의 구조에 따라 조성할 수 있다.</p>			
	<p>① 선형, 포켓형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되었다.</p>			
	<p>■ 교사건축물의 형태에 따라 곳곳에 외부정원을 위치시켜 어디서든 가볍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① 교내에 유휴부지가 있는 경우, 해당 공간에 다양한 식재 및 산책로, 휴게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여 학생들의 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p>			

	<p>■ 외부정원은 학교시설의 폐쇄적인 분위기를 감소시키기 위해 실내 공간에서 최대한 많은 면이 접하도록 중정형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① 외부정원은 실내 공간에서 최대한 많은 면이 접하도록 중정형으로 조성되었거나 중정형 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교사건축물과 최대한 인접한 곳에 조성되었다.</p>		
	<p>■ 교사건축물 사이 공간이 있는 경우 주차장이 아닌 외부정원으로 조성되었다.</p>		
	<p>■ 외부정원이 1층에 있을 경우, 교사건축물 2층에서 관망할 수 있도록 테라스를 설치하고, 2층 뿐 아니라 다른 층에서도 외부정원을 조망할 수 있도록 외부정원 방향에 있는 창문의 크기가 크게 설치되었다.</p>		
	<p>■ 교사건축물에서 외부정원으로 향하는 접근로 및 내부 보행로는 휠체어 사용자 등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유효폭, 기울기, 단차제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p>		
	<p>① 접근로의 유효폭, 기울기, 단차는 '1.2 보행접근로' 기준에 준하여 설치되었다.</p>		
	<p>■ 내부 보행로의 바닥은 자연친화적인 재질로 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돌길과 같이 굴곡이나 흠 등으로 인해 휠체어 사용자 등이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있는 설계는 지양하여야 한다.</p>		
	<p>① 차가운 이미지의 석재보다는 목재와 같은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하였다.</p>		
	<p>■ 외부정원과 인접한 건물 외벽을 자연과 비슷한 색상, 소재로 마감되었거나 일반 외벽과 다른 디자인으로 계획하여 완전한 휴식공간으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p>		
	<p>■ 비오텁, 텃밭 등의 체험공간은 휠체어 이용 장애학생 등의 접근 및 이동, 이용이 가능한 구조이다.</p>		
	<p>■ 외부정원 및 학교 숲은 지하고가 높은 식재로 조성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다.</p>		
	<p>■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이 설치되었거나 주변 건물에 차양기능을 할 수 있는 처마가 설치되었다.</p>		
	<p>■ 학생들의 정서 및 인성 함양을 위해 옥외공간에 자연생태학습장 (예, 텃밭, 식물원, 사육장 등)이 조성된 경우, 휠체어 사용자가 관망하거나 수업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접근이 가능하다.</p>		
	<p>■ 텃밭 등의 체험 공간 내 보행로는 각종 시설물(벤치 등)과 구분하여 설치하여 학생 등이 보행 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p>		

	<p>① 보행로 내 각종 시설물은 알코브 형태 등의 형태로 설치되었다.</p> <p>■ 생태연못, 텃밭 등에 설치하는 설명 안내판 등은 보행 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보행로와 구분하여 설치되었다.</p>			
	<p>총 항목 수(14)</p>			

4.1 지원공간 – 교과연구실

구분	항목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
교과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연구실은 홈베이스, 교과학습지원공간(미디어스페이스), 교과교실과 인접시켜 학생생활지도에 유리하도록 계획한다.● 홈베이스와 교과학습지원공간, 교과교실을 인접시켜 이용하는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교사의 시야가 확보되는 동시에 교사의 사생활을 존중할 수 있도록 반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한다.● 교과연구실과 함께 학습준비물센터가 별도로 조성되면, 각 교실마다의 교구, 재료 등이 차지하는 면적이 줄어들어 교실을 좀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가의 기자재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4.2 지원공간 – 보건실/상담실

구분	항목	양호	미흡	해당 없음
보건실 / 상담실 (Wee Cla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시설 초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건실을 별도의 공간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실의 규모는 보통교실 1실 이상의 규모로 계획하며, 보건실의 기능이나 역할 강화,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그 규모를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실 내 공간은 대기공간, 휴식공간 및 안정실, 진료실과 물품공간, 업무공간, 상담공간 등을 갖추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문은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로 직접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응급상황 시 구급차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실/상담실 내 안정실, 교사실, 상담실 등 기능별 공간은 각 기능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분리 배치하며, 교사의 업무공간은 학생들의 보건실 출입 및 안정실을 항상 관찰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실은 학생들의 감성과 문화에 맞는 환경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부담감을 해소하고 안락함과 안정감을 제공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은 직접 및 간접광을 혼합 구성함으로서, 눈부심을 방지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실과 상담실의 조명은 별도의 조절장치를 활용하여 세부 기능에 맞도록 적합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 출입문은 ‘1.7 실내출입문’ 기준에 준하여 설치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실/상담실 내 휠체어 이용과 접근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① 보건실/상담실 내의 실내 통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 확보되었다.			
	② 휠체어 이용자의 주요 경로에서의 회전구간은 1.4m 이상의 폭이 확보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실/상담실 내의 바닥마감은 미끄럼지 않은 재질로 마감한다. 			
	① 청소 및 유지관리가 유용하도록 하여 깨끗한 위생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벽과 천정은 따뜻한 느낌을 갖도록 마감되었고, 가구는 가급적 목재를 사용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실의 침대 수는 학생 수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되었고, 남녀공간을 구분 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 및 처치실은 처치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드레싱카를 둘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실은 개인의 사생활을 위하여 상담공간에는 칸막이, 유리 등이 설치되었고,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교내 상담실이 보건실과 인접하게 설치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공간은 가로 3m×2m 이상으로 구성되었고, 테이블, 의자, 교육자료 수납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실·행정실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으로 이어지는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설치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이용을 배려하여 경보·피난 설비는 비상벨 설비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 경보등이 함께 설치되었고,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난계단의 출입문은 명확히 인지 가능한 색상으로 표현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이나 식당 등 습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기구는 될 수 있는 대로 방수형으로 설치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은 직접 및 간접광을 혼합 구성함으로써, 눈부심을 방지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실과 상담실의 조명은 별도의 조절장치를 활용하여 세부 기능에 맞도록 적합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다. 		
총 항목 수(15)			

4.3 지원공간 - 돌봄·늘봄교실(초등학교 해당)

구분	항목	양호	미흡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늘봄교실은 정규수업 외에 등교 전, 방과 후 시간에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간으로, 교내 일반적인 공간과는 다르게 한 공간에서 학습, 독서, 신체활동, 식사, 수면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도교사 또는 지도원이 함께 할 수 도 있다. ● 한 교실에서 정적활동과 동적활동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간 구조의 계획이 중요하다. ●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하여 늘봄학교 단일체제로 개선될 것을 고려하여 기존 돌봄 교실의 공간 개선이 필요하며, 늘봄학교의 더욱 다양해진 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가변적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 돌봄·늘봄교실은 초등학생, 특히 저학년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방과 후 늦은 시간대에 운영을 하므로 안전에 유의한 계획이 필요하다. ● 이용시간이 종료된 후 부모님이나 보호자 등의 외부인의 출입이 발생하므로 안전을 위해 내부 동선을 통제하고 외부에서 별도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는 것을 고려한다. ● 교실 내 시설물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한 교실에서 이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모든 학생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크기로 조성한다. 			
돌봄 · 늘봄 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학교시설에서의 돌봄 교실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 외부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사회의 공공기관이나 평생학습 시설을 활용하거나 학교 인근에 공원이 있는 경우, 공원 내 부속시설을 신설·활용하여 공간을 마련하였다. ② 돌봄 교실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의 이용이 많으므로 학교와 가까우면서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한 돌봄 교실이 조성되었다. ■ 돌봄·늘봄교실은 정규수업시간에 이용하지 않는 시설이므로 일반학급과 분리된 위치에 조성하되,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을 하기 위해 교과교실 또는 도서관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을 고려하여 위치를 설정하였다. ■ 돌봄·늘봄교실의 출입문은 ‘1.7 실내 출입문’의 기준에 준하여 설치되었다. ■ 돌봄·늘봄교실의 운영 규모나 대상이 되는 학생 수 및 활동시간대 등의 운영방법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면적으로 조성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시설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벽면 및 모서리에 안전장치가 설치되었고, 신체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에는 더욱 안전에 유의하도록 설치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시간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충분한 수납공간과 교육 활동실, 독서코너, 수면실 등이 조성되어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침과 저녁 식사 및 간식 제공을 위한 조리 공간과 식사 공간이 조성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나의 교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을 수용하기 위해 활동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공간을 구분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활동실과 수면실이 바로 인접해 있는 경우,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이격시켜 배치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명은 활동의 종류에 따라 밝기 조절이 가능하며, 독서 공간 등에는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스탠드 조명설비를 제공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활동의 접점부에는 완충, 전이 공간으로 휴식공간이나 교류공간이 조성되었고, 신체활동이 활발한 공간과 식사 공간의 접점부에는 위생공간이 가까이 조성되었다.			
	총 항목 수(12)			

4.4 지원공간 – 식당

구분	항목	양호	미흡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당은 학생들의 협동 작업이나 개별적 공부를 위한 장소로도 활용 될 수 있도록 하며, 식사장소인 동시에 학교의 핵심학습센터로서 기능 할 수 있게 한다. ● 식당에서 외부의 자연경관이 잘 보일 수 있는 외벽구조로 공간을 조성한다. ● 식당공간의 훈zap은 일부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가능성이 높으므로, 충분한 여유 공간 확보, 흡음과 차음성능을 고려한 마감재 선택이 중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당의 출입문은 ‘1.7 실내출입문’의 기준에 준하여 설치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판 등을 들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가구와 가구 사이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휠체어의 이동을 위한 공간 확보에 유의해야 한다. 			
식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식당 내의 통로 유효폭은 1.2m 이상 확보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휠체어 이용자의 주요 경로에서의 회전구간은 1.4m 이상의 폭이 확보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이용 학생이 식당 출입구부터 배식대 및 식탁까지 접근 가능한 경로가 확보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이용 학생 등 다양한 학생을 배려한 식탁과 의자를 조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휠체어 이용 학생을 배려하여 식탁과 의자가 일체로 된 형태가 아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일체형을 설치할 경우 배식대 및 출입구와 가까운 쪽에 식탁·의자 분리형 식탁을 각각 배치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식탁 상단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0.7m~0.9m로 설치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휠체어 이용 학생을 위하여 식탁의 하부는 바닥면에서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법규 및 기준에 적합한 직통계단 및 피난계단을 설치해야한다. 			

	<p>① 식당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으로 이어지는 가장 가까운 거리의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50m 이하(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가 되도록 설치되었다.</p>			
	<p>■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이용을 배려하여 경보·피난 설비는 비상벨 설비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이 함께 설치되었고,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되었다.</p>			
	<p>■ 피난계단의 출입문은 명확히 인지 가능한 색상으로 표현되었다.</p>			
	<p>■ 식당에서 외부 전망과 경관 등이 좋은 곳에 위치하며, 실내조경을 통해 친환경적 공간으로 조성되었다.</p>			
	<p>■ 학생 등이 식당 내에서의 이동 및 식사 등의 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조도가 확보되었다.</p>			
총 항목 수(13)				

4.5 지원공간 – 다목적강당(체육관)

구분	항목	양호	미흡	해당 없음
다목적 강당 (체육관)	● 다목적강당은 체육활동 이외의 대규모 공간을 필요로 하는 교과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교내 시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갖출 수 있도록 조성한다.			
	● 위치는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환기와 채광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 배치하고 지하는 지양한다.			
	● 지역개방 시 다양한 지역주민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외부에서도 출입이 편리한 위치에 배치한다.			
	●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이용하는 출입문과 지역개방 시 주민들이 이용하는 출입문을 구분하여 외부인의 무분별한 학교시설 출입을 방지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한다.			
	● 다목적강당(체육관) 벽면 및 바닥은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마감재로 설치하며, 소리에 예민한 다양한 사용자들을 고려하여 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다목적강당(체육관)의 전등 교체 및 수리를 위하여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전등설비를 고려한다.			
	■ 외부 공간(운동장 등)과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성이 필요하므로 외부공간으로 진출입이 가능하게 조성한다.			
	① 외부로 진출입이 가능한 문이 별도로 설치되었다.			
	② 다목적강당(체육관)이 1층에 위치해있는 경우 한쪽 벽면은 셔터로 개방할 수 있다.			
	■ 다목적강당(체육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건물 근처 또는 1층 필로티를 활용하여 개별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다목적강당(체육관)의 주차장은 ‘1.3 주차장 및 차량출입구’의 기준에 준하여 설치되었다.			
	■ 다목적강당(체육관)이 2층 이상일 경우, 지상 층의 보행로에서 다목적강당으로의 외부 승강기를 계획한다.			
	① 외부 승강기는 ‘1.8 수직이동설비’의 기준에 준하여 설치되었으며, 외부 승강기와 가까운 곳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었다.			
	■ 다목적강당(체육관)의 출입문의 기본적인 사항은 ‘1.7 실내출입문’의 기준에 준하여 설치되었다.			

	<p>■ 다목적강당(체육관)은 교내 일반시설에 비해 대규모 이동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를 고려하여 계획한다.</p>			
	<p>① 출입문은 양쪽 개폐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출입문 안팎으로 대규모 인원의 충분한(약 50~100명 수용) 크기의 대기공간이 단차와 기울기가 없이 조성되었다.</p>			
	<p>■ 휠체어 이용자 등이 다목적 강당 내의 장애인 객석, 무대 등으로 원활한 접근이 가능하고 통로 회전구간은 여유 있는 폭을 확보한다.</p>			
	<p>① 실내 통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 확보되었다.</p>			
	<p>② 실내 통로에서의 회전구간은 1.4m 이상의 폭이 확보되었다.</p>			
	<p>■ 다목적강당(체육관) 내의 창고 출입문은 교구 및 기자재 등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p>			
	<p>① 창고 출입문은 양여닫이 문으로 설치되었다.</p>			
	<p>■ 다목적강당 내의 바닥마감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坦하게 마감되었으며, 신체활동이 많은 공간임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넘어졌을 경우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였다.</p>			
	<p>■ 다목적강당(체육관)의 무대공간은 별도의 소재로 계획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p>			
	<p>■ 무대 접근을 위한 경사로는 무대 앞 쪽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불가능할 경우 뒤편에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자동 슬로프를 설치할 수 있다.</p>			
	<p>① 무대 앞 쪽으로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체육활동 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무대 앞 쪽의 길이가 최소화되도록 설치하였다.</p>			
	<p>② 무대 접근을 위한 경사로의 유효폭은 0.9m 이상, 기울기는 1/12 이하로 설치되었고, 경사로 양측에 5cm 이상의 추락방지턱이 설치되었다.</p>			
	<p>■ 이미 경사로가 없이 계획된 학교의 경우, 이동식 슬로프를 활용하여 휠체어 학생 등이 무대 접근을 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되었다.</p>			
	<p>■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석은 전체 관람석의 1% 이상 설치되었다.</p>			
	<p>■ 장애인 등 이용이 가능한 객석의 배치는 고정하지 않으며, 복수의 객석이 선택 가능하다.</p>			

	<p>■ 고정식 객석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장애인용 객석표지(접근성 표지)를 부착하지 않도록 하여 자유롭게 객석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p>			
	<p>■ 장애인 등 이용이 가능한 객석의 위치는 출입구 및 피난통로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p>			
	<p>①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호자석과 함께 설치되었다.</p>			
	<p>■ 객석의 유효바닥은 통로와 구분하여 좌석을 설치하도록 한다.</p>			
	<p>① 바닥 면적은 1석당 폭 0.9m 이상, 깊이 1.3m 이상으로 설치되었으며, 1.2m 이상 통로와 구분되었다.</p>			
	<p>■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은 훨체어 이용자의 시야확보를 위하여 일정 높이 이하로 설치한다.</p>			
	<p>① 난간의 높이는 0.8m 이하로 설치되었으며, 앞좌석에 일반석 의자와 등판 등이 설치된 경우, 높이 0.3m 이하로 설치되었다.</p>			
	<p>■ 다목적강당(체육관) 내의 각종 운동기구, 돌출된 모서리 등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쿠션이 있는 재질로 마감되었다.</p>			
	<p>■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법규 및 기준에 적합한 직통계단 및 피난계단을 설치해야한다.</p>			
	<p>① 다목적강당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으로 이어지는 가장 가까운 거리의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50m 이하(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가 되도록 설치되었다.</p>			
	<p>■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이용을 배려하여 경보·피난 설비는 비상벨 설비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 경보등이 함께 설치되었고,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되었다.</p>			
	<p>■ 청각장애인을 위해 집단보청시스템, 시각표시장치 등의 설비나 기기 등이 적절하게 설치되었다.</p>			
	<p>■ 피난계단의 출입문은 명확히 인지 가능한 색상으로 표현되었다.</p>			
	<p>■ 체육교과, 행사, 동아리 활동, 학교개방 등에서 각종 운동에 필요한 공간규모를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의 방재거점으로의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되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과 주민의 이용시간을 분리하여 학교의 주목적인 학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문에서부터 복합화시설까지 접근경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주요시설에 대한 유도 및 안내판이 이동동선 내에 연속되도록 설치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개방 시 다양한 지역 주민의 이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반화장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탈의실, 수납공간 등의 부속시설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목적강당(체육관)과 인접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은 '1.11 화장실' 기준에 준하여 설치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다목적강당(체육관)과 인접하여 설치하는 탈의실 및 샤워실은 '1.12 탈의실 및 샤워실' 기준에 준하여 설치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목적강당(체육관) 내의 농구대는 높이 조절이 가능한 형태의 농구대로 설치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목적강당(체육관)의 고창은 전동설비 등으로 계획하여 개폐 가능하도록 설치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동커튼설비로 채광 등을 조절하거나 레일형 조명설비를 통해 적절한 조명활용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관 내 수영장을 설치할 경우, 휠체어 사용자, 노인 등이 안전하게 수영장으로 입수가 가능하도록 입수용 경사로의 설치를 고려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입수용 경사로가 설치되었거나 입수용 경사로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입수용 리프트가 비치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기구는 공간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빌트인 또는 부착 이동형으로 설치되었다. 			
	총 항목 수(34)			

4.6 지원공간 – 정보관/도서관

구분	항목	양호	미흡	해당 없음
정보관 /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도서실은 서가와 열람공간을 염격하게 구분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편안하게 활동 할 수 있도록 서가와 열람공간을 자유롭게 배치하고, 바닥에 앉거나 누워서 책 읽는 공간을 조성하여 자발적인 독서활동을 유도함이 바람직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실 내 소규모 그룹이 모이거나 학생들이 바닥에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며, 도서실 내부 또는 인접한 곳에 컴퓨터실을 배치하여 상호 간의 공간 활용 시너지를 높이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와 지역의 특성에 따른 방범대책을 적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한 후,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의 학습공간과의 안전하고 편리한 접근 동선은 물론 지역주민의 이용 동선과 학생과 주민의 이용시간을 분리하여 학교의 주목적인 학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이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고 찾기 쉬운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관/도서관의 출입문은 ‘1.7 실내출입문’의 기준에 준하여 설치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 토론,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활용 등 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교구를 설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실 내부에 발표 및 토론수업, 영화감상 등 활동의 성격에 따라 독립된 공간이 조성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 학습, 그룹 학습 등 도서실을 활용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공간이 조성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휠체어 이용자 등이 정보관/도서관 내의 열람석, 서가(책선반) 사이를 원활히 이동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관/도서관 내의 통로 유효폭은 1.2m 이상 확보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휠체어 이용자의 주요 경로에서의 회전구간은 1.4m 이상의 폭이 확보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관/도서관 내의 바닥마감은 미끄럼지 않은 재질로 마감되었다. 			

	<p>■ 휠체어 이용자가 정보관/도서관 출입구에서 열람석까지 접근 가능한 경로가 확보되었다.</p>			
	<p>■ 휠체어 이용 학생 등 다양한 학생을 배려한 열람석과 안내데스크를 조성한다.</p>			
	<p>① 열람석과 안내데스크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이 확보되었다.</p>			
	<p>② 열람석과 안내데스크 상단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0.7m~0.9m로 설치되었다.</p>			
	<p>③ 휠체어 이용 학생을 위하여 열람석 및 안내데스크의 하부는 바닥면에서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었다.</p>			
	<p>■ 도서관(실)내에 검색(보안) 게이트가 설치될 경우 충분한 유효폭을 확보하고, 출입문과 충분한 거리를 이격해 설치한다.</p>			
	<p>① 검색(보안) 게이트의 통과 유효폭은 0.9m 이상 확보되었다.</p>			
	<p>② 검색(보안) 게이트가 출입문에서 1.2m 정도 이격된 위치에 설치되었다.</p>			
	<p>③ 출입문이 자동문이며 검색(보안) 게이트가 1.2m 이상 이격하여 설치될 경우, 휠체어 이용자 등의 이동을 배려하여 자동문의 닫히는 시간을 3초 이상 확보하였다.</p>			
	<p>■ 도서관(실)내의 출입문이 터치 버튼에 의하여 작동되는 자동문일 경우, 터치 버튼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0.8m~0.9m 위치에 설치되었다.</p>			
	<p>■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법규 및 기준에 적합한 직통계단 및 피난계단을 설치해야한다.</p>			
	<p>① 정보관/도서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으로 이어지는 가장 가까운 거리의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50m 이하(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가 되도록 설치되었다.</p>			
	<p>■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이용을 배려하여 경보·피난 설비는 비상벨 설비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이 함께 설치되었고,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되었다.</p>			
	<p>■ 피난계단의 출입문은 명확히 인지 가능한 색상으로 표현되었다.</p>			

	<p>■ 학생 등이 독서 등의 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조도를 확보한다.</p>			
	<p>① 휴식을 취하며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학습에 도움을 주는 따뜻한 조명을 사용하였다.</p>			
<p>총 항목 수(18)</p>				

4.7 지원공간 – 시청각실

구분	항목	양호	미흡	해당 없음
시청각 실	■ 시청각실 출입문은 ‘1.7 실내 출입문’ 기준에 준하여 설치되었다.			
	■ 휠체어 이용자 등이 시청각실 내의 장애인 객석, 무대 등으로 원활히 접근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① 시청각실 내의 통로 유효폭은 1.2m 이상 확보되었다.			
	② 휠체어 이용자의 주요 경로에서의 회전구간은 1.4m 이상의 폭이 확보되었다.			
	■ 시청각실 내의 바닥마감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되었다.			
	■ 시청각실 내의 무대는 단을 두지 않도록 설치한다.			
	① 무대의 단이 없이 설치하였거나 또는 단을 두는 경우에는 유효폭 0.9m 이상,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와 경사로 양측에 5cm 이상의 추락방지 턱이 설치되었다.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객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되었다.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객석의 배치는 이동식 좌석 또는 접이식 좌석이 사용되었고, 이동식 좌석의 경우 한 개씩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휠체어 사용자가 아닌 동행인이 함께 앉을 수 있다.			
	■ 고정식 객석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장애인용 객석표지(접근성 표지)를 부착하지 않도록 하여 자유롭게 객석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기둥이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등을 두지 않았다.			
	■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관람석이 중간 또는 제일 뒷줄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앞좌석과의 거리는 일반 좌석의 1.5배 이상으로 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객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m 이상, 깊이 1.3m 이상으로 설치되었고, 1.2m 이상의 통로와 구분되었다.			
	■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은 훨체어 이용자의 시야확보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① 난간의 높이는 0.8m 이하로 설치되었으며, 앞좌석에 일반석 의자와 등판 등이 설치된 경우, 높이 0.3m 이하로 설치되었다.			
	■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법규 및 기준에 적합한 직통계단 및 피난계단을 설치해야한다.			
	① 시청각실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으로 이어지는 가장 가까운 거리의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50m 이하(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가 되도록 설치되었다.			
	■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이용을 배려하여 경보·피난 설비는 비상벨 설비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이 함께 설치되었고,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되었다.			
	■ 피난계단의 출입문은 명확히 인지 가능한 색상으로 표현되었다.			
총 개수(15)				

5.1 지역교류공간 – 주변 교육영향권

구분	항목	양호	미흡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통학(등교, 하교) 시 주변의 위해요소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학교 내 UD 가이드라인 뿐 아니라 지역과 함께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UD적 조치가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학교 주변 주요통학로를 지정하여 지역에서 학교로 오는 주요 통행로로 권장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통학로는 학교별 주요 통학출입구를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새로운 주거지가 생길 경우 주요통학로 변경 또는 신규 지정이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학로 방향으로 차량 진출입이 빈번한 시설을 들어오지 않도록 하며, 차량 진출입구를 다른 도로로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학로 변에는 적치물 등 보행 장애물로 인해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주변 통학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학로 변에는 학생들의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는 원색의 입간판 사용을 지양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통학로는 통학권 내 학생들의 통학 행태를 분석하여 가장 통학빈도가 높은 곳을 통학로로 지정하여야 한다. 			
	① 통학권은 학구도안내서비스를 참고하여 학교 출입구에서부터 약 200m 이내로 보고 지정하였다.			
	② 200m 이상에 통학주거지가 있는 경우 그 범위를 일부 확장하여 지정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도의 경우, 일반차도와 구별이 되게 도장되었으며, 교차부, 횡단부, 경사부 등의 차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30km/h) 도장과 함께 통학로 표시가 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의 경우, 물고임으로 인한 미끄럼방지를 위해 투수성 포장으로 하고, 일반 보도블록과 구별이 되도록 설치되었다. 			

	<p>■ 보도와 차도가 만나는 부분이나 보도의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획한다.</p>			
①	차도의 교차부, 횡단부와 만나는 부분에서는 보도높이를 우선적으로 하여 조성되었다. (험프형 횡단보도)			
②	차도포장이 아닌 보도포장으로 설치되었다.			
■	통학로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에는 차량 운전자 높이에서도 보도(통학로) 가 인지될 수 있도록 펜스형의 경계 처리 시설이 설치되었다.			
■	노상주차장이 통학로 보도 쪽에 설치될 경우, 통학로 보도 쪽으로의 전면주차를 원칙으로 하여 후진 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노상주차장의 경우 통학로 보도 쪽에 주차멈춤턱(카스토퍼)이 설치되었다.			
■	통학로 주변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건축물 용도로 차량관련용도를 허용하지 않았다.			
■	통학로로의 접근이 없는 용도의 건축물이나 부지가 인접해있는 경우, 경계펜스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한다.			
①	접근이 없는 용도의 건축물이나 부지(입구가 없는 아파트 단지경계, 공원, 산 등)의 경계부에 펜스가 설치되었다.			
■	학교 주변에 주요 통학로로 지정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 가급적 학생의 통행을 제한시키고 주요 통학로 이용을 유도한다.			
①	주요 통학로로 지정되지 않은 도로(대부분 공원이 인접한 도로나 출입구가 없는 큰 부지의 관공서 경계부 도로 등)는 가급적 학생의 통행을 제한시키고, 주요 통학로로 우회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	등·하교시간에는 통학로 주변으로의 차량진출입을 제한하고, 통학로 교차부, 차도중심 도로부, 기타 사람 통행이 없는 동선부 등에는 학부모 자율도우미를 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 주민과의 교류를 유도한다.			
①	부득이하게 차량 통행이 필요한 도로의 경우 차량속도를 20km/h 이하로 유도하였다. (이면도로 제한속도 30km/h일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 정차 허용부는 주요통학로로 지정된 도로 이외의 도로 중 왕복 3차선 이상인 곳으로 설정되었으며, 정차 시에는 동행자나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승하차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학로로 설정된 구간에 아파트 단지로의 진출입 없는 경계가 100m 이상 연속적으로 접하는 경우 60m 이내 간격으로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음으로서 수시로 자연감시가 가능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었다.			
총 개수(14)				

전체 체크리스트 결과표

※각 항목별 체크 개수 기입

구분	항목	항목수	양호	미흡	해당 없음
공통공간	1.1 교문	5			
	1.2 보행접근로	26			
	1.3 주차장 및 차량출입구	12			
	1.4 학교 경계설치(담장, 응벽 등)	14			
	1.5 건물출입구	23			
	1.6 복도	22			
	1.7 실내 출입문	12			
	1.8 수직이동설비	39			
	1.9 방재 및 피난시설	7			
	1.10 안전설비	4			
	1.11 화장실	51			
	1.12 탈의실 및 샤워실	11			
공통공간 총 항목 수		226			
학습공간	2.1 일반학급	18			
	2.2 특수학급	16			
	2.3 특별/교과교실	21			
	2.4 실내체육시설(소규모)	4			
	2.5 유치원	18			
	2.6 운동장	16			
학습공간 총 항목 수		93			

휴식교류공간	3.1 휴식 공간 및 광장	13			
	3.2 놀이터	6			
	3.3 외부정원(학교 숲 등)	14			
휴식교류공간 총 항목 수		33			
지원공간	4.1 교과연구실				
	4.2 보건실/상담실(Wee Class)	15			
	4.3 돌봄·돌봄교실	12			
	4.4 식당	13			
	4.5 다목적강당(체육관)	34			
	4.6 정보관/도서관	18			
	4.7 시청각실	15			
지원공간 총 항목 수		107			
지역교류공간	5.1 주변 교육영향권	14			
지역교류공간 총 항목 수		14			
전체 항목 수		473			

결과 분석

- 전체 항목 중 양호 비율에 따른 등급 구분을 통해 UD 적용 정도를 학교 전체뿐 아니라 공간별로 파악 가능하다.

양호 비율(%)	등급	비율 계산식
100~81	1등급(매우양호)	
80~61	2등급(양호)	
60~41	3등급(보통)	
40~21	4등급(미흡)	
20~0	5등급(매우미흡)	양호 비율(%) = $\{양호(개)/총 항목 수(개) - 해당 없음(개)\} \times 100$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UNIVERSAL DESIGN GUIDELINE



서울특별시교육청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